

말레이시아

제조부문에의 투자 안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18.5%

2.9%

SCAN PROCESS

투자유치정책, 장려정책 및 편의시설 ■

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저작권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전자, 사진복사, 기록, 기타 어떠한 수단이나 형태로든 복제하거나 정보검색시스템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MIDA는 본 안내책자의 제작 시 모든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MIDA는 본 안내책자의 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는 MIDA 웹사이트
<http://www.mida.gov.my>
를 방문하십시오.

©MIDA - All right reserved



위치

말레이시아는 적도 바로 위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 개의 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반도는 아시아 대륙 남단에 위치하며, 사바주와 사라왁주는 각각 보루네오 섬의 북쪽 및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개관

총 면적

330,000 평방킬로미터
(127,000 평방마일)

인구(2019)



3,260만 명

시간대



GMT + 8 시간
미국 동부 표준시 + 13 시간

정치 구조

13개 주의 연방국가(말레이시아 반도에 11개 주 그리고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에 2개 주) 그리고 3개 연방 영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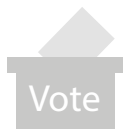
기후



열대
- 연중 따뜻하고 햇빛이 남

1일 평균기온은 오후에는 33°C(90°F),
밤에는 22°C(70°F) 범위임

정부 시스템



입헌군주제와 의회민주주의

주요 언어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만다린어, 타밀어

주요 민족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카다잔계, 이반계

연방 수도



쿠알라룸푸르

주요 종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힌두교

통화



링깃화(Ringgit Malaysia, RM),
1링깃은 100센(Sen)

행정 중심지



푸트라자야
(Putrajaya)

환율



링깃화 환율은 관리형 변동환율제 하에서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켓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서 변동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활동 진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산하의 부처로서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은 말레이시아의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및 서비스 프로젝트를 이행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1차로 연락해야 할 기관입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은 말레이시아에 제조 프로젝트 및 서비스 활동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본부를 두고서 북미,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걸쳐 20여개의 해외 사무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여러 주(州)에 12개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운영하는데 각종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은 이 시대의 기술 혁신으로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하려는 사업체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에서 투자 기회를 조사하고자 한다면,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연락하여 더 많은 정보뿐만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데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MIDA 본부, 주 및 해외 사무소의 상세한 연락처에 대해서는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목 차

제 1장 시작에 앞서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3
1.1 1975년 산업조정법	3
1.2 산업프로젝트의 승인 지침	3
2. 말레이시아의 사업체 등록	
2.1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3
2.1.1 회사 구조	4
2.1.2 유한주식회사	4
2.2 회사 설립 절차	5
2.2.1 현지 법인 요건	5
2.3 외국 회사의 등록	5
2.3.1 등록 절차	5
2.4 유한책임파트너회사(LLP) 구조	6
2.4.1 LLP의 특징	6
2.4.2 LLP는 누구로 구성될 수 있는가?	6
2.4.3 등록 절차	7
2.4.4 LLP로의 전환	7
2.4.5 LLP의 요건	7
2.5 E-서비스	8
3. 지분 정책에 관한 지침	9
3.1 제조 부문의 지분 정책	9
3.2 외국 투자의 보호	9

제2장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1. 제조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2
1.1 제조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12
1.2 하이테크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12
1.3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12
1.4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13
1.5 선정된 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13
1.5.1 기계류 및 장비	13
1.5.2 특수 기계류 및 장비	14
1.6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14
1.7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14
1.8 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오일 팜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14
1.9 산업화 건물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15

1.10 말레이시아인 소유 회사에 대한 1986년 투 자촉진법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취득을 원함 의 정의	15
1.11 제조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15
2.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7
2.1 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17
2.2 식품 생산	17
2.3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17
2.4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8
3.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20
3.1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20
3.2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대한 생명공학기술 자금 조달	20
4. 환경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21
4.1 조림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21
4.2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22
4.3 녹색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22
4.4 폐기물 에코 파크(Waste Eco Park, Wep) 에 대한 인센티브	22
4.5 가속 자본 공제(ACA)	23
5.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23
5.1 연구 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23
5.2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4
6.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25
6.1 훈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5

7.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인센티브	26
7.1 ASP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26
7.2 ASP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6
8. 해운 및 운송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26
8.1 말레이시아 선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26
9. 정보 통신 기술(ICT)에 대한 인센티브	
9.1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의 이용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27

목 차

10. 저개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27	8. 수입 관세	37
11. 기타 인센티브	27	9. 국내소비세	37
11.1 산업용 건물 공제	27	10. 관세항소법원 및 관세사전심사	37
11.2 말레이시아 MSC(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 Multimedia Super Corridor) 건물에 대한 산업용 건물 공제	27	11. 이중과세방지협정	38
11.3 감사 수수료 공제	28	제4장	
11.4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28	이민	
11.5 철거 및 폐기 자산 비용에 대한세제 인센티브	28	1. 말레이시아 입국 요건	41
11.6 재산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28	1.1 여권 또는 여행 서류	41
11.7 관세 관련 인센티브	28	1.2 비자 요건	41
11.8 환경 보호를 위한 기부	30	1.3 통과 요건	43
11.9 직원의 숙박에 대한 인센티브	30	2. 재외국민의 고용	45
제3장		2.1 재외국민 지위의 유형	45
과세		2.2 재외국민의 고용에 관한 지침	45
1. 말레이시아의 과세	33	3. 재외국민 지위 신청	46
2. 과세 가능한 소득의 등급	33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47
3. 법인세	33	제5장	
4. 개인소득세	34	산업 인력	
4.1 거주자 개인	34	1. 말레이시아의 노동력	50
4.1.1 개인 구제	34	2. 인력 개발	50
4.1.2 세금 환급	35	2.1 산업 기술 훈련 시설물	50
4.2 비거주자 개인	35	2.2 인적 자원 개발 기금	51
5. 원천징수세	35	3. 노임	51
6. 부동산양도소득세	35	4. 채용을 위한 시설물	51
7. 판매 및 서비스세	36	5. 노동 기준	51
7.1 판매세	36	5.1 1955 고용법	52
7.1.1 판매세율	36	5.2 노동 법령, 사바주(Sabah) 및 노동 법령, 사라왁주(Sarawak)	52
7.2 서비스세	36	5.3 1991 근로자공제기금법(EPF)	52
7.2.1 과세 가능한 서비스	36	5.4 1969 근로자사회보장법(SOCSO)	53
7.2.2 과세	36	5.5 1952 근로자보상법	55
7.2.3 서비스세율	37	5.6 1994산업안전보건법	56
7.2.4 신용카드 및 고객 카드에 대한 서비스세율	37		

목 차

6. 노사 관계	57	제7장	
6.1 노동조합	57	지식재산 보호	
6.2 1967 노사관계법	58		
6.3 노조 없는 단체의 관계	58	1. 지식재산 보호	72
제6장		1.1 특허	72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1.2 상표	72
		1.3 산업 디자인	72
1. 말레이시아의 금융 시스템	61	1.4 저작권	72
1.1 중앙은행	61	1.5 IC 배치 설계	73
1.2 금융 기관	61	1.6 지리적 표시(GI)	73
1.2.1 이슬람 금융산업	62	1.7 지식재산(IP) 평가	73
1.2.2 개발금융기관	62	1.8 지식재산(IP) 용자	73
		1.9 지식재산권 시장	73
2. 수출 어음 리파이낸싱	63	제8장	
2.1 용자 방법	63	환경 관리	
2.2 용자 기간 및 마진	64		
2.3 용자 상황	64	1. 정책	76
3. 말레이시아의 자본 시장	64	2. 환경 요건	76
3.1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64	2.1 지정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EIA)	76
3.2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65	2.2 부지 적합성 평가(SSA)	81
4. 라부안(Labuan) 금융 서비스	67		
4.1 라부안 금융서비스청(라부안 FSA)	67		
4.2 라부안 IBFC(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에서 사업하기	67		
4.3 라부안 IBFC의 비즈니스 활동	67		
5. 외환관리규칙	68		
5.1 비거주자에게 적용가능한 규칙	68		
5.1.1 말레이시아 투자	68		
5.1.2 현지 용자 접근 가능성	68		
5.1.3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정산	68		
5.1.4 헤징	68		
5.1.5 링킷과 외환 계좌	68		
5.2 거주자에게 적용가능한 규칙	69		
5.2.1 외환 자산 투자	69		
5.2.2 역내외 차입	69		
5.2.3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과 수출	69		
5.2.4 헤징	69		
5.2.5 외환 계좌	69		

목 차

제9장

인프라 관리

1. 산업용 토지	84
1.1 산업용 재산	84
1.2 자유지역	
1.2.1 자유상업지역(FCZ)	84
1.2.2 자유산업지역(FIZ)	84
1.3 면허보세제조창고(LMW)	84
2. 전기 공급	85
3. 물 공급	85
4. 통신 서비스	85
5. 항공화물 시설	86
6. 항구	87
7. 화물 운송	87
7.1 컨테이너 화물 수송	88
7.2 화물운송주선	88
8. 고가도로	88
9. 철도	88
10. MSC MALAYSIA	88

유용한 주소

정부 부처	91
관련 기관	93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해외 사무소	95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해외 사무소	96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주 사무소	102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주 사무소	103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해외 사무소	105

부록

부록 I	108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 자격 및 투자세 공제를 고려할 자격이 있는 장려 활동 & 제품 목록	
부록 II	112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 자격 및 투자세 공제를 고려할 자격이 있는 소기업에 대한 장려 활동 & 제품 목록	
부록 III	114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 자격 및 투자세 공제를 고려할 자격이 있는 소기업에 대한 장려 활동 & 제품 목록	
부록 IV	117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 자격 및 투자세 공제를 고려할 자격이 있는 선정된 산업에 대한 장려 활동 & 제품 목록	
부록 V	119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재투자에 대한 장려 활동 & 제품 목록	

1^제 1^장

시작하기에 앞서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 1.1 1975년 산업조정법
- 1.2 산업프로젝트의 승인 지침

2. 말레이시아의 사업체 등록

- 2.1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 2.1.1 회사 구조
 - 2.1.2 유한주식회사
- 2.2 회사 설립 절차
 - 2.2.1 현지 법인 요건
- 2.3 외국 회사의 등록
 - 2.3.1 등록 절차
- 2.4 유한책임파트너회사(LLP) 구조
 - 2.4.1 LLP의 특징
 - 2.4.2 LLP는 누구로 구성될 수 있는가?
 - 2.4.3 등록 절차
 - 2.4.4 LLP로의 전환
 - 2.4.5 LLP의 요건
- 2.5 E-서비스

3. 지분 정책에 관한 지침

- 3.1 제조 부문의 지분 정책
- 3.2 외국 투자의 보호



시작에 앞서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1.1 1975년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1975, ICA)

말레이시아 제조부문의 체계적인 발전과 성장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목적으로 1975년 산업조정법(ICA)이 도입되었습니다.

산업조정법(ICA)에 따르면, 자본금이 RM250만 이상이거나 또는 유급 상근 근로자를 75명 이상 고용한 제조업체는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여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허가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산하 정부 기관으로서 말레이시아 산업 발전의 촉진과 조정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CA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조활동”(Manufacturing activity)이라 함은 물품이나 물질의 사용, 판매, 운송, 배송 또는 폐기 등과 관련하여 그 물품이나 물질을 생산, 변경, 혼합, 장식, 마무리처리 또는 여타 방식으로 처리 및 개조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에는 부품 조립과 선박 수리도 포함되긴 하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업 관련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본금”(Shareholders' funds)이라 함은 회사의 납입 자본금(paid-up capital), 적립금(reserves), 손익처분 계정(profit and loss appropriation account)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련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은 우선주(preference share)와 보통주(ordinary share)를 말합니다. 단,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발행한 보너스 주식 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립금(reserves)이란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 그리고 감가상각, 시설의 개보수 또는 교체, 그리고 자산 가치 감소에 대한 준비금 등을 제외한 적립금을 말합니다.
- “유급 상근 근로자”라 함은 통상 하루에 최소 6시간, 한 달에 최소 20일, 연중 12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급 상근 근로자에는 출장 영업, 엔지니어링, 유지 보수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의 감독을 받고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법인의 이사도 유급 상근 근로자에 해당되나, 이사회 참석만으로 급여를 받는 비상근 이사는 제외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급여 또는 수당을 받으며, 근로자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 또는 여타 퇴직수당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유급 상근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1.2 산업프로젝트의 승인 지침

말레이시아에서 산업 프로젝트의 승인 관련 정부의 지침은 다음의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CIPE)가 RM140,000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회사의 총 상근 인력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주 근로자를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현재의 정책에 저촉받으며, 또한

관리직, 기술직 및 감독직 직급(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MTS)의 총 숫자가 전체 직원의 25% 이상이거나 또는 40% 이상의 부가 가치(VA)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생산 용량의 확대 및 제품의 다변화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추가 제품을 제조하여 제품 다변화를 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체 등록

2.1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i.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소유기업(sole proprietor). 또는
- ii. 2명 이상(단, 20명 이하)이 공동 소유주로서 운영하는 파트너회사. 또는
- iii. 유한책임파트너회사(LLP), 또는
- iv. 국내 설립 회사 또는 2016년 회사법(Companies Act, CA) 조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회사.

말레이시아의 모든 단독소유기업과 파트너회사는 1956년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파트너회사의 경우, 파트너들은 자산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트너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회사 증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할 수 있으나, 그게 꼭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2.1.1 회사 구조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는 2016년 회사법(CA)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에서는 모든 회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활동을 영위하려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5년 회사법(CA)에 따라 다음 세(3) 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i. 유한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는 책임 사원의 책임은 만약 미지급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금액까지로 한정된다는 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 ii.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에서 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 청산 시 회사의 자산에 기여하기로 보증한 금액까지로 한정됩니다.
- iii.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는 사원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2.1.2 유한주식회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구조는 유한주식회사입니다. 유한주식회사로는 개인회사(회사 상호에 "Sendirian Berhad" 또는 "Sdn Bhd"로 기재) 또는 공개회사(회사 상호에 "Berhad" 또는 "Bhd"로 기재)가 있습니다.

주식 자본을 가진 회사는 설립한 후 다음의 경우에 개인회사의 형태로 변경하거나 또는 개인회사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 i. 주식 양도권의 제한
- ii. 책임사원의 수를 50 명으로 제한. 단, 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종업원과 회사나 자회사의 전직 종업원은 제외합니다.
- iii. 일반인들에게 주식 및 회사채의 공모 금지.
- iv. 이자 유무를 불문하고 일반인들에게 일정 기간 경과 후 상환 청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 예탁금 공모 금지.

회사는 공개회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으로 개인회사로 설립된 회사도 1965년 회사법 41항에 따라 공개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는 다음의 경우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i. 설립 취지서(prospectus)를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 등록했을 경우. 또는
- ii. 설립 취지서 1부를 주식 발행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했을 경우

2.2 회사 설립 절차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 MyCoID 2016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i. 회사의 상호명
- ii. 회사가 개인회사인지 공개회사인지 그 자격
- iii. 회사의 사업 성격
- iv. 등록된 주소
- v. 회사의 책임사원의 성명, 신원, 국적 및 보통의 거주지
- vi. 이사가 될 개인 모두의 성명, 신원, 국적 및 보통의 거주지
- vii. 주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유한주식회사의 경우, 책임사원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의 세부 사항
- viii.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책임사원이 회사 청산 시 회사의 자산에 기여하겠다고 보증한 최대 금액

주식에 의해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주식회사의 경우 RM1,000 또는 보증에 의해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RM3,000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제공한 정보에 대해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소(Registrar)가 만족할 경우, 등록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달됩니다. 이 통지서는 등록 관련 요건과 그리고 등록에 선행하고 부수하는 문제가 준수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설립 -고객 현장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는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다음 기간 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승인 및 등록할 것을 약속합니다.

활동	기간
회사 등록	
회사 설립	1 일
회사 지위의 변경	1 일
회사 상호 변경	1 일
공개회사 영업 개시	1 일
담보 등록	2 일
신탁증서 승인	5 일
설립취지서 등록	3 일
회사 문서의 미인증 사본	30 분
회사 문서의 인증 사본	1 시간

* 회사 상호의 승인 신청은 회사 설립 없이도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은 대금 접수 순간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로 계산합니다.

2.2.1 국내 설립 법인의 요건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그곳에 회사법(CA)의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보관되어야 합니다. 회사 인감과 공식 문서, 출간물 및 (만약 있을 경우) 웹사이트에 회사 번호와 함께 회사 상호가 읽을 수 있는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자사주를 거래하거나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결의에 대해 거수로 투표할 권리를 가집니다. 투표의 경우 회사의 주식 1주는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회사의 간사(secretary)는 성년의 자연인으로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지정된 단체의 회원이거나 또는 기업등록소(Registrar of Companies)의 허가를 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승인된 회사 감사를 말레이시아의 회사 감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개인 기업은 적어도 1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고, 반면에 공개회사는 적어도 2명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수의 이사들은 각각 주 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사의 최소 나이는 18세이며, 2016년 회사법(CA)에서는 최대 나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2.3 외국 회사의 등록

외국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현지 회사의 설립 또는
- 말레이시아에 지점 등록

외국 회사는 2016년 회사법(CA)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설립된 회사, 법인, 협회, 조합 또는 기타 단체. 또는
- 본국법상 비법인 협회, 조합 또는 기타 단체로서 당해 단체 또는 조합의 간사(secretary) 또는 이를 위해 적법하게 선임된 다른 임원 명의로 고소하거나 피소되거나 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또한 말레이시아 내에 본사나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

2.3.1 등록 절차

- 신청인은 먼저 회사 상호 검색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 상호가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할 회사 상호는 본국에 등록된 회사 상호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회사 상호 예약을 위한 신청서는 MyColD 2016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회사 상호 1개당 RM50과 함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로부터 승인받은 회사 상호는 승인 일자로부터 30일 간 유효합니다.

- 승인을 받자마다 신청인은 승인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다음의 등록 서류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6년 회사법(CA) 562(1)절 에 따른 외국 회사 등록 신청서
 - 외국 회사의 설립 증명서 또는 등록 증명서 인증 사본 1부

- c. 외국 회사의 헌장, 규약 또는 정관, 부속 정관 또는 헌장을 정의하는 기타 법률 문서의 등본 1부
- d. 만약 외국 회사의 현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이사일 경우, 외국 회사가 직접 또는 외국 회사의 대리인을 통해 그 이사의 권한을 기재한 서면을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개인(대리인)으로 하여금 외국 회사를 대리하여 그러한 외국 회사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통지를 수락할 수 있도록 인가하는 선임 각서 또는 위임장
- f. 외국 회사의 회사 상호 예약 신청서 사본과 회사 상호를 승인하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서 수신한 이메일 사본으로 구성되는 추가 문서

유의사항: 상기 등록 문서 중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당해 문서의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의 공증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iii. 등록 수수료는 다음의 요율표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RM)	수수료 금액 (RM)
1,000,000 이하	5,000
1,000,001 – 10,000,000	20,000
10,000,001 – 50,000,000	40,000
50,000,001 - 100,000,000	60,000
100,000,001 이상	70,000

등록 수수료 산정 시에는 먼저 외국 회사의 자본금을 당시의 환율로 말레이시아 링깃화(RM)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외국 회사의 자본금이 없을 경우에는 정액으로 RM70,000을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iv. 등록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작성한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로부터 등록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v. 승인을 받자마자 회사나 회사 대리인은 2016년 회사법(CA)을 반드시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명세나 회사 상호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경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적정 수수료와 함께 SSM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자본금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 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SSM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회사는 적절한 회계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1년에 한번 회사 등록 일자 기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간 수익을 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 회계사 또는 전문직 회사 간사의 서비스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합니다.

2.4 유한책임파트너회사(LLP)의 구조

2.4.1 LLP의 특징

LLP는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인 파트너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습니다.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LLP는 영속계승권(perpetual succession)을 가집니다. 파트너의 변동이 있더라도 LLP의 존립, 권리나 책임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LLP는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또한 고소하거나 피고소될 수도 있으며, 재산을 취득, 소유, 보유 및 개발 또는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겪을 수 있듯이, LLP는 그와 같은 여타 행위와 일을 할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LLP는 회사의 설립, 유지관리 및 소멸의 관점에서 간단하고 유연한 절차를 제공할 일종의 사업용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LLP의 설립 및 LLP로의 전환에 필요한 등록 수수료는 RM500입니다. 회사 상호 예약 신청 수수료는 RM30입니다.

2.4.2 LLP는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LLP는 LLP 합의 조건에 따라 이윤 목적의 합법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개인(전부 또는 일부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LLP는 반드시 동일 직종의 자연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또한 말레이시아 기업 등록소(Registrar)의 승인을 받은 효력있는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LLP는 다음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 i. 스타트업(신생기업), 또는
- ii. 중소기업, 또는

- iii. 전문직 회사, 또는
- iv. 합작회사, 또는
- v. 벤처캐피털.

2.4.3 등록 절차

LLP를 등록하려면, 신청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i. 등록하고자 하는 LLP 상호명
- ii. 업종
- iii. 등록된 사무소의 주소
- iv. 파트너의 성명과 세부 인적 사항
- v. 준법감시인의 성명과 세부 인적 사항
- vi. 승인서(전문직 회사의 경우)

등록 신청 시 등록 수수료 RM500을 납부해야 합니다. LLP 등록 신청 요건 충족 시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소(Registrar)는 LLP를 등록시켜 주고 당해 LLP에 등록 번호와 함께 등록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등록 통지서는 당해 LLP가 등록되었음을 알리는 결정적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당해 LLP의 사업 관련 기타 법규정이 충족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LLP의 회사 상호는 “Perkongsian Liabiliti Terhad” 또는 그 약어인 “PLT”로 끝나야 합니다.

2.4.4 LLP로의 전환

신규 등록과는 별개로, 기존의 사업체도 LLP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이 허용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1956년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에 따라 등록된 전통적 파트너회사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개인에 의해 설립된 여타 파트너회사. 또는
- ii. 2016년 회사법(CA) 또는 여타 이전의 상응하는 법에 따라 설립된 개인 회사.

전통적 파트너회사가 LLP로 전환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동일한 파트너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ii. 신청 일자에 전통적 파트너회사가 자체 부채를 정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 iii. 전문직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승인서.

개인 회사가 LLP로 전환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동일한 파트너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ii. 회사의 자산에 담보권 설정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iii. 신청일자에 개인 회사는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iv. 정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모든 미납 법정 수수료는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v. 널리 배포되는 일간 신문과 관보(Gazette)에 LLP로의 전환 사실을 알리는 광고 게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 vi. 모든 채권자가 LLP로의 전환에 동의했어야 합니다.

LLP로의 전환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당해 전통적인 파트너회사 또는 개인회사의 자산, 권리, 특권, 의무 및 책임이 LLP에 귀속됩니다.
- ii. 계류 중인 소송은 LLP를 제소 또는 피소 당사자로 하여 계속 진행되고, 완료되며, 집행될 수 있습니다.
- iii. LLP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LLP가 당사자가 되어 기존의 합의, 계약은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 iv. 전통적인 파트너회사가 LLP로 전환된 경우, 전환 이전에 발생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파트너들이 계속 개인적인 책임(LLP와 함께 또는 여러 명과)을 져야 합니다.
- v. 개인회사가 LLP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 이전에 발생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LLP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합니다.

2.4.5 LLP의 요건

LLP는 2016년 회사법(CA)에 따라 간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파트너 또는 개인 중에서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말레이시아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평소 말레이시아에 거주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또는 1965년 회사법(CA)에 따라 이사나 간사로 활동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LLP는 우편물과 통지서의 수발인이 가능하도록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LLP는 이 회사법에 따라 발급된 등록 통지서, LLP 합의서 사본, 각 파트너와 준법감시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명부, 최신 연례 보고서와 담보권 설정 법률 문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 문서 사본 등을 등록된 사무소에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LLP는 당해 LLP의 재무 상태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보여 줄 수 있도록 회계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LLP 합의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감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5 E-서비스

E-서비스는 SSM(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방식, 즉 창구 서비스의 대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MyCoID 서비스) 또한 법인 및 사업체 정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Info와 MyData를 통해 법인과 사업체 정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 카드, 계좌 자동이체, 선불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1회 제출로 일단 SSM에 회사 설립이 등록되면, MyCoID를 이용하여 근로자공제기금(EPF), 말레이시아 국세청(IRBM), 사회보장기구(SOSCO), 중소기업개발공사(SME Corp) 및 인적자원개발기금(HRDF)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SSM 웹사이트 www.ssm.com.my 또는 www.ssm-einfo.com.my 또는 www.mydata-ssm.com.my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분 정책에 관한 지침

3.1 제조 부문의 지분 정책

말레이시아는 항상 제조 부문 투자를 환영해 왔습니다. 현지 인인의 제조 부문 참여 증대를 원하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인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합니다.

신규, 확장 또는 다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정책

2003년 6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액 규모에 관계 없이 그리고 제품이나 활동의 예외 없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투자는 물론, 기존 회사의 확장/다변화 프로젝트 관련 투자에서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 정책은 다음에도 적용됩니다.

- i. 전에 제조업 허가 취득을 면제받은 회사 중 현재 자본금이 RM250만에 달하거나 또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상근 근로자 수가 75명 이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회사.

- ii. 전에 지분 제한 조건을 면제받고 허가를 득한 기존의 회사로서 지금은 자본금이 RM250만에 달해 지분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회사.

기존의 회사에 적용되는 지분 정책

2003년 6월 17일 이전에 회사에 부과된 지분 및 수출 조건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 조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승인 여부는 각 사안별로 공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3.2 외국 투자의 보호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는 말레이시아의 약속으로 40개가 넘는 국가로부터 8,000개가 넘는 회사가 말레이시아를 그들의 역외 기지로 두어 왔습니다.

지분 소유권

지분 참여를 승인받은 회사는 원래의 승인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당해 프로젝트의 원래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지분 참여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보장협정

말레이시아 정부가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s, IGA)을 기꺼이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바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IGA는 다음의 일을 합니다.

- 국유화 및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 국유화 또는 수용의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의 보장
- 이윤, 자본 및 기타 수수료의 자유로운 이전의 제공
- 투자 분쟁 시 말레이시아가 1966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투자분쟁해결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따른 해결의 보장

말레이시아는 도움이 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투자보장협정(IGA)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IGA에 서명하고 효력이 있는 목록

국가

1. 미국*	17. 한국	33. 요르단	49. 북한
2. 독일	18. 중국	34. 방글라데시	50. 예멘
3. 캐나다 *	19. 아랍에미리트(UAE)	35. 크로아티아	51. 터키
4. 네덜란드	20. 덴마크	36. 스페인	52. 레바논
5. 프랑스	21. 베트남	37. 몽골	53. 부르키나 파소
6. 스위스	22. 칠레공화국	38. 인도 ****	54. 수단공화국
7. 스웨덴	23. 타이완	39. 우루구아이	55. 에티오피아공화국
8. 벨기에-룩셈부르크	24. 헝가리	40. 페루	56. 세네갈
9. 영국	25. 폴란드	41. 카자흐스탄	57. 바레인
10. 스리랑카	26. 인도네시아 ***	42. 체코공화국	58. 알제리아
11. 루마니아	27. 알바니아	43. 기니	59. 사우디아라비아
12. 오스트리아	28. 짐바브웨	44. 가나	60. 모로코
13. 핀란드	29. 투르크메니스탄	45. 이집트	61. 이란
14. 쿠웨이트	30. 나미비아	46. 쿠바	62. 시리아 아랍 공화국
15. 아세안 **	31. 캄보디아	47. 우즈베키스탄	63. 슬로바키아 공화국
16. 이태리	32. 아르헨티나	48. 마케도니아	64. 산마리노

투자분쟁해결협약

외국인 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분쟁해결협약 조항을 1966년 비준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하에 설립된 것으로 워싱턴의 IBRD 본부 건물에 소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해 국가 간의 투자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국제중재센터(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IAC)

(이전에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로 알려져 있었음)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정부 간 조직인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AALCO)의 후원 하에 1978년 설립되었습니다.

아시아국제중재센터 (AIAC)

이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그리고 지역 내 무역, 통상 및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 해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의 위반, 종료 및 무효화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란 또는 클레임은 쿠알라룸푸르 지역분쟁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 미국 & 캐나다 - 보험보장협약.

** 2012년 2월 아세안 포괄투자협정(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ACIA)의 발효로 종료됨.

*** 인도네시아가 2014년 6월 20일자로 종료를 통지해 옴에 따라 2015년 6월 20일자로부터 종료 효력이 발생됨.

**** 인도가 2016년 3월 23일자로 종료를 통지해 옴에 따라 2017년 3월 23일자로부터 종료 효력이 발생됨.

제 2 장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INCENTIVES





1. 제조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 1.1 제조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1.2 하이테크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1.3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 1.4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1.5 선정된 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1.5.1 기계류 및 장비
 - 1.5.2 특수 기계류 및 장비
- 1.6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1.7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1.8 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오일 팜 바이오 매스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 1.9 산업화 건물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 1.10 말레이시아인 소유 회사에 대한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취득을 희망함의 정의
- 1.11 제조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 2.1 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2.2 식품 생산
- 2.3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 2.4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3.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3.1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3.2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대한 생명공학기술 자금 조달

4. 환경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 4.1 조림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 4.2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 4.3 녹색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 4.4 폐기물 에코 파크(Waste Eco Park, Wep)에 대한 인센티브
- 4.5 가속 자본 공제(ACA)

5.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 5.1 연구 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5.2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6.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 6.1 훈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7.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인센티브

- 7.1 ASP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7.2 ASP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8. 해운 및 운송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8.1 말레이시아 선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9. 정보 통신 기술(ICT)에 대한 인센티브

- 9.1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의 사용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10. 저개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11. 기타 인센티브

- 11.1 산업용 건물 공제
- 11.2 말레이시아 MSC(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 Multimedia Super Corridor) 건물에 대한 산업용 건물 공제
- 11.3 감사 수수료 공제
- 11.4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 11.5 철거 및 폐기 자산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 11.6 재산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 11.7 관세 관련 인센티브
- 11.8 환경 보호를 위한 기부
- 11.9 직원의 숙박에 대한 인센티브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에서는 1986년 투자촉진법(Promotion of Investments Act),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년 관세법(Customs Act), 1976년 국내소비세법(Excise Act) 및 1990년 자유지역법(Free Zone Act) 등에 직접 및 간접 세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은 제조, 농업, (호텔을 포함한) 여행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은 물론 R&D, 훈련 및 환경 보호 활동 등에서의 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세제 인센티브는 특정 기간 동안 소득세 납부에서 부분 또는 전체를 공제해 주는 한편, 간접 세제 인센티브는 수입 관세 및 국내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1. 제조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1 제조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제조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 인센티브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및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로 제공됩니다.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및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자격은 부가가치, 이용된 기술 및 산업계 연계 등의 수준을 비롯, 특정 우선순위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유자격 활동 및 제품은 "장려 활동" 또는 "장려 제품"으로 지정됩니다. (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일반을 참조할 것)

기업은 운영/생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진흥청(MIDA)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개척자 자격(PS)을 취득한 회사는 소득세를 5년 간 일부 면제받습니다. 개척자 자격(PS)을 취득한 회사는 법정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하며, 세금 면제 기간은 생산일(생산 수준이 생산 능력의 30%에 도달하는 날로 정의됨)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소득은 총 소득에서 수입 지출과 자본 공제를 공제한 후에 얻어집니다.

개척자 자격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개척자 자격의 대안으로 회사는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ITA)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적격 자본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플랜트, 기계류 또는 기타 장비)에 대해 60%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사는 매년 평가받는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이러한 투자세 공제액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투자세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득의 나머지 30%는 현행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아 과세됩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이테크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테크 회사는 신기술 분야에서 장려 활동 또는 장려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회사입니다(부록 II: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하이테크 회사 참조). 하이테크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5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적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품 또는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략적 프로젝트는 구상 기간이 긴 막대한 자본 투자와 관련이 있으며, 기술 수준이 높고, 통합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연계를 생성시키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와 같은 프로젝트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하는 미처리 자본 공제는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소기업(SME)

2009 과세 연도부터 소득세 및 세제 인센티브를 부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SME)의 정의는 과세 연도의 기본 기간 시작 때 납입자본금이 RM250 이하인 말레이시아 거주자 회사로 그와 같은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RM250만을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SME)은 최대 RM50만의 과세 소득에 대해 17%의 감면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남은 과세 소득에 대한 세율은 24%로 유지됩니다.

소기업

현재 주주 기금이 RM50만을 초과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소기업은 1986년 투자촉진법(PIA)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2년 7월 3일부터 소기업은 주주 기금이 RM250만을 초과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에서 100%까지인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소기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i. 1965년 회사법에 따라 설립
- ii. 주주 기금이 RM250만을 초과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인 지분 소유권이 다음과 같아야 함.
- 주주 기금이 RM50만 이하이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회사.

- 주주 기금이 RM50만을 초과하되 RM250만 이하이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100%인 회사.

소기업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5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인 유한 회사가 설립되어 기존의 생산/활동을 인수할 경우 단독 소유권 또는 파트너십 회사는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주주 기금이 RM50만 이하이고 장려 활동을 벌이거나 또는 소기업 장려 목록에서(부록 III: 소기업 참조) 또는 일반 장려 목록에서(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 일반 참조) 장려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경우
- ii. 주주 자금이 RM50만을 초과하고 2RM50만 이하이며 장려 활동을 벌이거나 또는 소기업 장려 목록에서(부록 III: 소기업 참조) 또는 일반 장려 목록에서(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 일반 참조) 장려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경우
- iii. 주주 자금이 RM50만을 초과하고 RM250만 이하이며 장려 활동을 벌이거나 또는 일반 장려 목록에서(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 일반 참조) 장려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경우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선정된 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1.5.1 기계류 및 장비

공작 기계, 자재 취급 장비,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장비 그리고 공장 기계, 자재 취급 장비 및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장비의 모듈과 구성품

1.5.2 특수 기계류 및 장비

특정 산업을 위한 특수 공정 기계류 또는 장비, 포장 기계류 그리고 특정 산업 및 포장 기계류를 위한 특수 공정 기계류 또는 장비를 위한 모듈과 구성품

선정된 기계류 및 장비의 생산 활동을 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록 IV: 선정된 산업을 위한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참조).

1.6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에너지 효율 차량과 그 주요 구성품/시스템의 조립 및 제조를 장려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자동차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투자진흥청(MIDA)은 다음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 있는 회사에 5-10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투자세 공제(ITA)의 소득세 면제와 동등한 것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i. 에너지 효율 차량의 조립.
- ii. 변속기, 엔진, 에어백 & 그 구성품, 핸들 & 제어 메커니즘 및 브레이크 메커니즘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 차량 또는 비에너지 효율 차량을 위한 주요 구성품/시스템의 제조
- iii. 전기 모터, 전기 배터리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같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을 위한 구성품의 제조.

인센티브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청(MIDA)이 접수한 신청에 대해 유효합니다.

1.7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공우주산업 발전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정한 전략 및 하이테크 부문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MRO(정비, 수리 & 오버홀), 시스템 통합 및 엔지니어링 & 설계 등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투자진흥청(MIDA)은 다음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 있는 회사에 5-10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투자세 공제(ITA)의 소득세 면제와 동등한 것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i. 항공우주 제조
- ii. 시스템 통합
- iii. 정비, 수리 및 오버홀(MRO);
- iv. 항공 관련 서비스

인센티브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청(MIDA)이 접수한 신청에 대해 유효합니다.

1.8 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오일 팜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바이오 기반 화학 약품, 바이오 연료, 파티클보드, 중밀도 섬유보드, 합판, 펄프 및 제지와 같은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일 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i. 신규 회사

- a)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b)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ii. 재투자하는 기존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a) 10년간 재투자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b) 5년 이내 발생한 추가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기본 구성품/제품 및 시스템

기둥, 빔, 슬라브, 벽, 지붕 트러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시스템, 거푸집 공사 시스템, 강철 프레임 시스템, 블록워크 시스템, 목재 프레임 시스템 및 혁신적 시스템.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의 제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5년간 법정 소득의 70% - 100% 사이의 소득세 면제.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와 동등한 소득세 면제. 이 소득세 면제는 과세 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70% - 100%에 대해 상쇄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0 말레이시아인 소유 회사에 대한 1986년 투자 촉진법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취득을 희망함의 정의

1986년 투자촉진법(PIA)에 따라 회사가 세제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한 주요 기준은 회사가 반드시 장려 활동을 시작하거나 참여하거나 또는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장려 제품을 생산하기를 '희망'하여야 합니다.

i. 생산의 정의

- a) 제조 회사 - 회사가 제품을 (시험 생산을 포함하여) 생산하기 시작했음.
- b. 용역 회사 - 회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최초의 청구서를 발행했음.

ii. 생산 중인 회사

이미 생산 중인 말레이시아인 소유 제조 및 용역 회사는 1986년 PIA에 따라 '희망' 조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3일부터 투자진흥청(MIDA)에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생산을 시작한 말레이시아인 소유 회사는 세제 인센티브의 고려 대상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iii. 인센티브

개척자 자격 또는 1986년 투자촉진법(PIA)에 따라 일반 세율 및 자격에 기준한 투자세 공제와 동등한 세금 면제

1.11 제조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i. 재투자 공제

재투자 공제(RA)는 확장, 자동화, 현대화 또는 동일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의 다양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제조 활동 및 선정된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로 적어도 36개월 동안 운영되어 온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투자 공제(RA)는 회사의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비율로 주어지며, 과세 연도 동안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최대 7년의 평가 기간 동안 연속 이월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5년의 종료 직후 시작됩니다. 만약 회사가 재무부(MOF)가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생산성 수준을 확보하는 회사는 과세 연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재투자 공제를 상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하부 부문에 대한 지정된 생산성 수준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IRB)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유용한 주소 - 관련 기관 참조).

재투자 공제(RA)는 최초의 재투자가 이루어진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15년 동안 연속 주어집니다. 회사는 적격 프로젝트 완료 시, 즉 건물이 완공되거나 또는 플랜트/기계류가 운전을 시작할 때까지만 재투자 공제(R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9과세 연도로부터 동일 그룹 내에서 관련 회사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회사로 그러한 자산에 대해 재투자 공제(RA)를 신청한 회사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재투자 공제(RA)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투자를 위해 취득한 자산은 2009 과세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재투자 시점으로부터 5년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조세 감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투자할 의향이 있는 회사는 취소할 목적으로 개척자 자격 또는 개척자 인증서를 반납하고 재투자 공제(RA)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투자 공제(RA)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하는 한편, 재투자 공제(RA)를 받기 위한 개척자 자격 또는 개척자 인증서 반납은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가속 자본 공제(ACA)

a) 장려 활동 또는 제품에 대한 재투자

재투자 공제(RA) 자격이 있는 15년 이후 장려 제품의 제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 자본 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속 자본 공제(ACA)는 자본적 지출을 3년 이내 탕감하는 특별 공제, 즉 초기 공제 40%와 연간 공제 20%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로부터 회사 장려 활동 또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서신을 동봉하여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속 자본 공제(ACA)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 폐기물 재활용

2001 과세 연도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적격 지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제조회사는 다음과 같은 플랜트 및 기계에 대해 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재활용 전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또는
- 폐기물을 완제품으로 추가로 처리하는 데 사용

신청서는 국세청(IR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은 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 환경을 만들뿐만 아니라 외국 근로자에 대한 의존을 줄입니다.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 구성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을 구매하는 데 비용이 발생된 회사는 2006 과세 연도로부터 초기 공제 40%와 연간 공제 20%의 비율로 가속 자본 공제(ACA)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그룹 조세 감면

그룹 조세 감면은 1967년 소득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설립된 모든 거주민 회사에 제공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그룹 조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 회사는 과세 연도 3년간 연속 그 조정 손실의 최대 70%까지 반납하여 동일 그룹 내의 다른 회사의 소득에 대해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 모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a)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는 각각 기본 연도의 시작 시 RM250만을 초과하는 보통주의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b)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는 모두 회계 연도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c) 그룹의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의 직간접 주식 지분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d) 70% 주식 지분은 전 연도와 관련 연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e) 재산권 또는 외국인 소유 회사의 취득으로 인한 손실은 그룹 조세 감면의 목적으로 무시되어야 합니다.
- f) 현재 다음의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는 회사는 그룹 조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개척자 자격
 - 투자세 공제/투자 공제
 - 재투자 공제
 - 운송 이윤의 조세 감면
 - 1967년 소득세법의 127 절에 따른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 자동화 자본 공제(Automation CA)

말레이시아에서 최소한 36개월 이상 운영된 (노동 및 비노동 집약 산업) 제조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범주 1: 고노동 집약 산업(고무 제품, 목재, 플라스틱, 가구 및 섬유)

- i.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의 과세 연도 5년 이내에 발생한 최초의 지출 RM4백만에 대한 200%의 자동화 자본 공제

범주 2: 기타 산업

- ii. 200%의 자동화 자본 공제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의 과세 연도 5년 이내에 발생한 최초의 RM2백만에 대해 제공됩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986년 투자촉진법에서는 농업 관련 “회사”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농업 기반 협동 조합 및 협회. 그리고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단독 사업체 및 파트너십.

농업 부문에서 장려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장려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일반과 부록 III: 소기업 회사 참조)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2.1 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i.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제조 부문에서와 같이, 장려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장려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는 개척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그와 같은 회사는 (농업 생산물의 최초 판매 일자로 정의되는) 생산일로부터 시작하여 5년간 법정 소득의 3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개척자 자격에 대한 대안으로, 장려 제품을 생산하거나 장려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ITA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TA를 부여받은 회사는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사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해 이 공제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득의 나머지 30 %는 일반 회사 세율로 과세됩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농장 레벨뿐만 아니라 생산/처리 레벨에서 식품 프로젝트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의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 가공 부문의 원자재 공급이 늘어나 그와 같은 원자재의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승인된 식품 생산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와 식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 모두에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세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는 해당 과세 연도에 해당 자회사에 투자한 금액과 동등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10년간의 평가 기간 또는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의 평가 기간 동안 법정 소득에 대해 일체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부가 접수한 신청.

2.3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i. 할랄(Halal)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할랄(halal) 식품 생산에의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고품질 할랄(halal) 식품 생산에 현대의 최첨단 기계류 및 장비 사용을 늘리기 위해 할랄(halal) 식품 생산에 투자하고 MS 1500:2004를 준수하여 이슬람교개발국(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이미 취득한 회사는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의 10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투자세 공제는 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비용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개발국(JAKIM)으로부터 할랄(halal) 인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www.halal.gov.my를 방문해 보십시오.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기타 할랄(Halal)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a) 할랄 파크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할랄 파크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 파크 운영자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b) 할랄(Halal) 산업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정된 할랄 파크에서 프로젝트 착수를 제안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투자세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할랄 장려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및 영업세 면제.
- iii) HACCP, GMP, Codex Alimentarius(FAO & WHO의 식품 표준 지침), 위생 표준 운영 절차와 농장 돼지 고기의 식품 추적가능성과 같은 수출 시장 준수 규정 등과 같은 국제 품질 표준을 획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c) 할랄 물류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에 할랄 산업과 할랄 공급 체인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 물류 운영자에게는 다음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 i) 5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한 소득세 면제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할랄산업개발협회(HDC)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www.hdcglobal.com을 방문하십시오.

2.4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i. 재투자 공제

쌀, 옥수수, 야채, 덩이줄기, 가축, 수산물 등과 같은 필수 식품의 생산과 재무부 승인 활동에 36개월 이상 종사하는 회사는 재투자 공제(RA) 자격이 주어집니다.

RA는 최초의 재투자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시작하여 15년간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의 60%의 공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재투자 공제는 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최대 7년의 평가 기간 동안 연속 이월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5년의 종료 직후 시작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자원 기반 산업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 인센티브는 51% 이상이 말레이시아인 소유로 수출 잠재력이 있는 고무, 오일 팜 및 목재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제공됩니다. 확장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a) 5년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b) 5년 이내 발생한 추가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록 V: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재투자)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식품 가공 활동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장려 식품 가공 활동에 재투자하는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현지인 소유의 제조 회사

- a) 5년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b) 5년 이내 발생한 추가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록 V: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재투자)

iv. 가속 자본 공제(ACA)

재투자 공제(RA)가 만료하자마자 장려 농업 활동 및 식품 제품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ACA(가속 자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쌀, 옥수수, 채소, 덩이줄기, 가축, 수산물 재배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ACA(가속 자본 공제)는 2년 이내 자본적 지출을 탕감할 수 있는, 즉 첫째 초기 공제 20%와 연간 공제 40%를 받을 수 있는 특별 공제를 제공합니다.

청구서는 회사가 장려 농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또는 장려 식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투자진흥청(MIDA)의 서신과 함께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 농업 공제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특정 자본적 지출에 대해 1967년 소득세법에 따라 자본 수당(CA) 및 특수 산업용 건물 공제(IBA)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i.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 공제

1967년 소득세법 부속서 4A에서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의 자본적 지출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특정 최소 면적을 경작하고 활용하는 농장에 대해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는 야채, 과일(파파야, 바나나, 패션 프루트, 스타 프루트, 구아바 및 망고스틴), 과경류, 근채류, 허브, 향신용 작물, 동물 사료용 작물 및 수경 재배 작물의 경작, 관상어 양식, 어류와 참새우 양식(지수식 양식, 육상수조 양식, 수중 가두리 양식과 해면 가두리 양식), 새조개류, 굴, 홍합과 해초류 양식, 새우, 참새우 및 어류의 부화, 그리고 특정 종의 산림 플랜테이션 등을 말합니다.

이 인센티브에 따라 위의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인은 다른 수입원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하여 자신의 종합 소득 금액에서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적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처리 지출은 차후 평가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경우에는 동일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자본 공제 또는 농업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승인 받고 세금 감면 기간이 시작되거나 만료되지 않은 회사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3.1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생명공학기술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바이오경제개발 공사(바이오경제공사)로부터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을 승인받은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IP 소득의 경우, 법정 소득의 최대 100%까지의 세금 면제
 - a) 첫째 연도로부터 10년간 연속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 또는
 - b) 첫째 연도로부터 5년간 연속 회사가 기존 사업 및 확장 프로젝트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
- ii. 비 IP 소득의 경우, 법정 소득의 최대 70%까지의 세금 면제**.
 - a) 첫째 연도로부터 10년간 연속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 또는
 - b) 첫째 연도로부터 5년의 평가 기간 동안 연속 회사가 기존 사업 및 확장 프로젝트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
- iii. 5년 동안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의 100% 공제에 상당하는 신규 사업 또는 확장 프로젝트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의 100% 세금 면제**.
- iv. 세금 면제 기간이 만료된 후 10년간 적격 활동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에 대해 20%의 할인 세율.
- v. 원자재/구성품/기계류/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영업세 면제.
- vi. R&D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
- vii. 수출 장려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
- viii. 생명공학기술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적격 건물은 10년간 IBA(산업용 건물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ix.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 또는 (사업 소득원이 있는) 개인은 사업화 단계의 초기에 투자한 총투자액에 상당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신청서는 바이오경제공사(Bioeconomy Corporation)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9년 4월 22일자로 재무부의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보

3.2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대한 생명공학기술 자금 조달

바이오경제공사(Bioeconomy Corporation)는 생명공학기술 사업화자금(BCF) 2.0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자금 조달을 제공합니다. BCF 시설의 목표는 생명공학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상용화를 촉진하고 신청자의 기존 생명공학기술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BCF 프로그램에 따라 본질적으로 2개의 다양한 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즉, 자금 조달 시설 용어인 바이오경제개발계획("BDS") 그리고 신청자의 운전 자금 조달 요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지속계획("BSS")가 그것입니다.

바이오경제개발계획(BDS)은 (제로 입력 자금 조달 비용을 제외하고) 신청자당 최대 RM270만 한도 내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다음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 a) 사업 운영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 건설을 위한 기성품 건물/토지의 구매.
 - b) 신규/중고 기계류 및 장비, 실험실 또는 기타 생산 장비의 구매.
 - c) 급여/인적 자본 이득 비용을 제외한 운영 지출. 그리고
 - d) 투자진흥청(MI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타 운영 지출 비용.
- 바이오경제개발계획(BDS)에 따른 융자의 마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a) 사업 운영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 건설을 위한 기성품 건물/토지 구매에 대해 최대 90%까지 융자.
 - b) 새로운 기계류 및 장비, 실험실 또는 기타 생산 장비의 구매에 대해 최대 90%까지 융자.
 - c) 중고 기계류 및 장비, 실험실 또는 기타 생산 장비의 구매에 대해 최대 65%까지 융자. 그리고/또는
 - d) 운영 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그리고 시설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융자.

이들 모두에 대해 융자 마진은 투자진흥청(MID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즈니스지속계획(BSS)은 다음의 형식 중 하나에서 성공적인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RM60만의 융자 제도입니다.

a) 구매 회전 신용장/판매 회전 신용장

지출할 수도 있고, 전체를 상환할 수도 있으며, 주기가 되풀이하여 실행될 수도 있는 유연성 있는 용자 제도. 이 용자 제도는 용자 한도까지 여러 트랑슈(tranche)에서 선금금 기준으로 지출할 수 있고 또한 그 선금금을 상환했을 경우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자 제도는 매년 갱신할 수 있고 또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b) 기간 운전 자금 용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특정 기간에 걸쳐 정기 상환 일정이 있는 용자 제도.

c) 팩토링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받을어음을 할인 판매하여 얻은 자금 조달.

비즈니스지속계획(BSS)에 따라 허용 가능한 전형적인 지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원자재, 소비재/축산물.

b) 급여/인적 자본 이득 비용을 제외하고 기존 제품/서비스 개선을 위한 R&D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

c) 급여/인적 자본 제도 비용을 제외하고, 광고, 해외 전시회 참가, 즉 부스 개설, 비행기 표 등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한 사업 확장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

d) 특정 R&D/국제 비즈니스 개발 단계와 직접 관련된 간접비

e) 지식 재산권(IP) 신고 및 등록.

f) 임상/현장 시험 비용.

g) 법 준수 및 규제 비용.

h) 지식 근로자 모집 초기 비용.

i) 전문가/기술 컨설팅 수수료.

j) 급여/인적 자본 소득 비용을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운전 자금인 비용. 그리고

k)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금융공사(MIDF)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타 운전 자본 비용.

제공되는 비즈니스지속계획(BSS)에 대한 용자의 마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구매 회전 신용장에 대해 최대 100%까지의 용자.

b) 판매 회전 신용장에 대해 최대 90%까지의 용자.

c) 기간 운전 자금 용자에 대해 최대 90%까지의 용자. 또는

d) 팩토링에 대해 최대 80%까지의 용자.

위에서 언급된 BCF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신청자는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여야 합니다.

b) 말레이시아의 소유 지분이 과반수, 즉 지분의 51% 이상을 말레이시아인이 소유, 그리고

c) 최소 납입자본금이 RM25만

추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www.bioeconomycorporation.my 를 방문하십시오.

4. 환경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4.1 조림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산림 재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i.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 소득세 면제가 되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자격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4.2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가가치가 높고 하이테크를 사용하는 폐기물 재활용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개척자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ITA)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농업 폐기물 또는 농업 부산물 재활용, 화학 물질 재활용 및 재구성된 목재 기반 패널보드 또는 제품의 생산을 포함하여 이러한 활동에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5년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ITA). 이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유산업지역/보세제조창고(FIZ / LMW)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내에서 취득한 폐기물/스크랩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회사는 해외로부터 스크랩/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녹색 기술 인센티브

2014 연도 예산에서 정부는 녹색 기술 (GT) 개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녹색 기술 자산의 구매에 대한 투자세 공제(ITA) 및 녹색 기술 서비스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녹색 기술 프로젝트

녹색 기술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발생한 최초 적격 자본적 지출 일자로부터 최대 5년 간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녹색 기술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투자세 공제(ITA)의 100%에 상당하는 소득세 면제 이러한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2020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색 서비스

녹색 서비스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5년간 또는 2020년 과세 연도까지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한 소득세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의 미처리 소득 손실은 7년간의 연속 평가 연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2020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폐기물 에코 파크(Waste Eco Park, Wep)에 대한 인센티브

폐기물 에코 파크는 폐기물 재활용, 회수 및 처리 활동이 수행되고 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되는 장소로 정의됩니다. 폐기물 에코 파크는 도로, 배수로, 전기 및 가스 설비와 같은 공익 설비, 폐기물 수거 및 분리를 위한 건물 및 시설, 폐수 처리 시설, 폐기물 재활용/회수/처리 시설 및 교육/의식 센터 건물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를 통합하여야 합니다.

개발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 관여한 말레이시아 법인은 다음과 같이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i. WEP 개발자

WEP 내에서 인프라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a) 2016년 과세 연도부터 2025년 과세 연도까지 법정 소득의 70 %에 대한 소득세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의 미처리 소득 손실은 7년간의 연속 평가 연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서는 인센티브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ii. WEP 관리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WEP을 관리, 유지관리, 감독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a) 2016년 과세 연도부터 2025년 과세 연도까지 법정 소득의 70 %에 대한 소득세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의 미처리 소득 손실은 7년간의 연속 평가 연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서는 인센티브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ii. WEP 운영자

WEP에서 폐기물 처리/복구/재활용을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a) 5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한 소득세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의 미처리 소득 손실은 7년간의 연속 평가 연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 b) 최초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ITA)에 상당하는 소득세 면제. 이러한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서는 인센티브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5 가속 자본 공제(ACA)

i. 폐기물 재활용 활동

2001 과세 연도부터 사업상 목적의 적격지출이 발생한 제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공장 및 기계류에 대해 가속 자본 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재활용 전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또는
- 폐기물을 완제품으로 추가 가공하는 데 사용된 경우.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초기 공제(IA)에 대한 20%와 연간 공제(AA)의 40%에 대한 가속 자본 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전력 공급 품질 유지 장비

2005 과세 연도부터 사업 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 공급 품질 유지 장비 관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는 가속 자본 공제(ACA), 즉 20%의 초기 공제(IA)와 40%의 연간 공제(AA)를 받아 2년 내에 자본적 지출액 전액을 상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에너지과학기술환경기후변화부(Ministry of Energy, Science, Technology, Environment & Climate Change)가 지정한 장비만 가속 자본 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1986년 투자촉진법에서는 연구 개발(R&D)을 “소재, 장치, 제품, 생산물 또는 공정의 생산 또는 개선을 위해 연구 결과를 이용할 목적으로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신규 제품 또는 기술 위험과 관련된 모든 체계적, 조사 또는 실험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단 다음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의 품질 관리 또는 소재, 장치, 제품 또는 생산물의 통상적인 시험.

- 사회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의 연구
- 통상적인 데이터 수집.
- 효율성 조사. 그리고
- 시장조사 또는 판매 촉진.
- 소재, 장치, 제품,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대한 통상적인 수정 또는 변경. 또는
- 소재, 장치, 제품,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대한 외형상의 수정 또는 변경.

말레이시아의 보다 통합된 R&D를 위한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제품의 설계,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영위하는 회사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5.1 연구 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i. 계약 R&D 회사

계약 R&D 회사란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 회사 외의 다른 회사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관계 회사란 다른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직접 혹은 간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 R&D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법정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5년간 100% 전액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기간 종료 후의 미처리 소득 손실은 7년간의 연속 평가 연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는
- 10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ITA) 투자세 공제(ITA)는 매 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자본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R&D 회사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 또는 기타 회사에 대해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R&D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1986년 투자 촉진법(PIA)에서는 관계회사를 다른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직접 혹은 간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R&D 회사가 이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R&D 회사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사내 자체 연구

말레이시아에서 자체 사업 목적으로 사내 R&D를 수행하는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50%의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세 공제(ITA)는 매 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처리할 때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R&D 활동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재투자하는 기존 R&D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척자 자격(PS) 또는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a) 계약 R&D 회사

- i) 법정 소득에 대한 세금이 5년간 전액(100%)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S). 소득 기간 종료 후의 미처리 소득 손실은 7년간의 연속 평가 연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첫 번째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b) R&D 회사:

첫 번째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투자세 공제(ITA)는 매 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c) 사내 R&D:

첫번째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년 내에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5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록 V: 재투자를 위한 장려 활동과 제품 목록 참조)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 공공 부문 R&D의 사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 연구소의 자원 기반 R&D 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a) R&D 성과 사업화를 수행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는 자회사에 투자한 액수에 상당하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 b) R&D 성과 사업화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10년간 법정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S)을 신청할 수 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만료 후 발생한 미처리 손실은 7년간의 과세 연도 기간 동안 연속 이월될 수 있습니다. 비자원 기반의 성과의 사업화는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장려 활동/제품 목록의 저축을 받습니다.

5.2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i. 연구개발에 대한 이중 공제

- 회사는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연구개발로 발생한 비자본적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된 연구기관, 승인된 R&D 회사 또는 계약 R&D 회사의 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급한 금액
- 개척자 자격(PS)을 부여받은 회사의 경우 세금 공제 기간 중 발생한 승인받은 R&D 지출은 누적되어 세금 공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말레이시아인 직원의 훈련을 포함해 해외에서 수행된 R&D 활동에 사용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는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연구 성과 사업화를 위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의 사업화로 얻은 소득에 대해 5년간 50%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연구는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6.1 훈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i. 근로자 채용 비용에 대한 공제

근로자 채용 비용은 세금 계산의 목적으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채용 박람회 참여에 따라 발생한 비용, 고용 기관에 대한 대금 지급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채용 전 훈련에 대한 공제

사업 시작 전 발생한 훈련 비용은 1회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당 훈련생을 반드시 채용할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비직원 훈련에 대한 공제

회사가 자사 직원이 아닌 거주자에게 실무 훈련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1회 공제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현금 기부에 대한 공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법정 기관에 의해 설립 유지되는 기술 또는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현금 기부는 1회에 한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승인된 산업, 기술 또는 직업 훈련용 건물에 대한 지출 발생시, 당해 회사는 건물의 건축 또는 매입에 대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i. 교육 기자재에 대한 세금 감면

승인된 훈련 기관과 사내 훈련 프로젝트 그리고 모든 사립 고등교육 기관은 작업실, 방송실, 어학실습실의 실험실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기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및 국내소비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ii.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 면제

교육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비거주자(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iii. 승인된 훈련에 대한 이중 공제

인적자원 개발기금(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HRDF)에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는 승인된 교육훈련에 대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제조회사는 사업 시작 전 또는 후 훈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진흥청(MIDA)에 의해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이나 또는 훈련 기관에서 수행한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을 훈련하고 또한 직원의 솜씨, 감독 및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거나 또는 제품의 생산성 또는 품질을 높이는 데 발생한 지출.

b) 비제조 회사

- 재무부(MOF) 또는 MOF 지정 기관에 의해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이나 또는 훈련 기관이 실시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직원을 훈련하는 데 발생하는 지출.

호텔과 관광업체의 경우 사내 또는 승인된 훈련 기관에서 실시되는 관광업계의 직무 기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x. 인적 자원 개발 기금(HRDF)

산업 인력에 대해서는 제 5장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x. 구조화된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재능공사(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의 승인을 받은 구조화된 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회사에 의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중 공제가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당해 인턴 프로그램은 학사 프로그램, 석박사 학위 그리고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훈련받아 위의 학위들과 상응하는 직업 인증을 추구하는 말레이시아 인턴/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b) 당해 인턴 프로그램의 지속 기간은 10주 이상으로 인턴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은 RM500 이상입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2012 과세 연도부터 2019 과세 연도까지 적용됩니다.

7.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인센티브

운송, 통신 및 공익설비 부문의 하위 부문 프로젝트로서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pproved Service Projects, ASP)는 다음의 세제 인센티브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7.1 ASP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i. 1967년 소득세법 제 127절에 따른 세금 면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를 수행하는 회사는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Section 127)에 따라 5년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를 시행하는 회사는 10년간 법정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1967년 소득세법 별표 7B에 따른 투자 공제

1967년 소득세법 별표(Schedule) 7B에 따른 투자 공제(Investment Allowance, IA)는 제127절에 따른 인센티브의 대안입니다. 투자 공제(IA)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를 수행하는 회사는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공제는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으며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를 수행하는 회사는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의 전액(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공제액은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ASP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원료, 구성품, 기계류, 장비, 예비부품과 소모품에 대한 수입 관세, 판매세와 국내소비세의 면제.

운송 및 통신 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발전소 및 항만 운영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예비부품과 소모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8.1 말레이시아 선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 2012년 과세 연도부터 해운 회사가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항으로 얻은 소득은 70%가 면제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말레이시아 선박”이란 1952년 상선 해운령 개정안(Merchant Shipping Ordinance 1952(Amended))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말레이시아 선적으로 등록된 외항선으로 연락선(ferry), 바지선, 예인선, 보급선, 선원용 선박, 거룻배(lighter), 준설선(dredger), 어선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합니다.
- “말레이시아 선박”에 취업 승선한 모든 개인이 당해 승선근로로 얻은 소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 말레이시아 선사에 ISO 인증 컨테이너선을 용선해줌으로써 비거주자가 수령한 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9.1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가속 자본 공제(ACA)

2009 과세 연도부터 2015 과세 연도까지 말레이시아 거주자인 개인은 사업상 목적의 모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구입과 관련해 과세 연도 기준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가속 자본 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속 자본 공제(ACA)는 20%의 초기 공제(IA)와 80%의 연간 공제(AA)가 주어집니다. 이는 적격 지출액은 1년 내에 전액을 상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저개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덜 개발된 지역으로 사업 운영을 확장하는 기존의 제조/서비스 회사 또는 새로 설립된 제조/서비스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회사가 법정 소득을 얻는 최초의 과세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15년간의 과세 연도(5+5+5)까지 100%의 소득세 면제. 면제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회사의 면제 후 소득에서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 동안의 누적 손실은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10년의 기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투자세 공제)의 100%에 상응하는 소득세 면제. 이 공제액은 매 과세 연도 법정 소득에 대해 100%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및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개발에 사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 시 인지세 면제.
-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 및 서비스 활동에 관련된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에 대한 수수료 또는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 시행 중인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조건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완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와 구성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그리고

- 시행 중인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조건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선정된 서비스 부문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이 인센티브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한 신청에 대해 유효합니다.

11. 기타 인센티브

이 절은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제조업, 농업, 항공우주, 관광, 환경관리,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통신기술,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 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루고 있습니다.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와 제조 관련 서비스.

11.1 산업용 건물 공제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 또는 매입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에 제공됩니다. 그러한 특정 목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조업, 농업, 항공우주, 광업, 기반시설, 연구,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 및 관광부(Ministry of Tourism)에 등록된 호텔업.
- 교육부(Minister of Education) 또는 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된 산업, 기술 또는 직업 훈련, 학교 또는 교육 기관, 유치원.
-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에 등록된 사립 아동 돌봄 센터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MSC Malaysia 내 건물에 대한 산업용 건물 공제

사이버자야(Cyberjaya) 내에 MSC Malaysia 자격 회사들이 사용할 더 많은 건물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사이버자야 내에서 MSC Malaysia 자격 회사들이 입주한 신축 건물의 소유자들에 대해 10년간 산업용 건물 공제(IBA)가 제공됩니다. 대상 신축 건물에는 준공은 되었으나 아직 MSC Malaysia 자격 회사들이 입주하지 않은 건물도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감사 수수료 공제

사업비용의 절감과 기업의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감사 수수료 지급으로 발생한 지출은 소득세 산정 시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으로 봅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종자자금, 창업준비 자금, 또는 창업초기 자금조달단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는 총 투자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다 많은 엔젤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엔젤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총 투자액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무부(MOF)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11.5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설비 및 기계류를 포함한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과 설치 장소의 원상 복구 비용은 1967년 소득세법 별표 3(Schedule 3)에서는 자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공제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무보고기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 FRS) 116에서는 자산 비용은 자산의 해체, 철거 및 설치 장소의 원상 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추정 소요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67년 소득세법과 재무보고기준(FRS) 116상의 조세처리 통일을 위해 1967년 소득세법 별표 3에 다음의 조건 하에 설비 및 기계류를 포함한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과 설치 장소의 원상 복구 비용에 대한 균형 공제*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균형공제액은 공장 설비 및 기계류의 해체 및 철거와 설치 장소 원상 복구 비용을 당해 자산 처분 당시 설비 및 기계에 대한 지출 잔액에 합산하여 정합니다.

11.6 소유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특허, 산업 디자인 또는 상표와 같은 소유권의 취득 시 비용이 발생하는 (70% 이상이 말레이시아 시민이 소유한) 제조 회사.

발생한 컨설팅 수수료, 법률 수수료, 인지세를 포함하여 소유권 취득 비용. 단, 로열티 지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취득을 위해 발생한 5년간의 비용에 대해 매년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7 관세 관련 산업

i. 원재료/구성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완제품의 수출 또는 내수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구성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완제품의 경우 원료/구성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 생산이 되긴 하나 품질과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한 때에는 당해 원재료/구성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통상적으로 완전 면제됩니다.

내수용 완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와 컴포넌트에 대한 수입관세는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과세대상 원료/구성품으로 만들어질 완제품이 수입관세 대상품목이 아닌 때에도 완전 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는 수입이 확인된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완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2013년 관세(면제) 명령과 2013년 판매세(면제) 명령에 의한 기계류, 장비, 부품, 소모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또는 판매세 면제 자율신고

주관세지역(PCA)의 제조업체는 자율신고 절차를 통해 이들 면제 명령에 의한 기계류, 장비, 부품, 소모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또는 판매세의 면제를 청구함으로써 이러한 편리한 절차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율신고 절차에 따르면, 회사는 수입 또는 구매할 기계류, 장비, 부품과 소모품의 목록과 함께 투자진흥청(MIDA)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관세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세관이 완전한 제출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율신고 절차가 도입되기 전에는 1967년 관세법 14(2)절의 규정 및/또는 1972년 판매법 10절의 규정에 따라 기계류, 장비, 부품과 소모품의 수입관세 및/또는 판매세 면제에 대해 투자진흥청(MIDA)에 신청할 경우, 완벽한 정보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4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2013년 관세(면제) 명령과 2013년 판매세 (면제) 명령은 2014년 5월 2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면제제도의 주된 수혜 대상은 주관세지역(PCA)의 제조업체들입니다.

- a) 2013년 관세(면제) 명령 115항에 따라 허가된 제조보세창고, 보세창고 또는 자유지역에서 수입 또는 구매한 부품과 소모품을 제외한 기계류 및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b) 2013년 판매세(면제) 명령 196항에 따라 허가된 제조보세창고, 보세창고 또는 자유지역에서 수입 또는 구매한 부품과 소모품을 제외한 기계류와 장비에 대한 판매세 면제.
- c) 2013년 판매세 (면제) 명령 106항에 따라 (1972년 판매세법에 따라 허가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기계류, 장비, 부품과 소모품에 대한 판매세 면제.

신청서는 기계류, 장비, 부품 및 소모품을 수입 또는 구매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그러한 세금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전체 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라는 충고가 주어집니다. 자율 신고와 자율 규제 환경과 더불어 이 새로운 절차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상품 통관을 위해 은행의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진흥청(MIDA)는 이 세금 면제를 위한 자율 신고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편의로 이용자는 전자신고 디지털 증서(LHDN 발급) 또는 MIDA에서 디지털 증서를 다운로드하여 MIDA에 제출하기 전 신청서에 디지털 서명하면 됩니다.

iii. 외주 제조활동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말레이시아 상표 소유자가 제조활동을 외주할 경우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a) 국내외 계약 생산업체에 의한 완제품 제조 시 사용된 원자재와 구성품에 대한 수입 관세의 면제.
- b) 국내 계약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완제품에 사용될 해외 계약 제조업체의 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의 면제.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정비, 수리 또는 오버홀(MRO) 활동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MRO 활동에 대한 판매세 면제

2018년 판매세(세금 납부 면제된 개인) (수정) (번호 2) 명령, 별표 A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등록된 항공우주 MRO 회사는 다음에 대해 판매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 33A 항에 따른 기계류, 장비, 특수 도구.
- b) 말레이시아 내에서 MRO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33B 항에 따른 부품, 구성품, 자재 및 특수 소모품

신청서는 자진 신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청을 위해 회사는 수입 또는 구매 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확인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회사는 판매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진흥청(MIDA)이 발행하는 확인서와 기계류, 장비, 특수 도구, 부품, 구성품, 재료 및 특수 소모재 목록을 말레이시아 관세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신청은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매세 면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https://mysst.customs.gov.my>를 통 제출하여야 합니다.

MRO 활동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등록된 항공우주산업 MRO 회사는 기계류, 장비, 특수 도구, 부품, 구성품, 재료 및 소모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입관세 면제에 대한 신청서는 재무부(MOF)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 화물 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제조업체가 자사 상품을 사바주와 사라왁 주로부터 말레이시아 반도의 항구로 해상 운송할 경우, 화물 운송료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vi. 말레이시아 상표 촉진에 대한 이중 공제

말레이시아 상표를 육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상표의 등록된 소유권자인 회사 또는 이와 같은 그룹 내 회사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때에 한하여 당해 상표 광고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 회사는 말레이시아 상표의 등록 소유권자 5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b) 공제는 한 과세 연도에 1개 회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 당해 제품은 수출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8 환경 보호에 대한 기부

오로지 환경 보호와 보존만을 위해 승인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단 한 차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9 직원 주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조업,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 호텔 또는 관광 사업에서 일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당해 건물의 건축/매입으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공제를 제공하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B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과세 제도





1. 말레이시아의 조세 제도

2.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

3. 법인세

4. 개인소득세

- 4.1 거주자 개인
 - 4.1.1 인적 공제
 - 4.1.2 세금 환급
- 4.2 비거주자 개인

5. 원천징수세

6. 부동산 양도소득세

7. 판매세 및 서비스세

- 7.1 판매세
 - 7.1.1 판매세율
- 7.2 서비스세
 - 7.2.1 과세 가능한 서비스
 - 7.2.2 과세
 - 7.2.3 서비스세율
 - 7.2.4 신용카드와 고객카드에 대한 서비스세율

8. 수입 관세

9. 소비세

10. 관세항소법원 및 사전심사제도

11. 이중과세방지협약

조세 제도

1. 말레이시아의 조세 제도

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획득한 소득 또는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수령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은행, 보험,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기업을 제외한 개인이 과세연도 동안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수령한 소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조세 행정 제도를 현대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협동조합과 봉급생활자 그룹을 대상으로 신고 납세(self-assessment) 제도가 시행되었고 그리고 소득세 과세 기간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행 기간이 어떻게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득 또는 이윤.
- 고용으로 발생한 이득 또는 이윤(급여, 보수 등).
- 배당금, 이자 또는 할인금
- 임대료, 로열티 또는 할증 수익
- 연금, 보험 연금 또는 기타 정기 지급금
- 기타 소득 성격의 이득 또는 이윤

과세 대상 소득은 대상이 될 경우 당해 소득 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허용 가능한 비용, 자본 공제액 및 인센티브를 조정한 후에 산출됩니다.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의 제 34절(Section 34)에서는 대손 충당을 위한 특정 조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 공제는 허용하지만 장부상 감가상각비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처리 사업 손실은 7년 연속 이월할 수 있으나, 당해 기간 말에 공제할 수 없는 미처리 잔여금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법인세

회사는 거주자 회사 여부와는 상관 없이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은행 및 보험업과 해상 및 항공 운송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취득하고 거주자 회사에 의해 송금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당해 회사는 거주자 회사로 간주됩니다.

2016년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은 24%입니다. 이 세율은 다음의 사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탁 기관
- 사망 시 말레이시아 국외에 주소지를 두었던 개인의 재산에 대한 유언 집행자
- 법원이 지정한 수령인
- 2D 조항이 적용되는 유한 책임 파트너회사 이외의 유한 책임 파트너회사

과세 기준 연도 초에 납입자본금/자본 기여 금액이 RM250만 이하인 말레이시아 거주자 회사와 유한 책임 파트너회사는 다음의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최초의 RM 500,000 과세 소득에 대해 - 17%

그 이후의 과세 소득에 대해 - 24%

석유 공급 체인의 1차 부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38%의 석유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0 과세연도부터 1967년의 석유(소득세)법에 따라 석유 공급 체인의 1차 부문을 담당하는 석유회사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당해연도 과세체계와 신고납세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협동조합 또는 신탁기관이 헌금하는 자캣(zakat) 납부액에 대한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주 정부, 지방 당국, 또는
- 말레이시아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 Malaysia, IRBM) 청장이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또는
- 재무부장관 또는 체육청장이 승인한 스포츠 활동, 또는
-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국익 사업

2009 과세연도부터 ii, iii 및 iv 항목의 기부금은 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총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소득세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율은 개인의 거주자 신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거주자 신분은 1967년의 소득세법 제 7절에서 규정한 대로 말레이시아 체류 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개인은 과세 대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4.1 거주자 개인

거주자 개인은 2016 과세연도부터 0-26%의 누진세율로 인적 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4.1.1 인적 공제

거주자 개인의 과세 소득은 총 소득에서 인적 공제를 차감한 후 산출됩니다. 사용 가능한 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개인 공제의 종류	2019 과세연도(RM)
1.	본인 및 부양가족	9,000
2.	부모님 의료비	5,000 (한도)
3.	기초적인 보조 기구	6,000 (한도)
4.	장애인	6,000
5.	교육비(개인)	7,000 (한도)
6.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6,000 (한도)
7.	정밀 종합건강검진비	500 (한도)
8.	생활 스타일: i. 도서, 정기간행물, 잡지 및 출판물 구입비 ii.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구입비 iii. 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포츠 장비 구입비 그리고 iv. 개인 명의로 등록된 광대역 통신 이용료	RM2,500 (한도)
9.	국립교육저축제도(SSPN)의 순저축액	RM 8,000 (한도)
10.	배우자/이혼 수당 지급액	RM 4,000 (한도)

번호	개인 공제의 종류	2019 과세연도(RM)
11.	장애인 배우자	RM 3,500
12.	일반 자녀 공제	RM 2,000 (한도)
13.	정식 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의 미혼 자녀("A" 레벨, 증명서, 대학 예비 과정)	RM 2,000 (한도)
14.	18세 이상의 미혼 자녀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i) 말레이시아에서 준학사학위 이상의 자격 과정(대학 예비 과정은 제외) 재학 중 (ii)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학위 또는 동등 학력 취득 과정(석박사 포함) 재학 중 (iii) 훈육 및 교육 기관은 해당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M 8,000 (한도)
15.	장애 자녀 말레이시아에서 준학사학위 이상의 자격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관련 정부 당국의 인가를 받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 과정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미혼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는 RM 6,000의 추가 면세	RM 6,000 (한도)
16.	생명 보험 및 EPF (근로자공제기금)	생명 보험: RM 3,000 (한도) EPF: RM 4,000 (한도) 연금 퇴직 제도를 선택한 공무원: RM 7,000 (한도)
17.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SC)가 승인한 개인연금제도와 거치 연금 납부료	3,000 (한도)
18.	교육 또는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료	3,000 (한도)

4.1.2 세금 환급

거주자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다음의 환급 방식으로 줄어 듭니다.

- i. 과세 소득이 RM35,000 미만인 거주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 환급

2009년 과세연도부터 과세 소득이 RM35,000 이하인 개인은 RM400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부인의 소득이 합산 과세될 경우, 부인은 RM400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별도로 과세되는 부인도 과세 소득이 RM35,000 이하일 경우 RM400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세금 환급	2009 과세연도부터 (RM)
a	별도 과세 부인 남편	400 400
b	합산 과세 부인 남편	400 400
	총계	800
c	남편 또는 부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의 과세 부인 남편	 400 400
	총계	800

- v. 기타 세금 환급

번호	Tax Rebate	(RM)
a	자캇(Zakat)/피트라(Fitrah)	소득세 과세액 전액까지

4.2 비거주자 개인

2016 과세연도부터 비거주자 개인은 인적 공제 없이 28%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5. 원천징수세

비거주자 개인은 다음의 최종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 소득 종류에 대해 10%

- i. 재산 또는 권리의 이용, 플랜트, 기계류 또는 기타 기구의 설치 또는 운전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종업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
- ii. 과학, 산업, 상업 사업, 벤처, 프로젝트 또는 계획의 관리 또는 행정과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 지원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그리고
- iii. 임대료 또는 동산(moveable property)의 사용을 위한 계약/합의에 따른 기타 지불금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제공하거나 수행한 (a) 및 (b)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령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제공한 기술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말레이시아 내 호텔 숙박 관련 지급 비용 또는 정산 비용은 원천징수 목적의 총 기술 수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납된 원천징수세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 지급된 총액이 아니라 미납 세액에 대해서만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부동산 양도소득세

말레이시아에서는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물권, 옵션 또는 기타 권리의 처분은 물론, 부동산 회사의 주식 처분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거주용 및 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RPGT(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처분	회사	회사 이외와 비 시민권자 그리고 비 영주권자인 개인	비 시민권자 및 비 영주권자인 개인
3 년 이내	30%	30%	30%
4 차 연도	20%	20%	30%
5 차 연도	15%	15%	30%
6 차 연도 & 그 이후 연도	10%	5%	10%

부동산 양도소득세(RPGT)는 실제 부동산 소유자한테는 면제되므로 부과되지 않으며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다음의 경우 순 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i. 말레이시아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개인이 일생에 단 한번 하나의 개인 거주지를 처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
말레이시아 국민인지 아니면 영주권자인지의 선택 결과는 문서로 작성됩니다.
- ii. 부모와 자녀, 부부, 조부모와 손주 사이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
- iii. 부동산 양도소득세(RPGT)는 구입 금액, 개보수 비용과 부대 비용(예컨대, 영수증 제출 시 법무 관련 수수료와 인지세)과 같은 모든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순 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 iv.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RM10,000 또는 순 차익의 10% 중 높은 금액을 면제해 줍니다.

회사와 개인의 세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www.hasil.gov.my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7. 판매세 및 서비스세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의 판매세법(Sales Tax Act)과 2018년의 서비스세법(Service Act)이 그 하부 법령과 함께 도입되어 2014년의 상품서비스세법(GST)을 대체했습니다.

7.1 판매세

2018년의 판매세법에 따라 판매세는 수입 또는 국내 제조 상품에 대해 수입 시점 또는 해당 상품의 판매 시점 또는 등록된 제조업체에 의해 처분된 시점에 부과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부과되는 판매세는 단일 단계 세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완제품과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됩니다.

판매세는 상품이 판매되거나, 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되거나, 또는 상품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된 시점에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과세 대상 상품에 대해 부과됩니다.

수입 상품에 대한 판매세는 해당 상품이 신고되고, 관세가 납부되고, 또한 세관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부과됩니다.

12개월 내에 RM500,000을 초과하는 판매금액의 과세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자는 2018년의 판매세법(Sales Tax Act) 제 12절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판매액이 RM500,000 이하인 과세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자는 2018년의 판매세법 제 14절에 따라 자진 등록하여 이 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 조항이 있습니다.

하청업체로 사업을 영위하고 12개월 이내 하청 공사의 총 노임이 RM500,000을 초과하는 제조자는 2018년의 판매세법 제 12절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7.1.1 판매세율

판매세는 종가세의 일종으로 해당 조항에 나와 있듯이 과세 대상 상품 그룹에 따라 (5%~10%의)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석유 판매세는 여타 과세 상품과는 달리 특별 세율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7.2 서비스세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세는 “과세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된 특정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 단일 단계 세금 형태입니다. 서비스세는 2018년의 판매세 규정의 첫 번째 요율표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정한 과세 가능한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에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2018년의 판매세법(STA 2018)은 지정 지역, 자유무역 구역, 허가 받은 창고, 허가 받은 제조 창고 및 공동개발구역(Joint Development Area, JDA)을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적용됩니다.

7.2.1 과세 가능한 서비스

과세 가능한 서비스는 2018년의 서비스세 규정(Service Tax Regulations 2018)의 첫 번째 요율표에 들어 있는 다양한 범주에 목록이 올라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과세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서비스에 규정된 최저 한도를 초과하는 과세 가능한 개인이면 누구나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 범주로는 숙박, 식료품 업자, 나이트클럽, 댄스홀, 헬스 센터, 개인 클럽, 골프 클럽 및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 베팅 및 게임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그리고 보험, 통신, 주차장 사업자, 광고 등의 기타 서비스 제공자 등이 있습니다.

7.2.2 과세

서비스세는 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등록된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제공하는 과세 가능한 서비스의 조항에 해당될 경우 부과됩니다.

서비스세는 등록된 개인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과세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대금을 수령했을 때 부과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7.2.3 서비스세율

서비스세율은 2018년의 서비스세(세율) 명령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서비스세율은 2018년의 STA(Sales Tax Act, 판매세법) 제 9절에 따라 정해진 바와 같이 과세 가능한 서비스 대상이 되는 보험 증권 가격 또는 보험료, 베팅 및 게임료, 등등의 6%입니다.

7.2.4 신용카드와 고객카드에 대한 서비스세율

신용카드와 고객카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비스세율은 주 카드 및 보조 카드에 대해 연 RM25입니다. 서비스세는 카드 발급 일자와 그 후 12개월마다 또는 카드 발급 후 몇 개월마다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카드 갱신일자와 그 후 12개월마다 또는 카드 갱신 후 몇 개월마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알고 싶으면 <https://mysst.customs.gov.my>를 방문하십시오.

8. 수입 관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관세는 대부분 종가세(ad valorem) 부과 대상이 되나, 많은 품목의 경우 종량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자유화에 발 맞추어 광범위한 상품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었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상품교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의 회원국으로 이 협정에 따라 ASEAN 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99% 이상에 대해 수입관세가 2010년 1월 1일부터 효과적으로 철폐되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상품 교역, 원산지 규정 및 투자 분야에서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 뉴질랜드 및 인도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또한 중국, 일본, 한국, 호주/뉴질랜드 및 인도와는 아세안 산하의 지역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는 합의된 일정대로 인하되거나 철폐될 것입니다.

9. 소비세

소비세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 중 일부 선정된 품목, 즉, 담배, 담배 제품, 알콜 음료, 플레잉 카드, 마작용 타일과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소비세는 자동차, 플레잉 카드와 마작용 타일에 대해서는 종가세를 부과되는 한편, 담배, 담배 제품과 주류에 대해서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결합한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대해 소비세를 다음 도표의 내용대로 부과해 왔습니다.

관세 번호	범주	전당	소비세	예
2009	과일 주스, 야채 주스	> 12 gram/ 100m	RM0.40/ liter	오렌지 주스 라임 주스
2202	가) 탄산 음료, 낙농 제품 외의 비 알콜 음료	> 5 gram/ 100m	RM0.40/ liter	콜라 아이소토닉 음료 탄산 음료
2202	나) 낙농 제품	> 7 gram/ 100m	RM0.40/ liter	초콜릿향 우유

10. 관세항소법원 및 사전심사제도

관세항소법원(Customs Appeal Tribunal, CAT)은 1967년의 관세법, 2018년의 판매세법, 2018년의 서비스세법 및 1976년의 국내소비세법에 따른 문제에 관한 관세청장(Director General of Customs)의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재심 청구에 대해 판정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입니다. 또한 관세청 판정은 1967년의 관세법, 2018년의 판매세법, 2018년의 서비스세법 및 1976년의 국내소비세법에 따라 기업의 사업 활동 계획에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의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관세청이 내린 판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당해 판정은 일정 기간 신청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관세청 판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의 품목 분류,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판정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의 가액 결정 원리에 관해 관세청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판정 신청은 충분한 사실 자료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품 수입 또는 서비스 제공 전에 관세청 판정을 신청하여 관세청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이중과세방지협약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 DTA)은 국경을 넘나드는 소득의 흐름에 관해 각국의 과세권을 규정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세금 감면 또는 면제를 제공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양국 간에 체결되는 협약입니다.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국내외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 ii. 말레이시아의 특별한 조세 인센티브가 자본 수출국의 납세자에게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 iii.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세금 감면에 비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iv. 조세 포탈과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많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또한 국제조세협약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세계와의 교역 및 투자 증진의 필요성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산업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외국인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조세 분야에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보장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조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 알바니아	• 독일	• 몽골	• 남아프리카공화국
• 아르헨티나*	• 홍콩	• 모로코	• 스페인
• 호주	• 헝가리	• 미얀마	• 스리랑카
• 오스트리아	• 인도	• 나미비아	• 수단
• 바레인	• 인도네시아	• 네덜란드	• 스웨덴
• 방글라데시	• 이란	• 뉴질랜드	• 스위스
• 벨기에	• 아일랜드	• 노르웨이	• 시리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이태리	• 파키스탄	• 태국
• 브루나이	• 일본	• 파푸아 뉴기니	• 터키
• 캐나다	• 요르단	• 필리핀	• 투르크메니스탄
• 중국	• 카자흐스탄	• 폴란드	• 아랍에미리트(UAE)
• 칠레	• 한국	• 카타르	• 영국
• 크로아티아	• 쿠웨이트	• 루마니아	• 미국*
• 체코공화국	• 키르기스스탄	•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 덴마크	• 라오스	• 산마리노	• 베트남
• 이집트	• 레바논	• 사우디아라비아	• 베네수엘라
• 피지	• 룩셈부르크	• 세이셸	• 짐바브웨
• 핀란드	• 몰타	• 싱가포르	
• 프랑스	• 모리셔스	• 슬로바키아 공화국	

* 제한적인 협약

대만(말레이시아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사무처가 대표함)의 경우 다음의 소득세면제령(Income Tax Exemption Order)을 통해 이중과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 i. P.U.(A) 201 (1998)
- ii. P.U.(A) 202 (1998)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hasil.gov.my를 방문하시거나 lhdn_int@hasil.gov.my에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이민 절차





1. 말레이시아 입국 요건

- 1.1 여권 또는 여행 서류
- 1.2 비자 요건
- 1.3 방문비자(Passes) 요건

2. 파견직 외국인의 취업

- 2.1 파견직 외국인 보직 유형
- 2.2 파견직 외국인의 고용 지침

3.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이민 절차

1. 말레이시아 입국 요건

1.1 여권 또는 여행 서류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은 유효한 말레이시아 여권 또는 말레이시아로 여행하는 데 효력이 있는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여행 서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들 서류는 적어도 말레이시아 입국일자 6개월 전에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비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

• 아프가니스탄*	• 코트디부아르	• 미얀마(정규여권)
• 앙골라	• 지부티	• 네팔
• 부탄	• 적도 기니	• 니제르
• 부르키나 파소	• 에리트리아	• 르완다
• 부룬디	• 에디오피아	• 세르비아공화국 & 몬테네그로공화국
• 중앙아메리카공화국	• 기니-비사우	• 스리랑카
• 중국	• 홍콩 (신분증명서 또는 신분증빙서류)	• 타이완
• 콜롬비아	• 인도	• 유엔(Laissez Passer)
• 콩고민주공화국	• 라이베리아	• 서사하라
• 콩고공화국	• 말리	

비자가 필요한 영연방국가

• 방글라데시	• 가나	• 나이지리아
• 카메룬	• 모잠비크	• 파키스탄

말레이시아가 인정하지 않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은 반드시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물론이고 해외의 말레이시아 대표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자는 각국의 가장 가까운 말레이시아 대표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가장 가까운 고등판무관실(High Commission) 또는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비자 요건

비자는 외국인의 여권 또는 기타 인정된 여행 문서에 당해 문서 소지인이 말레이시아 입국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찍힌 승인 도장을 말합니다.

말레이시아 입국을 위해 비자를 필요로 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은 반드시 입국 전 해외 말레이시아 대표사무소에서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3개월 초과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 알바니아	• 헝가리	• 폴란드
• 알제리아	• 아이슬란드	• 카타르
• 아르헨티나	• 아일랜드	• 루마니아
• 호주	• 이태리	• 산마리노
• 오스트리아(비엔나)	• 일본	• 사우디아라비아
• 바레인	• 요르단	• 슬로바키아
• 벨기에	• 키르기스스탄	• 한국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쿠웨이트	• 스페인
• 브라질	• 키르기스공화국	• 스웨덴
• 크로아티아	• 레바논	• 스위스
• 쿠바	• 리히텐슈타인	• 튀니지
• 체코공화국	• 룩셈부르크	• 터키
• 덴마크	• 모로코	• 투르크메니스탄
• 이집트	• 네덜란드	• 아랍에미리트(UAE)
• 핀란드	• 노르웨이	• 영국
• 프랑스	• 오만	• 우루과이
• 독일	• 페루	• 예멘

14일 초과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 이란	• 마카오 (여행허가서/포르투갈 신원증명서)	• 소말리아
• 이라크	• 팔레스타인	• 시리아
• 리비아	• 시에라이	

1개월 초과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 아르메니아	• 과테말라	• 파나마
• 아제르바이잔	• 기니공화국	• 파라과이
• 바베이도스	• 아이티	• 포르투갈
• 벨라루스	• 온두라스	• 러시아
• 베냉	• 홍콩 특별 행정구	• 상투메 프린시페
• 볼리비아	• 카자흐스탄	• 세네갈
• 불가리아	• 라트비아	• 슬로베니아
• 캄보디아	• 리투아니아	• 수단
• 카보데르데	• 마카오 특별 행정구	• 수리남
• 차드	• 마케도니아	• 타지키스탄
• 칠레	• 마다가스카르	• 토고
• 코스타리카	• 몰도바	• 우크라이나
• 에콰도르	• 모리타니	• 우즈베키스탄
• 엘살바도르	• 멕시코	• 바티칸 시국
• 에스토니아	• 모나코	• 베네수엘라
• 가봉	• 몽골	• 짐바브웨
• 조지아	• 니카라과	
• 그리스	• 북한	

미국 국민의 경우 방문, 사업 또는 학업을 위한 방문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취업을 위한 입국은 제외).

이스라엘 국민의 경우 비자가 필요하며 또한 반드시 말레이시아 내무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르비아공화국 및 몬테네그로공화국의 국민의 경우 사전 허가는 필요하지 않고 비자만 필요합니다.

아세안 회원국(미얀마 제외) 국민의 경우 1개월 미만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개월 초과 체류의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브루나이 및 싱가포르 국민의 경우 제외)

상기 국가 이외의 여타 국가(이스라엘 제외) 국민은 1개월 이하 체류 시 방문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입국이 허용됩니다.

주:

* 신원 조회를 거친 비자, 즉 말레이시아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1.3 방문비자(Passes) 요건

단순 방문 또는 사업상 방문 이외의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입국 시에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도착 전에 방문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비자는 승인된 기간 동안 체류를 허가한다는 취지로 여권 속에 찍힌 승인 도장을 말합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인은 반드시 말레이시아에서의 일시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필요 시) 이외에 입국 시점에 방문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 비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방문자의 말레이시아 체류 기간 동안 신원과 필요 시 본국 송환을 책임지겠다는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입국 시 외국인 방문자에게 발급되는 체류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단기 (단순) 방문비자

단순 방문 또는/및 다음과 같은 사업상 방문 목적의 외국인에게는 방문비자가 발급됩니다.

- 회사의 회의, 총회 또는 세미나 참석, 회사의 회계 조사 또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회사의 소유주와 대표
- 사업과 투자 기회 또는 제조 공장 설립을 탐색하고자 입국하는 투자자 또는 사업가
-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기 위한 제품을 소개는 하되 직접 판매나 유통에 종사하지 않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회사 대표
- 재산의 판매 또는 임대 협상을 위해 입국하는 재산 소유자
-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취재할 목적으로 입국하는(말레이시아 내무부의 승인) 대중 매체의 외국인 언론인 또는 기자
- 스포츠 행사 참가자
- 말레이시아 현지의 대학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또는 친선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학생
- 상기 활동 외에 이민국장이 승인한 여타 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방문객

이들 방문비자는 취업이나 신규 기계류의 설치 감독 또는 공장 설립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ii. 장기 (단순) 방문비자

장기 단순 방문비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 잠정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의 자격에 따라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인의 배우자로 장기 단순 방문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인은 어떤 형태이든 그리고 자신의 단순 방문비자를 취업 방문비자 또는 (임시 취업) 방문 비자로 전환하지 않고서도 어떤 사업이나 전문 직업에 유급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iii. (단기 취업) 방문 비자

2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단기 취업) 방문비자가 발급됩니다.

iv. 취업 비자

취업비자는 최소한 2년의 기간 동안 취업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신청자가 관련 주 무관청으로부터 파견직 외국인 지위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v. 전문직 방문비자(PVP)

전문직 방문비자는 외국인이 대행회사와의 단기 계약 업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자원 봉사자

- 초빙된 강사/연사
- 기계의 설치 또는 보수 전문가
-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자
- <https://esd.imi.gov.my>

예술가

- 영화 촬영 또는 공연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앨범이나 신제품의 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https://epuspal.kkmm.gov.my>

선교사 (이슬람 또는 기타 종교)

- 국제기구 회원
-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정한 연구원
- 종교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푸트라자야의 비자사업부 이민국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은 다양하나 어느 한 시점에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신청은 관련 대행회사가 해야 합니다.

vi. 동반 비자

동반 비자는 파견직 외국인 공무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편의 제도입니다. 동반 비자는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18 미만의) 자녀, 부모 및 사실혼 관계의 부인에게 발급됩니다. 이 동반 비자는 취업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취업 비자가 발급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학생 비자

학생 비자는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로부터 교육 과정을 승인 받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한 말레이시아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로부터 입학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유의사항: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경우 <https://educationmalaysia.gov.my>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파견직 외국인의 취업

말레이시아 정부는 궁극적으로 말레이시아인이 모든 취업 직종에서 훈련을 받아 취업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모든 직급의 취업 패턴이 말레이시아의 다민족 구성을 반영하도록 회사는 더 많은 말레이시아인을 훈련할 것을 권장 받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훈련 받은 말레이시아인이 부족할 경우, 회사는 파견직 외국인을 '주요 보직' 또는 '한시 보직'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주요 보직은 영구적으로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보직인 반면, 한시 보직은 특정 기간 이내 충원되는 보직입니다.

2.1 파견직 외국인의 보직 유형

파견직 외국인은 다음의 보직에 충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i. 주요 보직

이 보직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소유의 개인 회사와 법인의 고위 관리직을 말합니다. 주요 보직은 회사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직입니다. 파견직 외국인은 회사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의 방침을 결정할 책임을 집니다.

ii. 한시 보직

a) 임원 보직

이 보직은 중간급 관리자 및 전문가 보직을 말합니다. 이 보직은 해당 직종 관련 전문 자격, 실무 경험, 기술 및 전문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파견직 외국인은 회사의 사업 집행과 직원 감독의 책임을 집니다.

b) 비 임원직

이 보직은 특정 또는 실무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기술직을 수행하는 보직입니다.

2.2 파견직 외국인의 고용 지침

파견직 외국인의 고용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관련 인가 단체에의 파견직 보직 신청
- 파견직 외국인에 대해 승인 기관이 승인하는 즉시 회사는 반드시 이민국에 취업비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 활동, R&D 활동,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 및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며 투자진흥청(MIDA) 관할의 조세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회사

제조 활동, R&D 활동, 4성급 이상의 호텔, 그리고 관광 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고 투자진흥청(MIDA) 관할의 조세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이 최저 납입자본금을 가진 파견직 외국인 보직을 고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100% 말레이시아인 소유 회사: RM250,000
- 외국인과 말레이시아인 공동 소유: RM350,000
- 100% 외국인 소유 회사: RM500,000

주요 보직의 승인은 회사가 반드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야 하며 적어도 RM1,000,000의 외국인 납입자본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의 저축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요 보직의 숫자는 외국인 납입자본금과 직접 연계될 수는 없습니다.

한시 보직에 대한 승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저 기본급 RM5,000 이상
- 최저 학력 및 최저 경력
 - 제조 회사:
 -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그리고/또는
 - 준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그리고/또는
 - 기술고등학교 졸업자로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회사가 제안하는 학력/경력 중 높은 자격.

b) 계약 R&D 회사, R&D 회사 그리고 사내 R&D 회사.

-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그리고/또는
- 준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회사가 제안하는 학력/경력 중 높은 자격.

c) 4성급 이상의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

- 최소 학사 학위 소지자는 호텔/관광산업 경력 5년 이상.

해외 주재원의 수는 각 사안별 타당성에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단, 외국인이 전체 또는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계약 R&D 회사, R&D 회사 및 사내 R&D 회사는 총 R&D 직원의 최대 50%, 즉 파견직 외국인 대 말레이시아인 R&D 직원의 비율이 최대 1 대 1의 조건의 저축을 받습니다. 한시 보직의 기간은 최대 5년 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본부(OHQ), 지역개발법인(RDC) 및 국제조달센터(IPC) 그리고 주요 허브(Principal Hub)

운영본부(OHQ), 지역개발법인(RDC), 국제조달센터(IPC) 및 주요 허브(Principal Hub)의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영본부(OHQ), 지역개발법인(RDC), 국제조달센터(IPC)는 최소한 납입자본금이 RM500,000 이상인 경우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허브(Principal Hub)는 RM250만 이상의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의 수는 회사의 요건을 기준으로 고려되며, 한시 보직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운영본부(OHQ), 지역개발법인(RDC) 및 국제조달센터(IPC) 그리고 주요 허브(Principal Hub)의 해외 주재원의 승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해외 주재원의 최저 기본급 RM5,000 이상
-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회사가 제안하는 학력/경력 중 높은 자격.

iii. 말레이시아인 소유의 운영본부(OHQ), 지역개발법인(RDC), 국제조달센터(IPC) 회사는 최저 납입자본금 RM500,000의 저축을 받는 주요 보직에 대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 점포(RE)/지역 사무소(RO)

지역 점포(RE)/지역 사무소(RO)의 해외 주재원(한시 보직) 신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운영 지출 최소 RM300,000 이상
- 해외 주재원의 최저 기본급 RM5,000 이상

한시 보직의 수는 각 사안별 타당성에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한시 보직 승인 기간은 지역 점포(RE)/지역 사무소(RO)의 지위 유지 기간과 같습니다. 해외 주재원에 대한 승인은 보직과 개인에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제 인센티브가 없는 기타 서비스 및 규제 비대상 서비스

- 상기 서비스 이외의 기타 서비스 및 규제 비대상 서비스 하위 부문에 대한 신청서는 이민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진흥청(MIDA)은 회사가 해외 주재원 보직을 이민국에 신청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어업, 축산업 및 농업

- 어업, 축산업 및 농업 분야의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신규 회사와 기존 회사를 위한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 주재원 보직에 대한 승인은 제조 부문에 대해 규정된 승인과 비슷한 승인 지침과 조건에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3.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

제조 및 관련 서비스 부문의 신규 및 기존 회사(확장 또는 다변화를 추진하지 않는 회사 포함)의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서는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제조 허가를 취득해야 할 회사는 물론이고 제조 허가 취득을 면제받은 회사도 포함됩니다.

이민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www.imi.gov.my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 건설, 플랜테이션, 농업, 서비스 및 가사 도우미 부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11개의 하위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즉, 음식점, 청소 서비스, 화물 취급업, 셀프 서비스식 세탁소, 골프 클럽의 캐디, 이발업, 도/소매업, 섬유, 금속/고철/재활용 활동, 사회복지시설 및 호텔/리조트 섬 등입니다.

아래의 특정 국가 국민만이 선정된 부문에서 취업이 허가됩니다.

승인된 부문	다음 부문의 외국 국민:
- 제조업 - 플랜테이션 - 농업 - 건설업 - 서비스 부문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네팔 - 미얀마 - 라오스 - 베트남 - 필리핀(남자만) - 파키스탄 - 스리랑카 - 태국 -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서비스(요리사, 도/소매업, 이발업, 금속/고철/재활용, 섬유) - 건설(고전압 케이블의 설치만) - 농업 - 플랜테이션	인도

해외 주재원의 승인은 각 사례별 타당성과 수시로 결정되는 조건을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외국 근로자 채용 신청은 자격을 갖춘 말레이시아 국민과 영주권자를 물색하려는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만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과 같이 연간 세금이 부과됩니다.

승인된 부문	연간 세금 (반도) RM	연간 세금 (사바주/ 사라왁주) RM
제조업	1,850	1,010
건설업	1,850	1,010
플랜테이션	640	590
농업	640	410
서비스	1,850	1,490
서비스(섬 리조트)	1,850	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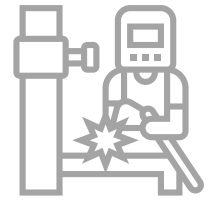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신청을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청서는 모두 내무부, 원스톱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련 추가 정보는 내무부 웹사이트 www.moha.gov.my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5 장

산업 인력





1. 말레이시아의 노동력

2. 인력 개발

- 2.1 산업 기능 훈련 시설물
- 2.2 인적 자원 개발 기금

3. 노동 비용

4. 취업 알선 시설

5. 근로 기준

- 5.1 1955년의 고용법
- 5.2 노동 조례, 사바주(Sabah)와 노동 조례, 사라왁주(Sarawak)
- 5.3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
- 5.4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1969)
- 5.5 1952년의 근로자보상법
- 5.6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

6. 산업 관계

- 6.1 노조
- 6.2 1967년의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 6.3 무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산업 인력

1. 말레이시아의 노동력

말레이시아는 근면하고, 규율을 잘 지키며, 교육받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을 투자자에게 공급합니다. 인력 시장에 진입하는 말레이시아 청년층은 적어도 11년 간의 학교 교육, 즉 중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이수했으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동력의 27%는 제 3차 교육(대학 및 직업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기술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제조 부문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술자, 기능공 및 기타 숙련된 기능 인력의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기술 직업교육훈련(TVET) 제공자와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산업계에 제공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있도록 졸업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이 강조됩니다.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돈독하고 화목한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노동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안정된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 증진 및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된 국가들과 비교하여 말레이시아의 노동 비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노동 생산성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연계된 급료제도, 자동화 및 기술 훈련을 비롯하여 생산성 증대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인력 개발

현재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의 인력국(Manpower Department)은 32 개의 기술 훈련 기관, 즉 23 개의 산업훈련대학(Industrial Training Institute, ITI), 8 개의 첨단기술훈련센터(Advanced Technology and Training Centre, ADTEC) 및 일본말레이시아기술대학(Japan Malaysia Technical Institute, JMTI)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훈련대학(ITI)은 취업 전 또는 신입직원 단계에서 기초, 중급, 고급 과정의 산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산업기술훈련 프로그램에는 기계, 전기 및 전자, 인쇄, 건축 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및 비공식 기술 등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추가로, 인적자원부는 또한 기존 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강사고급기술훈련센터(CIAST) 산하에서 강사들에 대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 산업 기능 훈련 시설물

말레이시아에서는 전문학교, 기술학교, 종합기술전문대학(polytechnics) 및 산업훈련기관에서 다양한 산업 업종에서 근무할 청년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나, 여러 민간 주도 기관들도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근로자를 배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정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자원부 인력국**은 23개의 산업훈련 단과대학(ITI)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훈련대학(ITI)은 취업 전 또는 신입사원 단계에서 기초, 중급, 고급 과정의 산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산업기술훈련 프로그램에는 기계, 전기, 건축 및 인쇄 업종의 산업체 실습훈련(apprenticeship)은 물론이고 기술 향상 및 강사 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부는 또한 강사고급기술 훈련센터(Centre for Instructors and Advanced Skills Training, CIAST), 일본말레이시아기술대학(Japan-Malaysia Technical Institute, JMTI) 그리고 8 곳의 첨단기술훈련센터(Advanced Technology Training Centres, ADTE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기술 직업 과정이 있는 기술학교를 90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 졸업자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취직하거나 또는 종합기술전문대학(Polytechnics)의 준학사 학위(diploma) 과정이나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 또는 정부 부서의 감독을 받는 기타 훈련 기관의 수료 과정으로 중등학교 졸업 후의 교육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 **청년스포츠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는 16 개 국립청소년기술훈련센터 (National Youth Skills Training Centre)와 고등국립청소년기술훈련센터 (Higher National Youth Skills Training Centre)를 통해 초급, 중급, 고급 산업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과정 및 기술 향상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산하의 **Majlis Amanah Rakyat (MARA)**, 즉, 원주민보호위원회(Council of Trust for the Indigenous People) MARA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기술훈련기관을 20여개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중급, 고급 및 전문 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 인적 자원 개발 기금

그 기원이 1993년의 Majlis Pembangunan Sumber Manusia로 거슬러 올라가는 Pembangunan Sumber Manusia Berhad (PSMB)는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Malaysia) 산하 기관으로 인적자원개발 기금(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HRDF))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의 Pembangunan Sumber Manusia Berhad Act 법의 통제를 받는 HRDF(인적자원개발기금)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고소득 경제국가가 되겠다는 말레이시아의 국가 비전에 기여할 유능한 지역 인력의 개발에 촉매 역할을 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은 바 있습니다.

출범 이래 HRDF는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관리하는 일에서 출발하여 결국에는 이 기금에 등록된 고용주에게 신규 인력 자본 개발 해결책과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에 필요한 충분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센터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발 맞추는 한편, 각 회사의 열망에 부합하기 위해 2001년의 PSMB Act 법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용주에게 그들의 지역별 직원, 도제 및 훈련생의 기술을 재훈련 및 증진시키도록 장려하기 위한 자체의 노력을 HRDF는 일관되게 계속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2001년의 PSMB Act 법(인적자원개발기금법)

직원, 도제 및 훈련생의 훈련 및 개발, 기금의 설립과 행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인적 자원 개발(HRD)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규정하는 법

2001년의 PSMB Act에서 다룬 부문

- » 제조업
- » 서비스
- » 광업 및 채석업

• 등록을 위한 자격 기준

2001년의 PSMB Act 법은 63개의 하위 부문 안에 속해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3개 하위 부문의 전체 목록은 HRDF 포털 www.hrdf.com.m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범주	기준
강제적 (1% 부담금)	말레이시아 직원이 10명 이상인 고용주
자발적 (0.5% 부담금)	말레이시아 직원이 5~9명인 고용주

자료 공급원: Pembangunan Sumber Manusia Berhad (PSMB) - www.hrdf.com.my

3. 노동 비용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부가 급부는 업종, 지역과 고용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공통적인 휴가 종류로는 연차 휴가, 공휴일, 병가, 입원 휴가, 출산휴가, 특별 휴가가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근무복 무상 지급, 교통비, 인센티브, 교대수당, 보험료와 같은 추가적인 부가 급부를 제공합니다. 일부 회사는 회사 실적과 개인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2018년의 최저임금령(개정) (Minimum Wages Order (Amendment) 2018)[P.U. (A) 305/2018]이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민간 부문의 모든 근로자는 직원 수에 상관없이 새로운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일급	
	근무일자 수	시급
RM1,100	6	RM42.31
	5	RM50.77
	4	RM63.46
		RM5.29

제조 부문의 급여와 부가 급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말레이시아고용주연맹 (Malaysia Employers Federation, MEF) www.mef.org.my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취업 알선 시설

등록된 민간 취업 알선 기관 이외에도, 고용주와 구직자는 전국에 걸쳐 적합한 취업 후보자와 빈 일자리를 물색하기 위해 JobsMalaysia 포털을 통해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도시탈바꿈센터(Urban Transformation Center, UTC), 농촌탈바꿈센터(Rural Transformation Center, RTC) 및 노동사무소를 운영했던 약 90개의 JobsMalaysia 센터가 있습니다. 고용주와 구직자는 또한 JobsMalaysia가 조직하는 Jobs Carnival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을 받기도 합니다.

5. 근로 기준

노동국(Department of Labour)은 노사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법의 시행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가 반드시 따라야 할 최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상 다소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국(Department of Labour)의 노동국장(Director of Labour)에게 이 규정의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1 1955년의 고용법

주요 법 중의 하나인 1955년의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은 말레이시아 반도 (Peninsular Malaysia)와 라부안 연방령(Federal Territory of Labuan)의 월 급여 RM2,000 이하인 모든 근로자와 그리고 모든 육체 노동자에게는 급료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당해 고용 계약이 이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급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료, 근무의 시간 근로에 대한 급료 청구, 퇴사 시 혜택, 출산 혜택 등과 같은 근로자에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법원(Labour Court)을 통해 금전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외에도, 월 급여가 RM2,001-RM5,000 사이인 근로자는 고용 계약의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법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955년의 고용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모든 근로자에게는 고용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을 비롯, 고용 조건을 담고 있는 서면 고용 계약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ii. 근로자의 신상 명세, 급여 지급 및 급여 공제에 관한 근로자 명부의 보관.
- iii. 야간 근무 및 여성 근로자에 대한 혜택(maternity benefit)과 관련하여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항.
- iv. 정상 근무 시간과 작업 시간 수와 관련한 기타 조항.
- v. 유급 연차 휴가, 병가, 입원 휴가 및 공휴일을 사용할 권리. 근무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
- vi.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고용주의 책임
- vii. 근무 장소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특별 조항

5.2 사바주(Sabah)의 노동 조례와 사라왁주(Sarawak)의 노동 조례

사바주 노동 조례(Sabah Cap. 67)와 사라왁주 노동 조례(Sarawak Cap. 76)는 그들 주에서 노동법(Labour Laws)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바주 노동 조례와 사라왁주 노동 조례의 조항들은 1955년의 고용법(Employment Act) 조항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서로 다르고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1955년의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에서는 월급이 RM2,000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를 다루고 있는 반면, 사라왁주(Sarawak) 노동 조례의 경우 월급이 RM2,500까지로 확대됩니다. 사바주(Sabah) 노동 조례에 관한 한, 일부 가사 도우미를 제외하고는,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주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RM2,500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 그리고 월급은 불문하고 육체 노동이나 또는 운송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기계로 추진되는 차량의 운전과 보수에 종사하거나, 또는 육체 노동 근로자의 감독으로 종사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선박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고용 관련 특별 조항

조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란 1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이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반도에 적용되는 1966년의 아동 및 청소년(고용)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적용 대상입니다.

비거주자 근로자의 고용

'비거주자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먼저 사바주/사라왁주 노동국장으로부터 '비거주자 근로자' 고용 허가를 득하여 합니다. '비거주자 근로자'란 1959/1963년의 이민법(Immigration Act) 제 71절(Section 71)에 규정된 대로 사바주/사라왁주에 주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근로자 공급 관련 정보

1955년의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고용한지 14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노동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3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

2019년 1월 1일부터는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Employee Provident Fund (EPF) Act 1991)에 따라 근로자공제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0세 이하

i. 고용주 부담

a) 월 임금 RM5,000 (US\$1,171) 이하의 경우

근로자 월 임금의 13% 이상

b) 월 임금 RM5,000 (US\$1,171) 초과인 경우

근로자 월 임금의 12% 이상

ii. 근로자 부담 -

근로자 월 임금의 11% 이상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EPF) 세 번째 별표(Part A) 참조]

60-75세

i. 말레이시아 국민

a) 고용주 부담

근로자 월 임금의 4% 이상

b) 근로자 부담 -

근로자 월 임금의 0%

ii. 영주권자

a) 고용주 부담

(i) 월 임금 RM5,000 (US\$1,171) 이하의 경우

근로자 월 임금의 6.5% 이상

(ii) 월 임금 RM5,000 (US\$1,171) 초과인 경우

근로자 월 임금의 6% 이상

b) 근로자 부담 -

근로자 월 임금의 5.5% 이상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EPF) 세 번째 별표(Part A) 참조]

모든 외국인 근로자와 파견직 외국인 및 그들의 고용주는 의무 가입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들도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용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하

i. 고용주 부담

근로자별 월 RM5.00 (US\$1.17)

ii. 근로자 부담 -

근로자 월 임금의 11%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EPF)법 세 번째 별표(Part A) 참조]

60-75세

i. 고용주 부담

근로자별 월 RM5.00 (US\$1.17)

ii. 근로자 부담 -

근로자 월 임금의 5.5%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EPF)법 세 번째 별표(Part A) 참조]

5.4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1969)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SOCSO)는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 (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1969)에 따라 근로자 본인과 그 부양 가족의 복지 보호를 위해 두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고용상해보험제도(Employment Injury Insurance Scheme)

ii. 상병제도(Invalidity Scheme)

고용상해보험제도(Employment Injury Insurance Scheme)

고용상해보험제도는 업무상 사고 또는 관련 산업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혜택을 보장해 줍니다. 고용상해보험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요양혜택, 단기장해혜택, 영구장해혜택, 상시간병수당, 부양가족혜택, 장례혜택, 재활혜택 및 교육혜택 등입니다.

상병제도(Invalidity Scheme)

상병제도는 고용과 관련 없는 원인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시의 근로자에 대해 24시간 적용됩니다. 단, 근로자는 반드시 상병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병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상병 연금, 상병 보조금, 상시 간병수당, 유족 연금, 장례 혜택, 재활 혜택 및 교육 혜택 등이 있습니다.

부담금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SOCSO)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자격을 갖춘 고용주 및 근로자의 경우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1969)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범주의 기여로 분류됩니다.

i. 첫 번째 범주

고용상해보험제도(Employment Injury Insurance Scheme)와 상병연금제도(Invalidity Pension Scheme)에 따른 부담금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납부합니다. 본 범주에 따른 부담금은 근로자 급여의 1.75%이고, 부담금 납부 당시 근로자 월임금의 0.5%입니다.

ii. 두 번째 범주

본 범주에 따른 부담금은 부담금 납부 당시 근로자 월임금의 1.25%로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60세에 이른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상해보험제도의 경우에만 본 범주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자격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한 대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SOCSO(사회보장기구)에 등록하고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격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 또는 훈련생 계약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연방/주 정부는 물론 연방/주 법정 단체의 계약직/임시직 직원은 SOCSO에 등록하고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금은 월임금이 최고 RM4,000 이하에서만 적용됩니다.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된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 및 주 정부 영주권 소지 근로자
- 가사 도우미
- 자영업자
- 단독소유기업 또는 파트너회사 소유자의 배우자

2017년의 자영업사회보장법(Act 789)

2017년의 자영업사회보장법(Act 789)은 2017년 6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자영업사회보장법은 자영업 택시 운전기사 그리고 GrabCar와 같은 차량 공유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물론이고, 무대 버스, 전세 버스, 급행 버스, 미니 버스, 회사 버스, 지선 버스, 스쿨 버스 및 공항 버스 등과 같은 자영업 버스 운전기사를 자영업고용상해제도에 따라 보호합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 피보험자 및 그 부양가족을 근로 관련 활동 중 직업병 및 사고를 포함한 고용 상해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제도는 택시 운전기사 및 그 부양가족에게 의료 서비스, 신체 재활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현금 혜택도 제공합니다. 보호 기간은 부담금을 납부한 일자 및 시간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규정된 부담금은 보험 급여 옵션에서 정한 급여의 월 1.25%입니다.

2017년의 고용보험제도법(Act 800)

이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는 피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즉시 금융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8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새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을 받고 또한, 필요할 경우, 고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훈련도 제공받습니다.

고용보험제도(EIS)의 목적

- 부담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즉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 실직 중인 근로자가 재취업프로그램(Re-Employment Placement Program)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하며
- 직업 훈련을 통해 실직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고용보험제도(EIS)의 적용 범위

- 민간 부문의 모든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 공무원, 국내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면제).
- 직원은 고용주와 서비스 또는 훈련 계약을 맺어 급료를 받도록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 또는 훈련 계약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으며, 구두 또는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iii. 18세에서 60세까지 모든 근로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7세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57세 이상의 근로자는 면제됩니다.
- iv. 부담율은 보장된 급여 RM4,000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EIS 부담율

고용주: 0.2%

직원: 0.2%

EIS 혜택

- 일자리 찾기 수당(Job Search Allowance, JSA)
- 줄어든 소득 수당(Reduced Income Allowance, RIA)
- 훈련비(Training Fee, TF)
- 훈련 수당(Training Allowance, TA)
- 조기재취업수당(Early Re-Employment Allowance, ERA)
- 재취업 프로그램
- 경력 카운슬링

사회보장혜택의 연장

i. 배우자

2018년 7월 1일자로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SOCSO)는 근로자사회보장법(Act 4)과 고용보험제도법(Act 8)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일할 때 사회보장보호 혜택을 배우자에게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보호 혜택의 확대로, 근로자사회보장법(Act 4)과 고용보험제도법(Act 8)에 따라 배우자를 위해 일하는 자격을 가진 부인이나 남편은 이들 두 개 법에 따라 사회보장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ii.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장기구(SOCSO)는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사 도우미 제외)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사회보장법(Act 4)에 따라 고용상해보험제도(EI)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담율은 보장된 월 급여의 1.25%로, 부담금은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고용상해보험제도(EI)는 사고나 근로 중 발생한 직업병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까지도 보장합니다.

직장복귀프로그램(Return to Work, RTW)

직장복귀프로그램(RTW)은 고용 상해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보장기구(SOCSO)의 피보험자를 도와 주는 선제적 접근책으로 2007년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구(SOCSO)의 직장복귀프로그램(RTW)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부상당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는 이제 재정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국가의 생산 인력의 일부가 되어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구툰라작재활센터(SOCSO Tun Razak Rehabilitation Centre, TRRC)

말레이시아 멜라카주 반다 히자우(Banda Hijau)의 항 투아자야(Hang Tuah Jaya)에 소재한 SOCSO TRRC는 2014년 10월 1일 출범했습니다. 이 센터는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근로 세계로 되돌아와서 가족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피보험 참여자에게 종합 시설물을 제공함으로써 직장복귀프로그램(RTW)을 지원합니다.

건강심사프로그램(Health Screening Programme, HSP)

사회보장기구(SOCSO)는 40세가 되는 피보험자에게 건강 심사 바우처를 배포하는 건강심사프로그램(HSP)을 2013년 도입하였습니다. HSP 프로그램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운동을 촉진하는 한편 더 나아가 근로자 사이에서 비전염성 질병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5.5 1952년의 근로자보상법 (Workmen's Compensation Act 1952, Act 273)

이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고용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겪고 있는 상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평생 완전 불구, 영구 부분 불구 및 사망의 경우 등 세 가지 보호 유형이 있습니다.

5.6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

인적자원부 산하 직업안전보건국(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OSH)은 직업 안전과 보건 관련 규정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DOSH는 근로자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는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근로 부문의 근로 활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제조업
- 광업 및 채석업
- 건설업
- 농업, 임업과 어업
- 공익사업(가스, 전기, 수도 및 위생 서비스업)
- 운수업, 저장업 및 통신업
- 도소매업
- 호텔업과 요식업
- 금융, 보험,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그리고
- 공공 서비스 기관 및 법정 기관

이러한 집행 활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정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
- 1967년의 공장기계법(Factories and Machinery Act), 그리고
- 1984년의 석유법(안전조치)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은 특정 산업 또는 조직에 적합하게 설계된 자율 규제 제도를 통해 모든 말레이시아 고용주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보건과 안전한 근로 문화를 촉진하고 장려하며 권장하기 위한 입법의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 1994)은 고용주, 근로자, 자영업자, 설비 또는 물질의 설계자, 제조자, 수입자 및 공급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고용주는 반드시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히 안전한 설비와 근로시스템의 제공과 유지에 적용됩니다.

설비와 물질의 사용, 취급, 보관과 수송 시에는 반드시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설비'에는 모든 기계류, 장비, 기구, 도구와 구성품이 포함되는 반면, '물질'이라 함은 고체, 액체, 가스, 증기 또는 이의 혼합물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자연적 또는 인위적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의 사용, 취급, 보관과 수송 시에는 반드시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특별한 위험이 있는 공정에 대해 언급하고 법적 요건에 관한 정보를 비롯, 안전한 실행에 필요한 정보, 지시, 훈련과 감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사업장에 안전 보건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이 위원회의 주 기능은 반드시 안전 및 보건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한 사태, 직업성 중독 또는 질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직업안전보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에는 유자격자가 화학적 건강 위험 평가, 개인별 모니터링 및 안전을 실시하는 한편, 직업 보건 전문의가 작업장의 적절한 의료 감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에 따라 직업안전보건국(DOSH)은 다음과 같은 8 가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1995년의 고용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정책성명서(특례) 규정
2. 1996년의 산업주요사고위험관리규정
3. 1996년의 안전보건위원회규정
4. 1997년의 안전보건책임자규정
5. 2000년의 건강에 위험한 화학물질의 사용 및 노출 기준에 관한 규정
6. 2004년의 사고, 위험사태 발생, 직업상 중독 및 직업병의 통지에 관한 규정
7. 2013년의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안전 데이터시트에 관한 규정
8. 2019년의 소음 노출 규정

이 법의 요건을 위반할 경우 형사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1967년의 공장기계법(FMA)은 사람의 안전, 건강 및 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공장의 관리는 물론, 기계류의 등록과 검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일러, 비폭발 압력용기, 승객용 승강기, 천정형 이동 크레인 및 곤돌라와 같은 인증 받은 기계류는 반드시 설계 요건, 기술 규격, 시험 및 검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회사는 직업안전보건국(DOSH)의 설계 승인을 받기 위해 SKUD 시스템 (www.dosh.gov.my)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면, 기술계산서, 제조업체 인증서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내의 모든 공장과 일반 기계류는 반드시 설치가 동 전에 직업안전보건국(DOSH)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수 장비와 공정의 작동, 설치, 유지관리 및 해체는 유자격자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크레인, 리프트 및 사다리과 같은 기계류와 장비의 설치 도중에는 안전한 설치를 보장하기 위해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증기 보일러와 같은 고위험 장비는 보일러 기사와 증기 기사와 같은 관련 유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전보건국(DOSH)은 1967년의 공장기계법(FMA)에 의거하여 15 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70년의 승객용 및 화물용 전기승강기 규정
2. 1970년의 기계류의 방호책 설치 및 안전 규정
3. 1970년의 통지, 적합성 증명서 및 검사 규정
4. 1970년의 담당자 규정
5. 1970년의 안전, 건강 및 복지 규정
6. 1970년의 증기 보일러 및 비폭발 압력용기 규정
7. 1970년의 자격 증명서-시험 규정
8. 1970년의 관리 규정
9. 1978년의 화해가능범죄(Compoundable Offenses) 규정
10. 1978년의 범죄의 화해 규칙
11. 1984년의 납 규정
12. 1986년의 석면 공정 규정
13. 1986년의 건물 관리 및 토목 건설 공사(안전) 규정
14. 1989년의 광물 분진 규정
15. 2014년의 특수검사제도(위험 기반 검사) 규정

1984년에는 석유(안전조치)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석유(안전조치)법은 석유의 수송, 보관과 이용상의 안전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석유(안전조치)법의 적용 범위는 도로와 철도, 선박, 파이프라인에 의한 석유의 수송 그리고 석유의 보관과 취급 등입니다.

석유 취급상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일 목적으로, 1984년의 석유(안전조치)법은 2개의 하부 규정으로 관보에 공지되었습니다. 이 법의 하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85년의 석유 파이프라인 수송 규정
2. 1985년의 석유 선박 수송 규정

6. 산업 관계

6.1 노조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는 양쪽 모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어떤 특수 조직, 업종, 직업 또는 산업 내에서도 그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조원 자격은 지리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반도의 근로자나 고용주는 이 반도 내에 근거지를 둔 노조에만 가입하여야 하는 한편, 사바주(Sabah) 또는 사라왁주(Sarawak)의 근로자나 고용주는 사바주나 사라왁주에 설립된 노조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노조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좋은 노사 관계를 촉진하거나,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또는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를 규정함.
- ii. 근로자와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를 규정함.
- iii. 노사 분쟁에서 근로자나 고용주를 대리함.
- iv. 노사 분쟁 및 그와 관련된 문제의 실행 또는 처리. 또는
- v. 어떤 업종이나 산업에서든 파업이나 직장폐쇄의 추진, 조직화 또는 금융 지원 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 도중인 회원에 대한 급료 제공 또는 기타 혜택 제공

노조의 결성, 기능, 의무 및 활동에 대한 방침과 지침은 일반적으로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노동조합문제국(Trade Unions Affairs Department)의 관할 하에 1959년의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과 1959년의 노동조합규정(Trade Union Regulations)에 그 특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6.2 1967년의 노사관계법 (Industrial Relations Act)

말레이시아의 노사관계제도는 1967년의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67)의 법적 틀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법은 말레이시아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Malaysia, DIRM)에 의해 시행되고 국내의 고용주, 근로자 및 노조 간의 관계를 규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개략적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노동조합의 대표권 인정 청구 절차와 대표권 범위에 관한 개략적인 조항
- ii.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의 효과적인 단체교섭과 후속 단체협약 체결의 원활한 진행에 관한 조항
- iii. 판결을 위한 인적자원부 및 노사관계법원(Industrial Court)에의 회부를 포함한 노사 간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항
- iv. 피켓 시위, 파업 및 직장폐쇄 등과 같은 쟁의 행위에 관한 조항
- v. 노동자의 복직 청구 대리인 관련 조항
- vi. 노사관계법원의 운영에 관한 조항. 그리고
- vii. 말레이시아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소속 공무원의 조사권에 관한 조항

추가로, 노사관계국(DIRM)은 전국에 소재하는 지국을 통해 노사관계 관련 제반 사항과 문의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3 무 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인 분규 해결 절차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사, 현장 십장 또는 고용주로부터 시정을 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인적자원부에 고충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충을 접수한 인적자원부는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1. 말레이시아의 금융 시스템

- 1.1 중앙은행
- 1.2 금융 기관
 - 1.2.1 이슬람 금융 산업
 - 1.2.2 개발 금융 기관

2. 수출 신용장 리파이낸싱

- 2.1 금융 지원 방법
- 2.2 금융 지원 기간과 마진
- 2.3 대출 상환

3. 말레이시아의 자본시장

- 3.1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 3.2 부르사(Bursa) 말레이시아

4. 라부안 금융 서비스(Labuan Financial Services)

- 4.1 라부안 금융감독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abuan FSA)
- 4.2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 내 기업 활동
- 4.3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의 기업 활동

5. 외환 관리 규정

- 5.1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 5.1.1 말레이시아 국내 투자
 - 5.1.2 국내 금융에의 접근성
 - 5.1.3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정산
 - 5.1.4 헤지
 - 5.1.5 링깃화(RM) 계정 및 외화 계정
- 5.2 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 5.2.1 외화 자산의 투자
 - 5.2.2 역내 및 역외 차입
 - 5.2.3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 5.2.4 헤지
 - 5.2.5 외화 계정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1. 말레이시아의 금융 시스템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스템은 더욱 더 다양하고 복잡해진 국내 경제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스템은 재래식 금융시스템과 이슬람 금융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공존하며 평행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 중앙은행

말레이시아 네가라은행(Bank Negara Malaysia), 즉, 중앙은행의 주된 목적은 말레이시아 경제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화폐와 금융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009년 말레이시아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Malaysia)에서 규정한 중앙은행의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레이시아의 화폐 정책의 수립과 수행
- 말레이시아 통화의 발행
-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관련 법들의 저촉을 받는 금융 기관의
- 규제 및 감독
- 화폐 및 외환 시장의 관리 및 감독
-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 및 감독
-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의 추진
- 말레이시아의 외환 보유고의 유지 및 관리
- 말레이시아의 외환 관리 체계의 관리, 그리고
- 정부, 특히 거시경제 정책에 관한 조언자

1.2 금융 기관

다음의 도표는 2018년 12월말 현재 말레이시아 네가라은행(Bank Negara Malaysia), 즉, 중앙은행의 관할 하에 있는 금융 기관의 개략적인 수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계	말레이시아 의 통제를 받는 금융 기관	외국의 통 제를 받는 금융기관
상업은행	26	8	8
이슬람 은행	16	10	6
국제 이슬람 은행	2	0	2
투자 은행	11	11	0
보험회사	33	13	20
타카풀 사업자 (이슬람 보험회사)	15	8	3
재보험회사	7	2	5
리타카풀 사업자(이슬람 재보험회사)	4	1	3
개발 금융 기관	6	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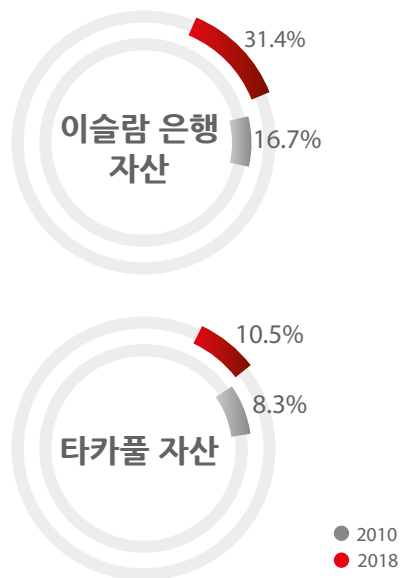
상업은행, 투자은행 및 이슬람 은행으로 구성되는 은행 시스템은 말레이시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 주는 1차 자금 조성 수단이자 주된 자금 조달원입니다. 은행 기관들은 전국에 걸쳐 2,400여 개 지점 및 7,190여 개 대리점 은행망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17 개 외국 은행 대표 사무소가 있으며, 이들 사무소는 은행 업무는 하지 않고 단지 연구 활동, 업무 연락 서비스 및 정보 교환 기능만 수행합니다. 6 개 말레이시아 은행 그룹은 모든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23 개 국가에 지점, 대표사무소, 자회사, 지분 참여 및 합작회사를 통해 진출해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 기관, 즉, 개발금융기관과 보험회사 및 타카풀 운영회사 등은 저금을 모집하고 국가 경제의 금융 필요에 부응함에 있어 은행 기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험회사와 타카풀 운영회사는 전국적으로 690여 개 사무소와 170,000여 명의 등록된 대리인들을 통해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들에게 위험 관리와 재무 설계를 제공합니다.

1.2.1 이슬람 금융 산업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은 포괄적인 규제, 법 및 샤리아 (Shariah) 율법 체계, 다양한 산업계 회사 및 전문적인 보조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고급 능력자들의 지원을 받아 계속 견고한 성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 산업 시장 점유율 :
이슬람 은행 자산과 타카풀 자산



자료 제공: 말레이시아 네가라은행(Bank Negara Malay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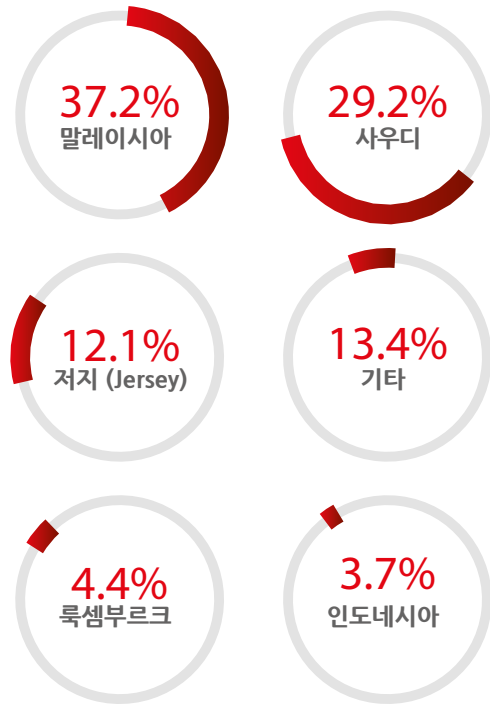
2018년 말 기준 이슬람 은행업은 그 자산이 총 은행 자산의 31.4%(RM9167억)에 이르고 있으며, 2011~2020년의 금융부문청사진(Financial Sector Blueprint 2011-2020)이 시행된 이래 말레이시아 전체 금융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제 및 환경에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데 목적을 두고서 40여 개 금융기관(이에는 이슬람 은행, 이슬람 전통 은행 및 투자 은행, 국제 이슬람 은행 및 개발 금융 기관 포함)이 광범위하게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카풀 부문의 경우 2018년 말 기준 총 타카풀 자산은 총 보험 및 타카풀 부문 시장 점유율의 10.5%(RM314억)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 타카풀 시장 침투율이 15.2%를 기록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타카풀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금융의 추가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를 준수하는 투자 활동으로 생기는 이윤을 투자하고 공유할 기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2013년의 이슬람금융서비스법(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에 따라 투자계좌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투자계좌는 또한 사업체들이 금융에 접근하는 추가적인 길을 제공합니다. 현재 9 개 이슬람 은행이 투자계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선에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시장의 선도적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수쿠크(이슬람 채권) 시장의 본고장으로 2018년 말 기준 전세계 수쿠크의 50.4%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USD2,152억에 이릅니다.

이슬람 기금 관리 자산 (2018 기준)



자료 출처: MIFC 예상,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이슬람의 부의 관리 관점에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기금이 가장 많은 장소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37.2%에 이르며, 관리자산이 2018년 말 기준 USD273억에 이르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등록된 기금의 수가 총 409 개로 전 세계 점유율이 28.2%이며, 기금 수의 측면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이슬람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 관리 회사가 53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1.2.2 개발 금융 기관

말레이시아의 개발금융기관(DFI)은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 발전 목표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주요 부분들의 발전과 육성이라는 특정 임무를 띠고 정부에 의해 설립된 특수 금융기관들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는 농업, 중소기업(SME), 인프라, 해양 및 수출 지향 부문들은 물론, 자본집약적 산업과 하이테크 산업들이 포함됩니다.

특수기관으로서 개발금융기관(DFI)은 대상 전략적 부문의 특정한 필요에 부응하는 광범위하게 특화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발금융기관(DFI)은 대상 부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상담 및 자문과 같은 부수적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개발금융기관(DFI)은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은행을 보완하고 또한 대상 전략적 부문에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생기는 갭을 서로 연결하는 전략적 동료 역할을 수행합니다.

2002년에는 지속가능한 기준과 필요한 규제 및 감독의 틀을 통해 개발금융기관(DFI)의 재정과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개발금융기관(DFI)이 위임 받은 역할을 신중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2002년 개발금융기관법(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Act 2002, DFIA)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개발금융기관법(DFIA) 제정으로 중앙은행은

개발금융기관(DFI)들의 중앙 규제 및 감독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발금융기관법(DFIA)에 따라 6 개 개발금융기관(DFI)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개발은행(Small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Bank Malaysia Berhad 또는 SME Bank)은 제조, 서비스 및 건설 부문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금융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Bank Pembangunan Malaysia Berhad는 국가 발전 정책과 발맞추어 인프라 프로젝트, 해양 산업, 자본집약적 산업 및 하이테크산업과 기타 부문에 대해 중장기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 협동조합 은행인 Bank Kerjasama Rakyat Malaysia Berhad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Malaysia Berhad 또는 EXIM Bank)은 상품의 수출입과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을 공여하는 것은 물론, 수출신용보험 서비스와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Bank Simpanan Nasional은 특히 소액 예금자 대상 소매금융과 개인대출에 주력하며 소액 서민금융 및 대출 주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정적으로 소외된 계층 사람들(금융 포용)을 원합니다.
- 농업은행(Bank Pertanian Malaysia Berhad 또는 Argobank)은 농업 부문과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예금을 수취하고 대출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발금융기관(DFI)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까다로운 운영 환경에서 전략적 경제 부문을 지원하는 이들 기관의 중개 역할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개발금융기관법 (DFIA)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거버넌스 관례를 더욱 강화시키고 또한 위임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발금융기관(DFI)의 운영상의 효율은 물론, 역량과 능력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개발금융기관법(DFIA)은 2015년 7월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 1월 3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2. 수출 신용 재금융-i(Export Credit Refinancing-i)

수출 신용 재금융-i(ECR-i)은 직접 또는 간접 수출자에게 선적 전과 후 수출 금융을 단기로 제공합니다. 수출 신용 재금융-i(ECR-i)은 수출 활동과 국제 교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고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제조업체 또는 무역회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 금융 기관(ECR-i Bank)과 함께 수출 신용 재금융-i(ECR-i) 신용 한도가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금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 선적 전 ECR-i

(ii) 선적 후 ECR-i

선적 전 ECR-i 금융 지원은 선적 전에 말레이시아 제품의 수출과 교역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수출 지향 산업에서 수출업체와 현지 공급업체 간의 후방 연계(backwards linkage)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수출입은행(EXIM Bank) 금융 촉진책입니다.

선적 후 ECR-i 금융 지원은 수출업체의 수출 또는 교역에 선적 후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 촉진책입니다.

2.1 금융 지원 방법

선적 전 ECR-i 금융 지원 제도에 따르면, 직접/간접 수출업체에 제공되는 금융 지원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i. 주문서 기준 방법

직접 수출업체의 경우 선적 전 ECR-i 금융 지원은 수출 구매 주문서 그리고 간접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업체 앞으로 발행된 ECR-i 내국신용장(Domestic Letter of Credit, DLC), ECR-i 내국 구매주문서(Domestic Purchase Order, DPO) 또는 현지 구매주문서(Local Purchase Order, LPO)를 증빙으로 제출할 경우 지원되는 금융 촉진책입니다.

ii. 수출실적증명서(Certificate of Performance, CP)에 근거한 금융 지원 방법

직접/간접 수출업체의 경우 선적 전 금융 지원은 수출입 은행(EXIM Bank)가 발행한 CP를 근거로 제공됩니다. 금융 지원의 한도는 유효 기간 1년의 CP의 한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선적 후 ECR-i 금융 지원 제도에 따라, 이용되는 금융 지원 방법은 수출 어음 할인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편 금융 지원은 수출 서류를 ECR-i 은행에 제출할 때 제공됩니다.

2.2 금융 지원 기간과 마진

선적 전과 선적 후 금융 지원의 최장 기간은 각각 4개월과 6개월입니다.

선적 전 구매주문서에 근거한 금융 지원 방법의 경우, 유자격 최대 금융 지원 금액은 직접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 구매주문서의 95% 또는 간접 수출업체의 경우 ECR-i DLC, ECR-i DPO 또는 LPO의 95%입니다.

선적 전 수출실적증명서(CP)에 근거한 금융 지원 방법의 경우, CP 한도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자격 금액이 될 것입니다. 수출실적증명서(CP)에 근거한 금융 지원 한도는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누어지며, 각 기간은 4개월입니다. 제조와 무역에 관여하는 직접 수출업체에 대한 유자격 금융 지원 금액은 직전 12개월 동안의 수출 금액의 100%입니다. 한편, 제조 및 무역에 관여하는 간접 수출업체에 대한 유자격 금융 지원 금액은 직전 12개월의 수출 금액의 80%입니다.

선적 후 금융 지원의 경우, 금융 지원 금액은 수출송장 금액의 100%입니다.

2.3 상환

직접 수출업체의 경우, 선적 전 금융 지원에 대한 상환은 해외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수출 수익금/ECR-i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선적 후 수익금에서 이루어집니다. 간접 수출업체의 경우, 선적 전 금융 지원 금액의 상환은 ECR-i 이용자, 자유무역지역(FTZ)/허가된 제조업체 보세창고(LMW) 회사로부터 수령한 국내 판매 수익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적 후 금융 지원의 경우, 금융 지원 금액은 수출 수익금 수령 시 또는 선적 후 어음의 만기일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 금융 지원은 말레이시아 링깃화(Malaysia Ringgit, MYR) 또는 미국 달러화(USD) 중 한 가지로 샤리아(Shariah) 계약/무라바하(Murabah) 또는 (선적 전) 타와루크(Tawarruq)와 (선적

후) 타와루크의 개념에 기반을 둔 이슬람 금융 자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신용 재금융-i(ECR-i)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exim.com.my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말레이시아의 자본시장

3.1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의 규정과 발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규제 기관으로서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조사 및 집행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활기찬 자본시장을 육성할 책무를 지고 있는 증권위원회(SC)는 계속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증권위원회(SC)는 또한 자본시장과 접근 가능하고, 활기차며, 책임을 지는 규제 기관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의 발전

2018년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은 국내 경제 규모의 2.2 배에 상당하는 RM31조에 달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샤리아(Shariah)를 준수하는 주식과 미결 수쿠크(sukuk) 채권을 가진 이슬람 자본시장의 글로벌 선두 국가이며 세계의 최대 수쿠크 채권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의 힘을 바탕으로 증권위원회(SC)는 말레이시아를 지속가능한 금융 지역 센터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선도해 왔습니다. 2017년 세계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린 수쿠크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증권위원회(SC)는 그린(green)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투자(SRI) 수쿠크의 발행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2018년 RM6 백만 상당의 그린 SRI 수쿠크 허가제도(Green SRI Sukuk Grant Scheme)를 확립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총 5 가지 종류의 그린 SRI 수쿠크 채권이 발행되어 RM24억의 기금을 모으는 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실질 경제의 지원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은 실질 경제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2018년에 채권, 수쿠크 채권 및 주식 발행으로 모은 총 기금이 RM1,146억에 이르렀습니다. 주식 클라우드 펀딩과 금융기관 간 자금 지원과 같은 소액의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모금 채널이 693 개 발행업체를 통해 RM2.615억을 모금했습니다.

증권위원회(SC)는 접근성을 제공하는 실행력 있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중개 효율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 및 투자 문맹 퇴치를 증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비롯, 투자자 보호 목적을 갖고서 시장 성장을 규제하고 보장하려는 증권위원회(SC)의 핵심 위임사항들이 수행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sc.com.my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부르사(Bursa) 말레이시아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1973년 설립되고 2005년 상장된 거래소 지주 회사입니다. 오늘날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로 60 개 종목에 걸쳐 900 여 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회사들은 대기업을 위한 주거래소(Main Market) 또는 다양한 규모의 신흥 회사들을 위한 ACE 시장 중 하나에 상장됩니다. 2017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LEAP라 불리는 새로운 시장이 도입되었습니다. LEAP는 아세안에서는 동종 최초로 말레이시아를 자본시장의 혁신 측면에서 이 지역의 선두주자로 올려놓았습니다.

완전 통합된 거래소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주식, 파생상품, 선물과 옵션, 역외 및 이슬람 자산은 물론 상장, 거래, 정산, 결제 및 주식 금고와 같은 거래소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제품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 거래소 거래 채권 및 수쿠크(ETBS) 채권 및 사업신탁 등과 같은 집합 증권투자를 비롯한 기타 투자 선택안도 제공합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대표지수로 FTSE 부르사 말레이시아 KLCI 주가지수를 채택합니다. 지난 10년(2009-2018) 간 벤치마크 지수 FBMKLCI는 93%나 올랐으며, 한편 부르사 말레이시아에 상장된 모든 회사의 전체 시장 자본화는 156%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휘발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을 기록해 왔습니다. 거래되는 주식의 평균 일일 거래 금액 또한 동일한 기간에 걸쳐 112%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소유 비율이 22% 초과를 기록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외국 투자자의 이권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에 상장된 수쿠크 채권의 가액이 2009년 이래 204%의 성장세를 기록해 온 가운데 이슬람 자산은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또한 세계 최대의 팜오일 선물 거래 허브로, 35년 전 출범한 원산 팜오일 선물(Crude Palm Oil Futures, FCPO)은 팜오일 산업의 글로벌 가격 벤치마크로 인정받고 지칭되어 왔습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자본시장에 주안점을 둠에 따라 이 거래소는 타 제품보다 두드러진 제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요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자본시장 공간에서 선도적 거래소로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Bursa Malaysia-i - 세계 최초의 투자자와 투자자 간의 샤리아 투자 플랫폼과 그리고 Bursa Suq-Al-Sila'- 세계 최초의 투자자와 투자자 간의 샤리아 준수 상품 거래 플랫폼을 비롯, 여러 가지 혁신적 방안을 개척해 왔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의 공간에서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책임 있는 거래소, 기업지배구조의 강력한 주창자 및 지속가능성 어젠다의 챔피언으로서 이 지역의 최선봉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2014년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좋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관련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할 목적으로 FTSE4Good Bursa Malaysia를 도입하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UN 지속가능증권거래소(UN Sustainable Stock Exchange, SSE)에 가입한 2015년 5월 발행자와 시장 가운데 지속가능한 전략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선도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세계로 연결된 시장이 되겠다는 아세안(ASEAN)의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적용 지역과 제품 제품을 확대하려는 이니셔티브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또한 시장 참여업체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높이고 달성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창출하는 자본시장 에코시스템을 계속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bursamalaysi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i. 시장 참여자

a) 증권 중개회사

2018년 12월 31일자로 주식 중개회사는 30개였으며, 그 가운데 투자은행으로 분류된 중개회사는 10 개였습니다. 이들 은행은 부르사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자 은행은 1989년 은행금융기관법(BAFIA)에 따라 Bank Negara Malaysia, 즉 중앙은행이 발행한 종합금융회사 면허는 물론 2007년 자본시장서비스법(Capital Markets & Services Act)에 따라 증권위원회(SC)가 발행한 자본시장 서비스 면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은행은 기업 금융, 채무증권 거래 및 유가증권 거래를 포함한 전 범위의 통합된 자본시장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의 주식 중개회사는 아직도 종합 증권 중개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 중개업체는 통합된 자본시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거래 참가자

거래 참가자는 부르사 말레이시아 파생상품의 우선주를 1주 이상 소유한 회사입니다. 거래 참가자는 2007년 자본시장서비스법(CMSA)에 따라 증권위원회(SC)가 허가한 선물 중개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거래 참가자는 18개입니다.

ii. 투자자 보호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기능을 잘 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에 최고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시장과 시장 참가자들을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튼튼한 규제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무결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가끔 검토하는 명확하고, 종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규칙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국제 시장 규제 기준과 대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벤치마크 대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규칙이 적절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기준 준수에 드는 비용을 초래하지 않고 사업 영위의 용이성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기능을 시행함에 있어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또한 시장에서 적절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상장 회사와 중개회사들의 거버넌스와 행위를 개선하는 데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공개 기준은 물론 무엇보다도 감독 접근책과 기업 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 관례를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샐틈없는 감시와 선제적인 대책을 통해 불법 또는 비보장성 기업 및 거래 활동에 대한 시의적절한 탐지와 관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에 의해 뒷받침되는 잘 규율된 시장에 기여해 왔고, 또한 시장 참가자들의 자율 규제 문화와 관례 품질이 계속 강화되고 시장이 계속 공정하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정의 힘이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고, 주목할만한 성과 중 일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업 거버넌스 공간에서 말레이시아는 2018년 CG Watch에서 7위에서 4위로 급부상했습니다. 한편, 지역 기업 거버넌스 순위는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에 의해 유지 관리됩니다.

- 2018년 5월부터 말레이시아는 세계은행순위(World Bank Ranking) & 사업영위용이성점수(Ease of Doing Business Score)에 기반을 둔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에 대해 190 개 국가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iii. 위험 관리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그룹 내에서 위험성과 준법에 대한 전체론적이고 전사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준법과 통합된 중앙 집중화된 위험 관리 기능을 확립했습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자체의 사업과 운영의 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발행한 금융시장 인프라 지침, ISO 31000:2009 위험관리 - 원리 및 지침과 같은 최선의 관례, 그리고 국제증권위원회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가 발행한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FMI) 등을 채택합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전사적 위험 관리 틀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 관리에 대해 확립된 명확한 기능상의 책임으로 구성된 3개 방어선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견제와 균형은 물론 더 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방어선 아래 위험 관리와 준법 책임의 명확한 선긋기가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위험 관리 틀은 부르사 말레이시아 내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전사적 위험 관리 및 원칙과 틀(Enterprise Risk Management and Principles & Framework, ERMPF) 문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험 관리 틀의 확립으로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실행과 유지는 물론 모든 통제의 적절성, 효과 및 효율의 보장을 비롯한 위험 관리에 대해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윤곽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틀 안에는 확인, 평가, 통신, 모니터링은 물론 부서 및 기업 수준에서 위험 완화 전략 및 통제의 위험과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위한 확립되고 구조화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위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승인된 위험 매개변수에 따라 안내됩니다.

4. 라부안 금융 서비스 (Labuan Financial Services)

4.1 라부안 금융서비스감독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abuan FSA)

라부안 금융서비스감독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라부안 FSA)은 라부안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Labua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Centre, 라부안 IBFC)의 발전과 행정을 담당하는 법정 기관입니다. 라부안 FSA의 주요 역할은 라부안 IBFC 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허가받은 법인의 인가와 규제, 그리고 당해 법인이 관할 당국에 의해 채택된 내부적, 국제적 최고의 기준을 계속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라부안 IBFC 내 규제 환경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부안 IBFC의 규제 당국으로서, 라부안 FSA는 라부안 IBFC의 잘 규제되고 평판이 높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약속을 하는 한편, 산하 마케팅 조직인 Labuan IBFC Incorporated Sdn. Bhd.(라부안 IBFC Inc.)를 통해 라부안 IBFC의 홍보도 맡고 있습니다. 라부안 IBFC Inc.는 자원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을 두고 다양한 일반 및 이슬람 금융 서비스 솔루션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지원 합니다.

4.2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 내 기업 활동

라부안 IBF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고, 역내외 투자의 관문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확실히 역내외의 중간 관할권에서 투자자에게 재정 중립의 이상적 균형을 제시합니다. 견고하고 포괄적인 법의 틀에 의해 잘 뒷받침되는 라부안 IBFC는 국경 간 거래, 비즈니스 거래와 자산 관리 수요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과 이를 보완하는 광범위한 비즈니스 및 투자 구조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라부안 회사 구조와 전통과 이슬람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는 라부안을 매력적인 국제비즈니스센터 겸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위한 해외 투자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효율적인 이행 체계와 고객 지향적인 고객 현장으로 투자자의 비즈니스 수요를 더욱 원활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라부안 IBFC에 설립/등록된 법인체는 낮은 운영비용에서부터 편리한 과세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네트워크를 통한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접근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부안의 조세 체계에 따라 라부안 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라부안 법인체는 다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i. 매년 감사필 재무제표상 순이익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비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라부안 법인체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ii. 또한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거하여 최소 불가능한 세금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라부안 법인체는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거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라부안 IBFC 내 또는 라부안 IBFC를 통해 활동하는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iii. 또한 라부안 법인체는 세금 대신에 기업 자카트(Zakat)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라부안 IBFC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전문적 서비스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4.3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의 기업 활동

라부안 IBFC는 전통적인 것과 샤리아 기반 원칙을 담당하는 은행, 보험, 보험 관련 상품, 신탁회사 비즈니스와 자본시장 활동에서 모두 포괄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라부안 IBFC는 자산 관리(재단), 재보험/ 리타카ful(retakaful), 리스 및 상품 거래를 비롯한 틈새 상품을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라부안 지주회사(Labuan Holding Company), 라부안의 보호를 받는 셀 회사(Labuan Protected Cell Companies), 라부안 유한책임 파트너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그리고 특별신탁(Special Trust)과 같은 광범위한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사업 구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거래 프로그램에 대한 글로벌 인센티브(Global Incentive For Trading Programme) 제도에 따라 도입된 라부안 국제상품거래회사(Labuan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Company, LITC)는 국제 거래 회사들이 라부안 IBFC에 LITC를 설립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 석유/석유 관련 제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라부안 국제금융거래소(Labuan International Financial Exchange, LFX)는 금융 상품의 상장, 거래 및 결제 활동을 통해 국제시장에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완벽한 자본 조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은행 용자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라부안 IBFC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labuanibfc.com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외환 관리 규정

말레이시아는 진보적인 외환 관리(FEA)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 관리(FEA) 규칙은 금융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지불 지위의 균형과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가격을 보호하기 위해 Bank Negara Malaysia(BNM), 즉,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보다 광범위한 도구의 일부입니다. 이와 동시에, 외환 관리(FEA) 규칙은 교역, 투자 및 금융 흐름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 경제의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법인체의 국경 간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5.1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5.1.1 말레이시아 내 투자

말레이시아 시장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며, 말레이시아 내 투자를 위한 자본의 유출입 이동은 자유롭습니다.

- 비거주자는 직접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로 모든 형태의 링깃화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자금은¹ (허가 받은 국제 이슬람 은행을 제외하고)² 허가 받은 역내 은행 또는 허가 받은 역내 은행의 지정된 해외 사무소에 외화를 링깃화로 환전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는 주식 매각 수익금, 이윤, 배당금 또는 말레이시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외화로 본국으로 송금하는 한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5.1.2 국내 금융 접근성

i. 외화 차입

- (a) 비거주자는 인가 받은 역내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금액 한도 없이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습니다. 차입 대금은 역외 또는 역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b) 또한 비거주자는 역내 또는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자유롭게 외화 표시 수쿠크/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ii. 링깃화 차입

- a) 비금융 기관 비거주자는 (허가 받은 국제 이슬람 은행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내 실물 부문 활동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인가 받은 역내 은행, 거주자 회사 및 거주자로부터 자유롭게 링깃화 금액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b) 비금융 기관에 종사하는 비거주자는 부르사 말레이시아에서 거래된 증권과 금융 상품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7년 자본시장서비스법(Capital Market and Services Act)에 의거하여 발행된 주식 거래 면허를 가진 거주자 법인체로부터 증거금융 자금을 링깃화로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c) BNM으로부터 승인을 받자마자 비거주자는 링깃화로 표시된 수쿠크/채권³ 발행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링깃화 금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사례별로 역내 또는 역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3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정산

비거주자는 인가 받은 역내 은행 또는 지정된 해외 사무소를 통해 외화 또는 링깃화로 거주자와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해 자유롭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5.1.4 헤지

비거주자는 당좌계정 및 자본계정 거래에 대해 (인가 받은 국제 이슬람 은행을 제외하고) 인가 받은 역내 은행 및 지정된 해외 사무소와 자유롭게 헤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5.1.5 링깃화 및 외화 계정

비거주자가 다음의 계정을 개설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i. 말레이시아 내 투자와 비즈니스 활동의 편의를 위한 인가 받은 역내 은행의 외화 계정. 이들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허가 받은 역내 은행이란 2013년 금융서비스법 (Financial Act)에 따라 그리고 이슬람금융서비스법 (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에 의거한 허가 받은 은행 및 허가 받은 투자은행을 말합니다.

2 지정된 해외 사무소 목록은 http://www.bnm.gov.my/documents/aoo/list_of_aoo_country_20190419.pdf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링깃화 및 외화로 표시된 수쿠크/채권의 발행 관련 추가 정보는 <http://www.bnm.gov.my/microsite/fxadmin/notices/Jointinfonote.pdf>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ii. 인가 받은 금융 기관의 링깃화 계정. 이 계정에는 ⁴현물 시장 베이스로 이루어진 외화 매도로 받은 링깃화 또는 이자, 임대료, 이익, 배당금 또는 링깃화 자산 투자 회수로 얻은 수익금을 비롯, 말레이시아 내 투자로 얻은 모든 소득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일단 인가 받은 역내 은행에서 외화로 환전한 후에는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5.2 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5.2.1 외화 자산 투자

- i. 국내 링깃화 차입이 없는 거주자는 금액 한도 없이 역내 또는 해외의 외화 자산에 대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ii. 국내 링깃화 차입이 있는 거주자 법인은 링깃화를 환전하여 확보한 외화 자금을 사용하여 기업 집단 기준으로 역년당 총액에 상당하는 최대 RM5천만의 건전성

한도(prudent limit)까지 역내 또는 해외에서 외화 자산에 대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외화계정, 즉 해외 직접 투자와는 다른 목적으로 또는 금융 자산의 스와핑을 통해 인가 받은 역내 은행으로부터 받은 외화 대출.

5.2.2 역내 및 해외 차입

i. 외화 차입

- a) 거주자 법인은 다음의 대출자로부터 금액한도 없이 자유롭게 외화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
 - 인가 받은 역내 은행
 - 동일 기업 집단 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 기업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직접 주주, 그리고
 - 외화로 표시된 채무 증권의 발행을 통한 다른 거주자
- b) 거주자 법인이 비거주자 금융기관과 그리고 동일 기업 그룹의 일부가 아닌 비거주자 법인체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경우 기업 그룹 기준으로 총액 RM1억 상당액의 건전성 한도가 적용됩니다.

ii. 링깃화 차입

거주자 법인은 다음과 같이 링깃화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

- a) 말레이시아 내 실물 부문에서의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동일 기업 그룹 내 비거주자 회사 및 비거주자 직접 주주로부터 한도 없는 금액. 또는
- b) 말레이시아 내 사용 목적으로 비거주자 금융 기관을 제외한 모든 비거주자로부터 최대 총 RM1백만 까지.

5.2.3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상품 수출 대금은 수출 선적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출 판매 계약에 따라 수령하여 전액 말레이시아로 송금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와의 결제는 링깃화 또는 외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2.4 헤지

거주자는 외화 채무의⁵ 최대 12 개월까지 외환 노출을 헤지하기 위해 (인가 받은 국제 이슬람 은행을 제외하고) 선제적으로 인가 받은 역내 은행과 외화를 기반으로 링깃화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5.2.5 외화 계정

거주자는 인가 받은 역내 은행과 비거주자 금융 기관에 자유롭게 외화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외환 관리에 관한 추가 상세 사항은 <http://www.bnm.gov.my/fxadmin>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스팟은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배송을 위한 통화의 구매 및 판매를 의미합니다.

5 외화 의무란 거주하지 않고 외화로 이루어진 외화 수입 대금, 외화 대출 상환금 및 기타 통화 계정 거래를 지칭합니다.

제 7 장

지적재산권
보호

REGISTER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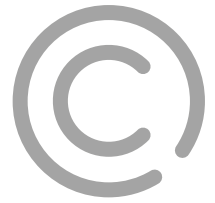
PROPERTY

COPYRIGHT

IDEA

LICENSE

PATENT



1. 지적재산권 보호

- 1.1 특허
- 1.2 등록 상표
- 1.3 산업 디자인
- 1.4 저작권
- 1.5 집적회로(IC)의 배치 설계
- 1.6 지리적 표시
- 1.7 지적재산권(IP) 가치 평가
- 1.8 지적재산권(IP) 금융
- 1.9 지적재산권 시장



지적재산권 보호

1. 지적재산권 보호

말레이시아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은 국내거래소비자문제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MDTCA) 산하 기관으로서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My-IPO)에 의해 관리됩니다.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 보호는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위치 표시 그리고 집적 회로의 배치 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 지적재산권을 통제하는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의 서명국입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원을 받아 체결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서명국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 및 외국 투자자를 모두 적절히 보호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지적재산권 법령들은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TRIPS 이사회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1.1 특허

말레이시아의 특허권은 1983년의 특허법과 1986년의 특허 규정에 따라 통제 받습니다.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특허 신청은 신청자를 대리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비슷하게 발명이 새롭고, 발명 단계와 관련이 있으며, 산업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 보호 기간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거하여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 간 보호를 받으며 또한 사용 여부에 따라 1회에 5년씩 2회에 걸쳐 추가로 연속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허가 받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강제 실시권과 병행수입 같은 특허에 대한 예외도 포함됩니다.

1.2 등록상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의 등록상표법(Trade Marks Act)과 1997년의 등록상표규정(Trade Marks Regulations)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등록상표법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상표와 서비스 상표를 보호합니다.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그 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거래 또는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집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등록상표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자는 등록 상표 대리인(trade mark agents)을 통해 출원하여야 합니다.

1.3 산업 디자인

말레이시아에서 산업디자인의 보호는 1996년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Act)과 1999년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Act)의 통제를 받습니다. 산업디자인법은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법률의 작용에 의해 양도 및 이전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산업디자인은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단지 기능에 의해서만 지정된 구성 방법 또는 디자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의 디자인은 반드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형상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내국인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디자인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디자인 출원자는 반드시 등록된 산업디자인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산업디자인은 1차적으로 5년 간 보호를 받으며, 이는 5년씩 4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25년 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96년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Act 1996)을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전 세계적인 신규성이 포함되고, 보호 기간이 연장되며, IP 저널 시스템과 산업디자인의 화폐화 및 증권화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1.4 저작권

1987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해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성격, 보호의 범위 및 보호 방법을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자격 있는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작물에 유효합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입니다.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 기간은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 간입니다.

또한 동법은 공연자의 실연 권리에 대해 실연을 하거나 녹음한 해 그 다음 역년 초부터 기산하여 50년 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독특한 특징은 강제 집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3년 10월 1일 시행된 1987년의 저작권법(Copyright Act)의 개정안은 국내거래소비자문제부(MDT-CA,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의 소속 집행 공무원들에게 체포 권한(영장 없는 체포 포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거래소비자문제부(MDTA)의 공무원 특별팀은 이 법을 집행할 목적으로 지명되며 또한 저작권 침해 의혹이 있는 건물 구내에 들어가 침해 복제물과 복제장치를 수색 및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012년의 저작권(개정)법은 2012년 3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국제 IP 협약/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에는 저작권의 자발적 통지 시스템의 도입, 저작권의 집중 관리 단체(CMO)의 규율,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의 기능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2012년 6월 1일부터 저작권자는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MyIPO)에 자발적 통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CMO를 MyIPO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5 집적회로(IC)의 배치 설계

2000년의 집적회로배치설계법(Layout Design of Integrated Circuits Act 2000)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한 집적회로 배치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적회로 배치 설계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 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 간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 간입니다. 동법은 또한 동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치 설계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에 의해 또는 법 집행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습니다.

동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의 투자자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6 지리적 표시

2000년의 지리적표시법(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00)은 특정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에 생산지의 명칭을 딴 상품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천연 또는 농업 제품 또는 수공업품 또는 공산품과 같은 상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 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국인 신청자는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신청자는 등록된 지리적 표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청(MyIPO)은 또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온라인 검색 및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물의 통지에 대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myipo.gov.m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 지적재산권(IP) 가치 평가

IP 가치 평가 모델(IP Valuation Model)과 함께, 지적재산권 평가 훈련 프로그램이 스위스 베른대학교(University of Berne) 세계무역연구소(WTI)의 협력으로 만들어졌고, 2013년 3월 7일자로 개척자단 훈련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국내 IP 가치 평가사는 금융 및 대출 목적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외국 IP 가치 평가사를 지명하는 비용과 복잡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따라서 중소기업(SME)과 IP 소유자가 자체의 IP를 평가 받는 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차례로 생태계의 전반적인 활력에 기여합니다.

1.8 IP 금융

국내 중소기업(SME)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 전략의 일환으로 MyIPO(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는 중소기업(SME)의 대출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담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SME) 지적재산권(IP)에 기초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및 대출 제품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여러 결정권자와 주요 플레이어, 특히 대출자와 금융 기관과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1.9 지적재산권 시장

IP(지적재산권)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전반적인 추진력의 일환으로 IP의 건강한 수요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IP 창출과 기타 형태의 노하우 및 무형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MyIPO(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는 자신의 권리를 허가 내주고 판매하기를 원하는 IP 소유자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IP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파일럿 플랫폼을 개발하여 출범했습니다. 이 포털은 IP 소유자가 자신의 IP를 알리고 잠재적 허가 임대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MyIPO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IP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홍콩, 싱가포르 및 중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다른 IP 시장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보다 적절한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향후 이 네트워크에 추가될 것입니다.

IP 시장과 참여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www.iprmarketplace.com.my를 방문하십시오.

제 8 장

환경 관리





1. 환경 정책

2. 환경적 요건

- 2.1 지정된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 2.2 부지 적합성 평가

환경 관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그들의 프로젝트 기획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염 통제에 공정 라인에서 가능한 수정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오염 방지를 생산 공정의 일부로 보고 자율 규제 문화를 비롯한 재활용 옵션에 초점을 맞추어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합니다.

1. 환경 정책

말레이시아의 국가환경정책(DASN)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경제, 사회,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환경정책(DASN)은 다음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환경
- 사회 전 부문의 효과적인 참여에 의한 국가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 및 국가 유산의 보존
-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과 소비 및 생산 패턴

말레이시아의 국가환경정책(DASN)에 따라 경제 발전 목표와 긴급한 환경 과제를 조화시키는 원칙이 8 가지 있습니다.

- 환경 관리
- 자연의 활력과 다양성의 보존
- 환경의 질의 지속적인 개선
-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 통합적 의사 결정
- 민간 부문의 역할
- 약속과 책임
- 국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참여

말레이시아의 국가환경정책(DASN)은 개발 활동과 모든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합시키고,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인적 개발을 촉진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환경정책(DASN)은 삼림 및 산업 정책 등과 같은 기타 국가 정책의 환경적 차원을 보완하고 높이며 또한 글로벌 우려 사항들에 대한 국제 관례를 인식합니다.

2. 환경적 요건

1974년 환경질(質)법(Environmental Quality Act 1974)과 그 부수 규정들은 환경 영향 평가, 부지 적합성 평가, 오염 관리 평가, 환경 모니터링 및 자율 규제 준수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활동은 프로젝트 시행 전 환경질(質) 담당 청장 (Director-General of Environmental Quality)으로부터 다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된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 건설 건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허가
- 소각로, 연료 소각 장비 및 굴뚝의 설치에 대한 서면 승인
- 지정된 부지의 점유 및 지정된 운송기관의 운영에 대한 허가

2.1 지정된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투자자는 자신이 제안한 산업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EIA)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2015년 환경의 질(지정된 활동)(환경영향평가) 명령에 의거하여 프로젝트를 승인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EIA)를 받도록 지정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일정

1. 농업

20 헥타르 이상 500 헥타르 미만의 삼림 지역을 농업 생산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 개발 계획

농업 용도 유형의 변경이 수반되는 500 헥타르 이상 면적의 농업 부동산 개발

2. 공항

1,000m 이상의 활주로가 포함된 공항의 확장

3. 배수 및 관개

- i. 인공 호수의 건설 및 100 헥타르 이상의 표면적을 가진 인공 호수의 확장
- ii. 500 헥타르 이상의 면적에 달하는 관개 계획

4. 수산업

20 헥타르 이상 50 헥타르 미만의 면적에 달하는 맹그로브림(mangrove), 토탄 늪지림 또는 신선한 물 늪지림의 소제가 수반되는 육상의 수산 양식 프로젝트

5. 임업

- i. 평균해수면상 300m 이상의 삼림을 20 헥타르 이상 100 헥타르 미만의 기타 토지 용도로의 전환.
- ii. 100 헥타르 이상 500 헥타르 미만의 삼림 지역을 기타 토지 용도로 전환할 목적의 목재 벌채, 절단, 또는 운반
- iii. 영구 보존 삼림 밖에서 100 헥타르 이상, 평균해수면상 300m 미만의 삼림 지역으로부터 목재의 벌채, 절단 또는 운반
- iv. 다음 지역의 전환 -
 - a) 20 헥타르 이상 50 헥타르 미만의 산업, 주택 또는 농업 용도를 위한
 - b) 맹그로브림.
 - c) 토탄 늪지림. 또는

신선한 물 늪지림

- v. 10 헥타르 이상 500 헥타르 미만의 조림 삼림의 개발.

6. 공업

- i. 화학 부문
1일 100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제품 또는 제품군
- ii. 시멘트
일당 200 톤 이상의 시멘트 생산 용량을 가진 시멘트 분쇄 공장

iii. 석회

회전식 석회 소성로의 경우 1일 생산 능력 100 톤 이상 또는 수직형 소성로의 경우 1일 생산 능력 50 톤 이상

iv. 석유화학 부문

1일 50톤 미만의 생산 능력을 가진 제품 또는 제품군.

v. 조선소

중량톤(Dead Weight Tonnage, DWT)이 5,000 톤 이상

7. 토지 개간

50 헥타르 미만 지역과 관련된, 강둑을 따라 펼쳐지는 해안 개간 또는 토지 개간

8. 광업

- i. 미네랄 공동 주택 지역 바깥의 알루미늄, 구리, 금, 철, 탄탈럼 또는 희토류 원소의 선광을 포함한 광석 처리.
- ii. 육상이나 강 또는 해안 지역 또는 20 헥타르 이상으로 저조선에서 측정한 3 해리 이하의 영해상의 모래 채광(Sand mining).
- iii. 대륙붕 구역의 모래 채광

9. 석유

- i. 개발 -
 - a) 유전
 - b) 가스전 또는
 - c) 오일 가스전
- ii. 다음의 30km 이상의 건설
 - a) 근해 파이프라인
 - b) 내륙의 파이프라인
 - c) 근해 파이프라인 및 내륙의 파이프라인

iii. 다음의 건설 -

- a) 오일 분리, 가공, 취급 및 저장 시설
- b) 가스 분리, 가공, 취급 및 저장 시설
- c) 오일 및 가스 분리, 가공, 취급 및 저장 시설

iv. 상업, 공업 또는 주거 지역에서 3km 이내 (주유소 제외) 휘발유, 가스 또는 경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한 총 60,000 배럴 이상의 연결 저장 능력을 가진 석유 제품 저장시설의 건설

10. 항구

- i. 연간 취급 능력이 50% 이상 증대하는 항구의 확장
- ii. 연간 어류 하역 능력이 50% 이상 증대하는 어항의 확장

11. 발전 및 송전

- i. (석탄 이외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송전선 유무와 관계 없이 발전 용량이 10MW 이상인 증기 발전소의 건설
- ii. 전송선 유무와 관계 없이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 iii.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송전선 건설

12. 해안 및 언덕 지역의 개발

- i. 해안 지역에서 80 개 이상의 방을 가진 건물 또는 시설물의 건설
- ii. 20 헥타르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평균해수면상 300m 이상에 고원 피서지 휴양시설 또는 호텔의 건설

13. 경사 지역의 개발

25° 이상 35° 미만의 경사도를 가진 지역에 대한 50% 미만의 개발 또는 개간.

14. 폐기물 처리 및 처분

- i. 폐기 일정
 - a) (근해의) 회수 공장의 건설.
 - b) (근해의) 폐수처리공장의 건설.
 - c) (근해의) 저장시설의 건설.

ii. 고체 폐기물

- a) 퇴비화 공장의 건설
- b) 회수 공장(recovery plant) 또는 재활용 공장(recycling plant)의 건설

iii. 하수

- a) 인구 20,000 명 이상을 위한 하수 처리 공장의 건설
- b) 슬러지 처리 시설물

15. 준설

- i. 개발 준설.
- ii. 폐기물 준설 자재의 처분

16. 주택

50 헥타르 이상의 주택 개발

17. 산업 단지 개발

20 헥타르 이상의 산업 단지 개발

18. 새로운 도시

2,000 호 이상의 주택 또는 100 헥타르 이상의 부지로 구성된 새로운 군구(郡區)의 건설

19. 채석장

바위 재질의 채석장

20. 도로

- i. 고속도로의 건설
- ii. 고가도로의 건설
- iii.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횡단하거나 또는 근처의 도로, 터널 또는 다리의 건설

21. 급수

1일 4,500m³ 이상의 산업용, 농업용 또는 도시 급수를 위한 지하수의 개발

2차 도표

1. 농업

- i. 삼림을 농업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500 헥타르 이상의 토지 개발 계획
- ii. 서서 있는 돼지가 2,000 마리 이상인 새로운 양돈 지역

2. 공항

- i. 1,000m 이상의 활주로를 가진 새로운 공항의 건설.
- ii. 주 공원, 국립 공원, 국립 해양공원, 해양 공원을 둘러싼 섬 또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내, 근처 또는 가까이의 공항 건설.

3. 배수 및 관개

- i.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내, 근처 또는 가까이의 50 헥타르 이상의 표면적을 가진 인공 호수 및 인공 확장 호수의 건설.
- ii. 20 헥타르 이상의 습지대, 야생 생물 서식지 또는 건조한 내륙 삼림의 배수.

4. 수산업

50 헥타르 이상의 맹그로브림(mangrove), 토탄 늪지림 또는 신선한 물 늪지림의 소제가 수반되는 육상의 수산 양식 프로젝트

5. 임업

- i. 평균 해수면상 300m 이상의 삼림을 100 헥타르 이상의 기타 용도의 토지로 변경하는 전환.
- ii. 다음 지역 내에서 삼림의 벌채 또는 기타 용도의 토지로의 전환
 - a) 도시의 급수, 관개 또는 수력 발전에 사용되는 저수지 집수 지역
 - b) 주 공원, 국립 공원 또는 국립 해양 공원 근처 또는 가까이의 지역
 - c) 주 공원, 국립 공원 또는 국립 해양 공원. 또는
 - d) 1984년 국가임업법(National Forestry Act) 1984 [Act 313]에 따라 집수 삼림으로 관보에 발표된 지역.

- iii. 영구 보존 삼림 밖에서 100 헥타르 이상, 평균해수면상 300m 이상의 삼림 지역으로부터 목재의 벌채, 절단 또는 운반
- iv. 500 헥타르 이상의 지역에 이르는 목재의 벌채, 절단 또는 운반
- v. 500 헥타르 이상의 조림 삼림의 개발.
- vi. 다음 지역의 전환 -
 - a) 20 헥타르 이상 50 헥타르 미만의 산업, 주택 또는 농업 용도를 위한
 - b) 맹그로브림.
 - c) 토탄 늪지림. 또는 신선한 물 늪지림.
- vii. 국립 해양 공원 근처 섬의 맹그로브림, 토탄 늪지림 또는 신선한 물 늪지림의 소제.

6. 공업

- i. 비철 부문
 - a) 1차 제련 알루미늄(모든 크기)
 - b) 1차 제련 구리(모든 크기)
 - c) 1차 제련 기타 비철(1일 50톤 이상 생산)
- ii. 시멘트
시간당 클링커 생산 능력 30톤 이상 시.
- iii. 제철 제강 부문
 - a) 1일 100톤 이상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서 철광석의 이용.
 - b) 1일 200톤 이상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서 고철의 이용.
- iv. 석유화학 부문
1일 50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제품 또는 제품군
- v. 펄프 또는 펄프 및 종이 부문
1일 50톤 이상의 생산 능력

vi. 재활용 제지산업

1일 50톤 이상의 생산 능력

7. 토지 개간

- i. 50 헥타르 이상의 지역과 관련된 강둑을 따라 이루어지는 해안 개간 또는 토지 개간
- ii.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내, 근처 또는 가까이의 강둑을 따라 이루어지는 해안 개간 또는 토지 개간
- iii. 인공섬의 개간

8. 광업

- i. 대규모 운영이 관련된(unnatural) 새로운 지역의 광물 채광
- ii.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내, 근처 또는 가까이의 광물 채광

9. 석유

- i. 정유공장의 건설
- ii. 가스 정제공장의 건설
- iii. 오일 및 가스 정제공장의 건설

10. 항구

- i. 새로운 항구의 건설
- ii. 새로운 어항의 건설

11. 발전 및 송전

- i. 전송선 유무의 10 MW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 ii. 전송선 유무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12. 해안 지역, 국립 공원 및 주 공원의 개발

다음의 지역의 관광 시설, 휴양 시설 또는 기타 시설의 개발 -

- i. 국립 공원 또는 주 공원. 또는
- ii. 1985년 수산업법(Fisheries Act [Act 317])에 따라 국립 해양 공원으로 관보에 게재된 주위에 물로 둘러싸인 섬

13. 경사 지역의 개발

- i. 25° 이상 35° 미만의 경사도를 가진 지역에 대한 50% 이상의 개발 또는 개간.
- ii. 경사도가 35° 이상인 지역을 횡단하거나 또는 근처의 도로, 터널 또는 다리의 건설

14. 폐기물 처리 및 처분

- i. 폐기 일정
 - a) 열처리 공장의 건설.
 - b) 근해의 납전지 폐기물 회수 공장의 건설.
 - c) 공공 수도 유입구 2차측에 위치한 상당 양의 폐수를 생성하는 근해의 회수 공장 또는 처리 시설의 건설
 - d) 안전한 쓰레기 매립지 시설의 건설
- ii. 고체 폐기물
 - a) 열처리 공장의 건설.
 - b) 위생 쓰레기 매립지 시설의 건설
 - c) 쓰레기 선별시설의 건설

15. 댐 건설

- i. 관개, 홍수 조절, 매립 제어, 휴양, 급수를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100 헥타르 이상의 댐 또는 저류용 저수지의 건설
- ii.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댐 및 수력발전소 계획
 - a) 15m 이상의 댐과 총 면적 40 헥타르 이상의 보조 구조물들
 - b) 표면적 100 헥타르 이상의 저수지

16. 운송

- i. 대량 고속 운송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노선 또는 지선의 건설
- ii. 새로운 철도 노선 또는 철도 지선의 건설

17. 방사능 물질과 방사능 폐기물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이 도표와 첫번째 도표에서 지정된 활동

2 단계의 EIA(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i. 배서를 받기 위한 TOR 제출
- ii. 승인을 받기 위한 EIA(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두 문서는 유자격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DOE에 등록된 EIA 컨설턴트)

2.2 부지 적합성 평가

어떤 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안된 현장의 위치가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환경에 대한 우려 사항이 설계 및/또는 기획을 통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산업 활동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부지 선정을 통하여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통제와 오염 방지를 고려하여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특히 오염 관리에 필요할 수도 있을 불필요한 투자 비용을 줄이고 관련 프로젝트나 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에너지국이 발간한 2017년 말레이시아 산업 부지 선정을 위한 환경적 필수 사항 (Environmental Essentials for the Siting of Industries in Malaysia, EESIM)이 제조 시설 또는 산업 시설 설립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할 때 프로젝트 개발자들을 위한 안내 문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제안한 산업 활동은 반드시 산업 단지 내에 부지를 선정하고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통제 대책을 세우고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부지의 적합성을 고려할 때는 관보에 게재된 구조 및 현지 계획, 주위 토지 이용, PLANMalaysia (Jabatan Perancangan Bandar dan Desa)에 의해 설정된 건축 후퇴 (set-back) 또는 완충구역(buffer zone)의 마련, 추가 오염 하중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지역의 용량 그리고 폐기물 처분 요건 등과 관련하여 호환성의 관점에서 관심있는 부지를 평가합니다.

제 9 장

기반시설 관리





1. 산업 부지

- 1.1 산업 단지
- 1.2 자유지역
 - 1.2.1 자유상업지역(FCZ)
 - 1.2.2 자유산업지역(FIZ)
- 1.3 허가받은 보세제조창고

2. 전력 공급

3. 용수 공급

4. 통신 서비스

5. 항공화물 시설

6. 항만 시설

7. 화물운송

- 7.1 컨테이너 운반장치
- 7.2 화물운송 대행

8. 고가도로

9. 철도운송 서비스

10. MSC MALAYSIA

제 9장

기반시설 관리

1. 산업 부지

1.1 산업 단지

말레이시아에는 전국에 걸쳐 세계급 기반시설과 우수한 연결성을 가진 6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어 말레이시아를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가장 가고 싶어하고 지속가능하며 도움이 되는 근무처로 만듭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소규모 산업, 할랄(Halal) 산업, 가구 단지, 생명공학 단지, 기술집약적 산업 및 R&D 활동 등과 같은 특정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수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의 북부에 위치한 쿨림 하이테크 파크(Kulim Hi-Tech Park) 및 바투 카완 산업단지(Batu Kawan Industrial Park) 그리고 말레이시아 최초의 완전 통합된 하이테크 단지인 아이파크 조호르(i-Park Johor)는 독특한 '산업 리조트'의 개념을 만들어냈고 또한 할랄 제품 활동에 주안점을 두는 웨스트포트주(Westport) 풀라이 인다(Pulau Indah)에 위치한 셀랑고어 할랄 허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 산업단지는 쇼핑 센터, 병원, 교육 기관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과 같은 편의 시설과 통합된 리조트 또는 산업 도시 개념을 융합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1.2 자유지역

자유지역(Free Zones, FZ)은 1990년 자유지역법(Free Zones Act 1990) 제 3(1)절의 조항에 의거해 재무부장관이 말레이시아 각지에 자유상업지역(Free Commercial Zone) 또는 자유산업지역(Free Industrial Zone)으로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유지역은 주로 중계무역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계되며 또한 특히 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제조회사들을 위해 구축됩니다.

자유지역은 1967년 관세법 제 2 (1A)절에 의거해 주관세지역(Principal Customs Area, PCA) 외의 지역으로 간주되므로 1967년 관세법 제 31절에 의한 수출입 금지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지역 내 활동과 산업에는 최소한의 통관 절차가 적용됩니다.

1.2.1 자유상업지역(FCZ)

거래(소매 거래는 제외), 소분(breaking bulk), 등급매기기, 재포장, 재라벨작업, 환적과 환승 등의 상업 활동을 위해 할당된 자유지역.

현재까지 Port Klang 북항, 남항, 서항, Port Klang 자유지역, Pulau Indah MILS 물류 허브, Butterworth, Bayan Lepas, KLIA, Rantau Panjang, Pengkalan Kubor, Stulang Laut,

Johor Port와 Port of Tanjung Pelepas에 21개의 자유상업지역(FCZ)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2.2 자유산업지역(FIZ)

자유산업지역(Free Industrial Zones, FIZ)은 최소한의 통관 절차 외에도 수출주도형 제조회사들에 대해 제조 공정에 직접 소요되는 원료, 구성 부품, 기계와 장비류의 면세 수입 및 완제품 수출에 있어서 최소의 절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까지 Pasir Gudang, Tanjung Pelepas, Batu Berendam I, Batu Berendam II, Tanjung Kling, Telok Panglima Garang, Pulau Indah(PKFZ), Sungai Way I, Sungai Way II, Ulu Kelang, Jelapang II, Kinta, Bayan Lepas I, II, III, IV, Seberang Perai 및 Sama Jaya 등의 22개 지역에 자유산업지역(FIZ)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주 자격

자유산업지역 입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제품 또는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
- 원자재/구성품을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유산업지역 회사가 국산 원자재/구성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3 허가받은 보세제조창고

자유산업지역 구축이 실용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역에서 자유산업지역과 같은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사는 허가받은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s, LMW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보세제조창고(LMWs)에 제공되는 편의는 자유지역(FIZs)에서 운영 중인 공장에서 제공되는 편의와 비슷합니다.

입주 자격

정상적으로 LMWs로 승인 받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제품 또는 80% 이상이 수출용일 경우
- 원자재/구성품이 주로 수입될 경우

관세 납부

2011년 1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FIZ)과 허가받은 보세제조창고(LWM) 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 아세안물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에 상응하는 수입관세 면제를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 i. 국내산 부품의 가치가 40% 이상일 때. 그리고
- ii. 국내산 부품의 가치가 40%에 미달할 경우, FIZ/LMW 기업이 생산된 최종 제품의 비국내산 원자재가 규정된 메커니즘을 통해 실질적 변형 공정을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내산 인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전력 공급

말레이시아의 전력 공급은 충분하고 고품질이며 신뢰성이 있어 이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다른 공익시설과 호환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서부의 전력 공급은 국가 공익시설 회사인 Tenaga Nasional Berhad의 의해 이루어지며, 반면 말레이시아 동부, 즉, 사바주(Sabah)와 사라왁주(Sarawak)의 전원 공급은 각각 사바 전력 센디리안(Sabah Electricity Sendirian Berhad(SES))과 사라왁 에너지(Sarawak Energy Berhad(SEB))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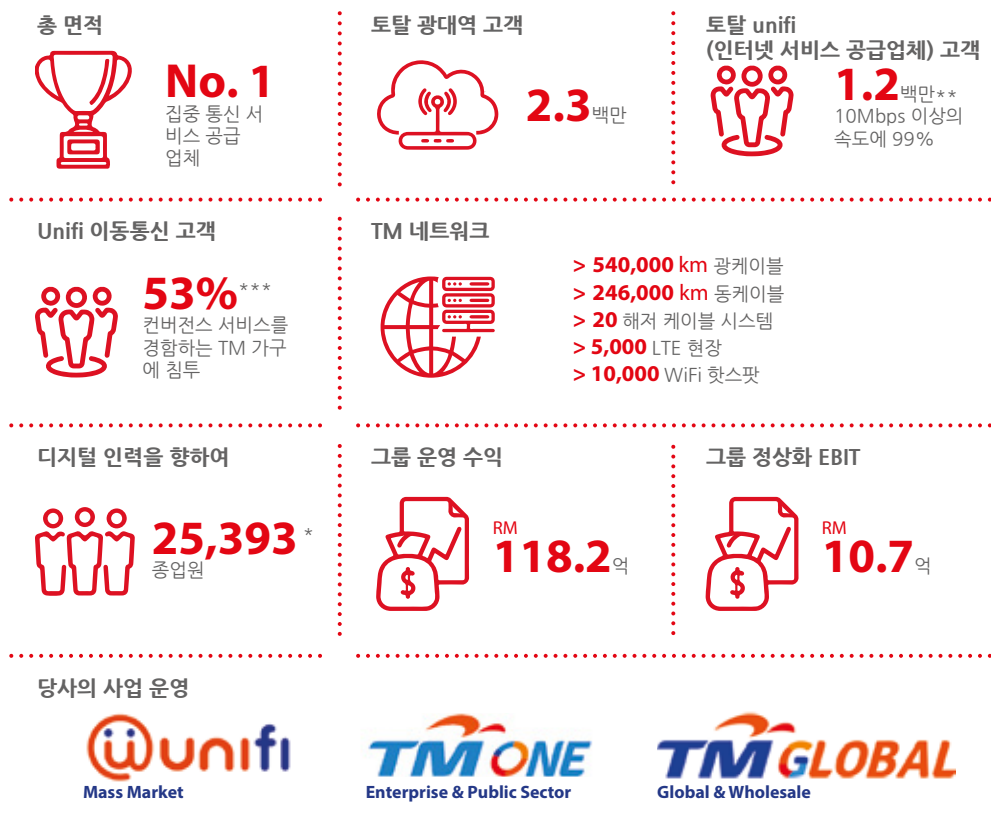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의 발전은 주로 화력발전, 가스발전 및 수력발전의 혼합입니다. 발전소는 공익시설 업체와 독자 전력 생산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소규모 수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매스로부터 나오는 재생에너지 또한 말레이시아의 녹색기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송전 전압은 500kV, 275kV와 132kV이며, 배전 전압은 33kV, 11kV와 400/230V입니다.

3. 용수 공급

말레이시아반도와 라부안 연방령의 용수 공급 및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의 공동 관할 하에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말레이시아 상수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 국가상수도서비스법(Suruhanjaya Perkhidmatan Air Negara 2006 Act (Act 654))와 2006년 상수도서비스산업법(Water Service Industry Act 2006 (Act 655))이 각각 2007년과 2008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잘 조절된 수도서비스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상수도산업의 효율성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증진되어 소비자와 투자자는 물론이고 운영자도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반도와 라부안연방령의 소비자는 신뢰성 있고 안전한 수도 공급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수도 공급 운영자가 식수의 품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보건부(MOH)는 면밀한 감시와 정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수도 사용자는 모두 수도계량기로 사용량이 계량됩니다. 수도 요금은 주마다 다릅니다.

4. 통신 서비스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용 업무용 연구소 단계 III 인증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10 개 데이터 센터 전국적, 2 개 지역의 -HK & US 연락 센터	연락 센터 2 개 국가에 >8,000 개 대리점	말레이시아의 1 번째 통합 IoT 운영 센터 전국적인 범위	TM One 경험 센터 >20,000 ft2의 물입형 디지털 환경	말레이시아의 최고 브랜드 2018년 수상자
---	--	---	--	--

*2018년 8월 인력 보고서 ** 1H18 발표에 따라 ***2019년 2월 26일 일자로

핵심 사업 & 초점

당사의 관리 서비스 제공

스마트 서비스

- 스마트 인프라 서비스
- 스마트 주차 관리
- 디지털 사이니지
- 스마트 에너지
- FM 서비스
- 안전 보안 서비스

- 인텔리전트 종단 장치
- 자동 시스템

턴 온 서비스 (Turn On Services)

- 공중 사스 (Public SaaS)
- 기업 사스 (Enterprise SaaS)
- 수직적 애플리케이션 임대 서비스 (Vertical Apps)
-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Enterprise Mobility)
- 사용자 창작 콘텐츠 (UCC)
- 텔레프레전스 (Telepresence)
- 서비스형 시스템 (XaaS)
- 서비스형 인프라스트럭처 (IaaS)
- 서비스형 플랫폼 (PaaS)

- 모듈형

부가가치 서비스

- 주문형 비디오 (VoD)
- 인터넷 전화 (VoIP)
- 인터넷 TV (IPTV)
-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 텔레프레전스 (Telepresence)
- 고정밀도 (HD) 콘텐츠
- IT 보안
- 관리 서비스 (Managed Services)

- IT 성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통신 경험을 제공함

커넥티비티(Connectivity)

- Unifi 고속 광대역 (High Speed Broadband)
- IP VPN (MPLS)
- 글로벌 커넥티비티
- 와이파이 & 핫스팟 (WiFi & Hotspots)
- 중립 반송파 데이터 센터
- 인터넷 연동 (Internet Exchange)

- 모든 건물이 필요한 서비스 설비

5. 항공화물 시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중심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어 환적센터로서 특히 매력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항공화물 운송시설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6개 국제공항은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셀랑고르주(Selangor) 세팡(Sepang)의 정교한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KILA)은 현재 연간 4천만 명의 여객처리능력과 120만 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ILA)은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연간 여객 6,000만 명과 화물 300만 톤, 그리고 그 후에는 연간 1억 명의 여객과 500만-600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해 10,000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다른 국제공항으로는 말레이시아반도의 페낭국제공항(Penang), 랑카위국제공항(Langkawi)과 세나이국제공항(Senai), 사바주(Sabah)의 코타키나발루국제공항(Kota Kinabalu), 사라왁주(Sarawak)의 쿠칭국제공항(Kuching)이 있습니다.

MASKargo는 말레이시아항공(MAS)의 주 화물 사업부문으로 정기편 및 전세편 항공화물 서비스, 공항 내 지상조업 서비스 및 육상수송을 이용한 공항과 항만 간 화물물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ASKargo는 또한 지주회사 말레이시아항공(MAS)과 다른 회사들의 항공기 선복을 이용해 6 개 대륙에 걸쳐 이 국적사의 100 개 목적지에 화물운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SKargo는 자유상업지역(FCZ) 내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서 최첨단 화물센터 (Advanced Cargo Centre(A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전자동화된 절차 등의 최신 기술을 가진 강력하고 정교한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 화물데이터 추적과 통신의 원활한 흐름이 보장됩니다. 이 센터의 시설 가운데에는 동물호텔(Animal Hotel), 원스톱 부패성화물센터(one-stop Perishable Centre),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요 운송 주선업체들을 위한 특급 비즈니스 센터(Priority Business Centre, PBC)가 있습니다.

현재 MASKargo는 쿠알라룸푸르, 페낭, 쿠칭(말레이시아)을 기점으로 시드니, 상하이, 타이베이, 방콕, 홍콩, 마닐라, 자카르타, 수라바야, 도쿄, 오사카,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과 샤르자(Sharjah)에 정기편 화물기 서비스를 취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MASKargo는 2 대의 보잉 B747-400F 기종과 2 대의 에어버스 A330-200F 기종 등 자체 보유 화물기들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최근 MASKargo는 화물 운송 보안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공급 체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안전한 화물 프로그램(Secure Freight Programme)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MASKargo는 세계 최초의 항만 환적서비스 지역 내의 공항으로 I-Port라는 이름의 제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포트 클랑(Port Klang)에서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KILA)을 경유하는 해상 및 항공 화물 선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MASKargo는 국내 공항과 공항 간 트럭운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항공화물 서비스는 트랜스마일항공(Transmile Air)이 사바주, 사라왁주와 말레이시아반도 내 6 곳의 국내 목적지와 홍콩과 싱가포르 2 곳의 해외 목적지에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마일항공이 말레이시아 동부의 라부안(Labuan)과 빈톨루(Bintulu)에 운항하는 국내 노선은 주로 특수한 취급 시설이 필요한 석유가스산업을 위해 운항하고 있습니다. 정기편 항공화물 서비스에 추가로, 트랜스마일항공은 아세안과 아태지역에 전세편 항공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인도, 중동 및 중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MASKargo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maskargo.com을 방문하십시오.

6. 항만시설

말레이시아의 항만은 연방 항만과 주 항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방 항만은 교통부의 관할에 속합니다. 현재 주요 연방 항만은 포트클랑항(Port Klang), 페낭항(Penang Port), 조호르항(Johor Port), 탄중펠레파스항(Port of Tanjung Pelepas), 쿠안탄항(Kuantan Port), 케마만항(Kemaman Port), 라부안항(Labuan Port), 빈톨루항(Bintulu Port) 등의 7곳이 있습니다. 이들 연방 항만은 모두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빈톨루항은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액화천연가스(LNG)를 처리하는 항만입니다.

최근 수년 간 말레이시아의 경제 및 교역 확대에 발맞춰 항만들도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만 중 2 개 항만, 즉 포트클랑항과 탄중펠레파스항은 세계 20대 컨테이너항 가운데 올라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만 관련 정보의 정책은 다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i. 공급 주도적, 즉 항만의 충분한 처리능력을 확보하여 선박의 대기 시간을 제로로 만듭니다.
- ii. 다음을 통해 항만 활용도를 높입니다.
 - 항만 운영의 효율과 생산성 제고
 - 항만 민영화
 - 부대 서비스의 개발과 개선
 - 내륙 운송의 개발과 개선
- iii. 화물집중정책. 포트클랑항은 전국화물 물동량의 센터 겸 환적 센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탄중펠레파스항은 지역 환적 허브로 인정 받아 왔습니다.

7. 화물 운송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다양한 회사가 종합적인 컨테이너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겐 컨테이너 운반장치, 화물운송대행, 창고보관, 선박급유(bunkering), 배송 관련 서비스, 항만과 세관 통관, 컨테이너 수리, 대여와 보수유지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말레이시아의 수하인과 고객은 국내 지점과 사무소망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화물 운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 세계에 걸쳐 훌륭한 국제 대리점 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7.1 컨테이너 운송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륙 공공 운송 대리점 협회(Land Public Transport Agency)를 통해 내륙 컨테이너 운송업체를 규제합니다.

62 개의 운송업체가 다양한 트레일러군과 개조 차량을 포함하는 원동기 차량을 통해 다양한 화물 운송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일부는 현대적인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을 장착하여 도로에 운행 중인 운반 차량과 교신이 가능합니다.

많은 다른 중소기업들이 일반 화물을 국내 각지의 목적지에 트럭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폐쇄지선철도를 이용한 철도운송서비스(Block Rail Feeder Service)와 원격지 고객을 위한 정기 화물선 서비스를 통한 컨테이너 수송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도로와 철도) 운송 시스템으로 신속한 화물 운송이 확실히 됩니다.

7.2 화물운송 대형

말레이시아 전역에 소재하는 수백 곳의 화물운송 대행업체들이 전국에 걸친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화물도 여러 곳의 국제운송 대행업체를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운송 대행업체들은 제조업체들에 대해 상품의 통관을 위해 세관당국으로부터 필요한 면허, 허가 및 관세/세 면제의 신청 수속을 대행해 줍니다.

8. 고가도로

말레이시아의 도시 간 고속도로의 설계, 건설, 조정, 운영과 유지관리는 말레이시아고가도로청 (Malaysian Highway Authority)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편안한 고속도로는 모든 주요 소도시와 잠재적 개발 지역을 연결하며 또는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민영화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의 강력한 경제성장과 함께 하여 지난 수년 간 보다 많은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해 왔습니다.

현재 남북 고속도로와 페낭대교(Penang Bridge), 쿠알라룸푸르-카락고속도로 및 동해안 고속도로가 말레이시아 도로 인프라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말레이시아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 철도운송 서비스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운영 중인 Keretapi Tanah Melayu Bhd.(KTMB)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KTMB는 말레이시아 최대의 수송 회사로서 국물에서 기계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수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KTMB의 네트워크는 파당 베사르(Padang Besar)의 북부 터미널부터 남부의 조호르주 파시르 구당(Pasir Gudang)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반도 전체 길이와 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북부 라인은 페낭섬의 부두와 항만시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MSC MALAYSIA

MSC Malaysia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MSC Malaysia의 지위는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센티브, 권리 및 특권을 국내외 모두 자격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처음 구상된 MSC Malaysia 프로그램은 이 나라의 디지털 경제를 새로운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IT 기업이 2,000여 개가 넘는 가운데 MSC Malaysia의 지위는 말레이시아의 많은 IT 기업들이 매우 선망하는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MSC Malaysia의 지위를 가진 회사로 인정받을 경우 그 회사는 경쟁이 치열한 IT 산업에 필요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독점적 인센티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MSC MALAYSIA 사이버시티(Cybercities) 및 사이버센터(Cybercentres)

MSC Malaysia 사이버시티 및 사이버센터는 ICT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내 ICT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생태계를 제공하는 유익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MSC Malaysia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같은 부문의 기업이 함께 배치되어 빠른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발전된 디지털 경제 비전의 틀 안에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익한 생태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은 혁신과 발전을 장려하는 한편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부로, MSC Malaysia 사이버시티 및 사이버센터는 아래의 목록과 같이 61개에 달합니다.

클랑 밸리(KLANG VALLEY)			
1.	사이버자야(Cyberjaya)	25.	테크놀로지 파크 말레이시아 (Technology Park Malaysia)
2.	UPM-MTDC	26.	KLCC
3.	KL 타워	27.	KL 센트럴
4.	i-City	28.	TM 사이버센터 단지
5.	미드 밸리 시티(Mid Valley City)	29.	반다르우타마(Bandar Utama)
6.	방사르 사우스 시티(Bangsar South City)	30.	G타워
7.	심포니 하우스(Symphony House)	31.	퀸 9(Quill 9)
8.	더 인터마크(The Intermark)	32.	위즈마 함자 켕 힝(Wisma Hamzah Kwong Hing)
9.	자야 33	33.	푸총 금융 기업 센터(Puchong Financial and Corporate Centre)
10.	메나라 월드와이드(Menara Worldwide)	34.	메나라 빈자이(Menara Binjai)
11.	퍼소프트 타워(Persoft Tower)	35.	메나라 OBYU(Menara OBYU)
12.	메나라 메이뱅크(Menara Maybank)	36.	UOA 다만사라(UOA Damansara)
13.	캡스퀘어 타워(Capsquare Tower)	37.	선웨이 리조트 시티(Sunway Resort City)
14.	다만사라 업타운(Damansara Uptown)	38.	원 시티(One City)
15.	Linde ROC	39.	iHubSentulPark
16.	메나라 LGB(Menara LGB)	40.	푸트라자야(Putrajaya)
17.	룩소르 테크 센터(Luxor Tech Centre)	41.	더 패러다임(The Paradigm)
18.	오아시스 다만사라(Oasis Damansara)	42.	메나라 메시니아가(Menara Mesiniaga)
19.	UOA 비즈니스 파크(UOA Business Park)	43.	아이콘 시티(Icon City)
20.	플라자 합 썅(Plaza Hap Seng)	44.	네오 다만사라(Neo Damansara)
21.	APM 테크놀로지 센터(APM Technology Centre)	45.	메나라 켄 TTDI(Menara Ken TTDI)
22.	위즈마 E & C(Wisma E & C)	46.	다만사라 시티(Damansara City)
23.	JKG 타워(JKG Tower)	47.	뉴클레우스 타워(Nucleus Tower)
24.	다타란 메이뱅크(Dataran Maybank)		

페낭(PENANG)

1.	PCCI
2.	스팬시온(Spansion)
3.	원 프리싱트(One Precinct)
4.	알부카리 빌딩(Albukhary Building)
5.	메나라 주리히(Menara Zurich)
6.	GMS@Mayang

조호르(JOHOR)

1.	Menara MSC Cyberport
2.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스튜디오 (Iskandar Malaysia Studios)
3.	메디니(MEDINI)

멜라카(MELAKA)

1.	멜라카 국제무역센터 (Melaka International Trade Centre)
----	---

케다(KEDAH)

1.	쿨림 하이테크 파크(Kulim Hi-Tech Park)
----	--------------------------------

페락(PERAK)

1.	메루 라야(Meru Raya)
----	------------------

파항(PAHANG)

1.	푸트라광장(Putra Square)
----	---------------------

사라왁주(SARAWAK)

1.	Town Square Bintulu
----	---------------------

MSC Malaysia에 대한 인센티브

MSC 지위에 관한 업데이트 및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MDeC의 웹사이트

<https://www.mdec.my/news/important-updates-and-changes-on-msc-malaysia-bog-5>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Block B8, Prime Minister's
Department Complex
62502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888 3904
웹사이트 : www.pmo.gov.my
이메일 : ppm@pmo.gov.my

농업 및 농업 기반 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

Block 4 G1, Wisma Tani
No. 28,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24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870 1200/1400
팩스 : (603) 8888 6906
웹사이트 : www.moa.gov.my
이메일 : pro@moa.gov.my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Wisma Pertahanan
Jalan Padang Tembak
50634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2059 8400
팩스 : (603) 2691 4163
웹사이트 : www.mod.gov.my
이메일 : portal@mod.gov.my

국내거래

협력소비자보호부

No. 13, Persiaran Perdana,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23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882 5983
웹사이트 : www.kpdnkk.gov.my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Block E8, Complex Parcel 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04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000 8001
웹사이트 : www.moe.gov.my
이메일 : kpkkpm@moe.gov.my

에너지과학기술환경기후부

(MINISTRY OF ENERGY, SCIENCE, TECHNOLOGY, ENVIRONMENT & CLIMATE)

Level 1 – 7, Block C4, C5, & C7, Complex C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62662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888 9070
웹사이트 : www.mestecc.gov.my
이메일 : enquiry@mosti.gov.my

연방령부(MINISTRY OF FEDERAL TERRITORIES)

Block 1 & Block 2
Menara Seri Wilayah, Precinct 2
6210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889 8000
팩스 : (603) 8889 7957
웹사이트 : www.kwp.gov.my
이메일 : webmaster@kwp.gov.my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Complex
No.5 Persiaran Perdana,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2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3000
팩스 : (603) 8882 3893 / 3894
웹사이트 : www.treasury.gov.my
이메일 : pro@treasury.gov.my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Wisma Putra Complex
No. 1, Jalan Wisma Putra,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02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889 1717 / 8889 2816
웹사이트 : www.kln.gov.my
이메일 : webmaster@kln.gov.my
pro.ukk@kln.gov.my

보건부(MINISTRY OF HEALTH)

Block E1, E3, E6, E7 & E10, Complex 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888 6187
웹사이트 : www.moh.gov.my
이메일 : kkm@moh.gov.my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Block D1, & D2 & D9, Complex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46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886 8000/3000
팩스 : (603) 8889 1613/1610
웹사이트 : www.moha.gov.my
이메일 : webmaster@moha.gov.my

주택지방개발부(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DEVELOPMENT)

No. 51,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6210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891 3182
웹사이트 : www.kpkt.gov.my
이메일 : pro@kpkt.gov.my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Level 6-9, Block D3, Complex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3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886 5000/ 5200
팩스 : (603) 8889 2381
웹사이트 : www.mohr.gov.my
이메일 : akpukk@mohr.gov.my

통신멀티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Lot 4G9,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10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2693 5114
웹사이트 : www.kkmm.gov.my
이메일 : webmaster@kkmm.gov.my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Wisma Sumber Asli
No. 25,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74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889 1972
팩스 : (603) 8889 1973
웹사이트 : www.doe.gov.my
이메일 : aduan_k@doe.gov.my

1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No. 15, Level 6-13, Persiaran Perdana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54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880 3441
웹사이트 : www.mpic.gov.my
이메일 : webmaster@mpic.gov.my

농촌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No. 47,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10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891 2000
웹사이트 : www.rurallink.gov.my
이메일 : webmaster@rurallink.gov.my

관광예술문화부(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No. 2, Tower 1, Jalan P5/6, Precinct 5
6220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891 7100
웹사이트 : www.motac.gov.my
이메일 : info@motac.gov.my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No. 26, Jalan Tun Hussein,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10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888 0158
웹사이트 : www.mot.gov.my
이메일 : aduan@mot.gov.my

여성가족지역사회개발부(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

No. 55,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6210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323 2000
웹사이트 : www.kpwkm.gov.my
이메일 : info@kwpm.gov.my

노동부(MINISTRY OF WORKS)

Tingkat 1 – 14, Kompleks Kerja Raya
Jalan Sultan Salahuddin
5058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2711 1101
웹사이트 : www.kkr.gov.my
이메일 : pro@kk.gov.my

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Menara KBS
No.27,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7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871 3333/88713000
팩스 : (603) 8888 8770
웹사이트 : www.kbs.gov.my
이메일 : webmaster@kbs.gov.my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Blok B5 & B6
Prime Minister's Department Complex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7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888 3755
웹사이트 : www.epu.gov.my
이메일 : webmaster@mea.gov.my

기업가정신개발부(MINISTRY OF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Blok E4/5, Kompleks Kerajaan Parcel E
Aras 13, Menara Usahawan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7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88893712
웹사이트 : www.med.gov.my
이메일 : webmaster@med.gov.my

관련 기구

인적자원개발기금(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D)

Wisma HRDF
Jalan Beringin, Damansara Heights
5049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1800-88-4800
팩스 : (603) 2096 4999
웹사이트 : www.hrdf.com.my
이메일 : support@hrdf.com.my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Level 1 – 7(Podium)
No.15, Persiaran Perdana,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5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000 8000
팩스 : (603) 8880 1200
웹사이트 : www.imi.gov.my
이메일 : opsroom@imi.gov.my

내국세수입국(INLAND REVENUE BOARD)

Menara Hasil
Persiaran Rimba Permai Cyber 8
63000 Cyberjaya, Selangor
Malaysia
전화 : (603) 7713 6666
팩스 : (603) 8313 7801
웹사이트 : www.hasil.gov.my
이메일 : callcentre@hasil.gov.my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Unit 1-7, Ground Floor, Tower B Menara UOA Bangsar
No.5, Jalan Bangsar Utama 1
5900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2299 8400
팩스 : (603) 2299 8989
웹사이트 : www.myipo.gov.my
이메일 : ipmalaysia@myipo.gov.my

라부안금융감독청(라부안 FSA)(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ABUAN FSA))

Level 17, Main Office Tower
Financial Park Complex, Jalan Merdeka
87000 Federal Territory Labuan
Malaysia
전화 : (6087) 591 200
팩스 : (6087) 453 442
웹사이트 : www.labuanibfc.com
이메일 : communication@labuanfsa.gov.my

말레이시아 바이오경제개발공사(MALAYSIAN BIOECONOMY DEVELOPMENT CORPORATION SDN.BHD.)

Level 16, Menara Atlan
161B,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2116 5588
팩스 : (603) 2116 5411
웹사이트 : www.bioeconomy.com.my
이메일 : strategic.coms@bioeconomycorporation.my

말레이시아 산업개발 금융공사(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FINANCE BHD (MIDF))

Level 21, Menara MIDF
82, Jalan Raja Chulan
5020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2173 8888
팩스 : (603) 2173 8877
웹사이트 : www.midf.com.my
이메일 : inquiry-feedback@midf.com.my

말레이시아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청(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 MALAYSIA)

Galeria PjH
Aras 9 Jalan P4W
Persiaran Perdana, Presint 4
6210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870 5800
팩스 : (603) 8870 5900
웹사이트 : www.seda.gov.my
이메일 : enquiry@seda.gov.my

에너지위원회(ENERGY COMMISSION)

No.12, Jalan Tun Hussein, Precinct 2
6210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870 8500
팩스 : (603) 8888 8637
웹사이트 : www.st.gov.my

말레이시아 기술개발공사(MALAYSIAN TECHNOLOGY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MTDC))

Ground Floor, Menara Yayasan Tun Razak
Jalan Bukit Bintang
5510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2172 6000
팩스 : (603) 2163 7541
웹사이트 : www.mtdc.com.my
이메일 : comms@mtdc.com.my

말레이시아 첨단기술민관공사(MALAYSIAN INDUSTRY-GOVERNMENT GROUP FOR HIGH TECHNOLOGY (MiGHT))

Prime Minister's Department
MiGHT Partnership Hub, Jalan Impact
63000 Cyberjaya, Selangor
Malaysia
전화 : (603) 8315 7888
팩스 : (603) 8312 0300
웹사이트 : www.might.org.my
이메일 : info@might.org.my

말레이시아 관광청(MALAYSIA TOURISM PROMOTION BOARD)

9th Floor, No. 2, Tower 1
Jalan P5/6, Precinct 5
62200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891 8000
팩스 : (603) 8891 8889
웹사이트 : www.tourism.gov.my
이메일 : enquiries@tourism.gov.my

말레이시아디지털경제공사(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 SDN BHD (MDeC))

2360, Persiaran APEC
63000 Cyberjaya, Selangor
Malaysia

전화 : (603) 8315 3000
팩스 : (603) 8315 3115
웹사이트 : www.mdec.com.my
이메일 : cllc@MDeC.com.my

말레이시아 생산성본부(MALAYSIA PRODUCTIVITY CORPORATION (MPC))

Lorong Produktiviti, Off Jalan Sultan
46200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전화 : (603) 7955 7266
팩스 : (603) 7957 8068
웹사이트 : www.mpc.gov.my
이메일 : marketing@mpc.gov.my

클랑항만청(PORT KLANG AUTHORITY)

Mail Bag Service 202, Jalan Pelabuhan Utara
42005 Port Klang, Selangor
Malaysia

전화 : (603) 3168 8211
팩스 : (603) 3168 7626
웹사이트 : www.pka.gov.my
이메일 : onestopagency@pka.gov.my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CUSTOMS MALAYSIA)

Ministry of Finance Complex, Precinct 2
No.3, Persiaran Perdana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6 Putrajaya
Malaysia

전화 : (603) 8882 2100
팩스 : (603) 8889 5901
웹사이트 : www.customs.gov.my
이메일 : cpa@customs.gov.my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No. 3, Persiaran Bukit Kiara, Bukit Kiara
5049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6204 8777
팩스 : (603) 6201 5078
웹사이트 : www.sc.com.my
이메일 : cau@seccom.com.my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공사(SME CORPORATION MALAYSIA)

Level 6, SME 1, Block B
Platinum Sentral, Jalan Stesen Sentral 2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2775 6000
팩스 : (603) 2775 6001
웹사이트 : www.smecorp.gov.my
이메일 : info@smecorp.gov.my

중소기업은행(SME BANK)

Menara SME Bank
Jalan Sultan Ismail
5025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1-800-88-3133
웹사이트 : www.smebank.com.my
이메일 : customercare@smebank.com.my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SOCSO))

Menara Perkeso
281, Jalan Ampang
50538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4264 5000
팩스 : (603) 4256 7798
웹사이트 : www.perkeso.gov.my
이메일 : perkeso@perkeso.gov.my

TELEKOM MALAYSIA BERHAD

Level 51, North Wing
Menara TM, Jalan Pantai Baru
50672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2240 1221
팩스 : (603) 2283 2415
웹사이트 : www.tm.com.my
이메일 : feedback@telekom.com.my

테나가 나쇼날(TENAGA NASIONAL BERHAD)

129, Jalan Bangsar
5920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2296 5566
팩스 : (603) 2283 3686
웹사이트 : www.tnb.com.my
이메일 : ird@tnb.com.my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MITI))

Block 10, Government Office Complex, Jalan Duta 50622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603) 6203 3022

팩스: (603) 6201 2337 / 6203 1303

웹사이트: www.miti.gov.my

이메일: webmiti@miti.gov.my

MITI 해외 지부

벨기에(BELGIUM)

Minister Counsellor (Economy)
Mission of Malaysia to the
EU Embassy of Malaysia in Belgium
Avenue de Tervuren 414A
1150 Brussels
Belgium
전화 : (322)776 0376/762 5939
팩스 : (322)771 2380
이메일 : rita.elisha@miti.gov.my
miti.brussels@skynet.be

중국(CHINA, PEOPLE'S REPUBLIC OF)

Minister Counsellor (Economy)
Embassy of Malaysia (Economic Section)
No.2 Liang Ma Qiao Bei Jie
Chaoyang District, 100600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 (8610) 6532 2533/7990
팩스 : (8610) 6532 3617
이메일 : cksee@miti.gov.my

인도(INDIA, REPUBLIC OF)

Minister Counsellor (Economy)
High Commission of Malaysia in New Delhi
50-M, Satya Marg
Chanakyapuri
New Delhi 110021
Republic of India
전화 : (91-11) 2611 1297
팩스 : (91-11) 2688 2372
이메일 : ezral@miti.gov.my

인도네시아(INDONESIA)

Counsellor (Economics) Embassy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Jalan H.R. Rasuna Said, Kav X6
No.1-3, Kuningan
Jakarta 12950
Indonesia
전화 : (6221) 522 4947/522 4962
팩스 : (6221) 522 4963
이메일 : ahmadfaizal@miti.gov.my

싱가포르(SINGAPORE)

Counsellor (Economics)
Malaysian Trade Commission
80 Robinson Road #01-02, 068896
Singapore
전화 : (0265) 6222 1356
팩스 : (0265) 6221 5121
이메일 : limcheehau@miti.gov.my

스위스(SWITZERLAND)

Permanent Representative of Malaysia to
the WTO
International Centre Cointrin (ICC)
3rd Floor, Block C
20, Route de Pre-Bois
Case Postale 1909
CH 1215, Geneva 15
Switzerland
전화 : (4122) 799 4042
팩스 : (4122) 799 4041
이메일 : rashidi.said@miti.gov.my

태국(THAILAND)

Counsellor (Economics)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35, South Sathorn Road Tungmahamek
Sathorn, Bangkok 10120
Thailand
전화 : (662) 679 2190-9
Ext.2303/ 2304/ 2305
팩스 : (662) 679 2200
이메일 : nadia@miti.gov.my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Minister Counsellor (Economy) Embassy of Malaysia
3516, International Court NW, Washington DC 20008
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 (1202) 572 9700/10/34
팩스 : (1202) 572 9782/882
이메일 : sabariahghazali@miti.gov.my

베트남(VIETNAM)

Minister Counsellor (Economy)
Embassy of Malaysia
43-45, Dien Bien Phu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 : (8424) 3734 3489
팩스 : (8424) 3734 3832
이메일 : suresh@miti.gov.my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MATRADE))

Menara MATRADE, Jalan Sultan Haji Ahmad Shah, Off Jalan Tuanku Abdul Halim, 5048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603) 6207 7077 팩스: (603) 6203 7037 Toll Free: 1800-88-7280

웹사이트: www.matrade.gov.my 이메일: info@matrade.gov.my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해외사무소 호주(AUSTRALIA)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MATRADE)
Level 7, 432 St. Kilda Road
Melbourne 3004, Victoria
Australia

전화 : (613)9832 8600

팩스 : (613)9832 8610

이메일 : melbourne@matrade.gov.my

아시아(ASIA) 동아시아(EAST ASIA)

중국(CHINA, PEOPLE'S REPUBLIC OF) 베이징(BEIJING)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Trade Section)
Unit E, 11th Floor, Tower B, Gateway Plaza, No. 18
Xiaguangli, North Road Dongsanhuan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7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 (8610) 8451 5109/ 5110/ 5113

팩스 : (8610) 8451 511251123

이메일 : beijing@matrade.gov.my

청두(CHENGDU)

Trade Commissioner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Chengdu Representative Office)
Level 14, Unit 1402 – 1404
The Office Tower, Shangri-La Centre
9 Binjiang Road (East)
Chengdu 610021, Sichuan Province
Sichuan Provinc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 (8628) 6687 7517

팩스 : (8628) 6687 7524

이메일 : chengdu@matrade.gov.my

광저우(GUANGZHOU)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Unit 2009 – 2010, 20th Floor, Central Tower
No. 5 Xiancun Road, Tianhe District, Guangzhou
510623 Guangdong Provinc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 (8620) 3877 3865/ 3975

팩스 : (8620) 3877 3985

이메일 : guangzhou@matrade.gov.my

홍콩(HONG KONG)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1901, 19th Floor, Malaysia Building
50 Gloucester Road, Wanchai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 (852) 2527 8109

팩스 : (852) 2804 2866

이메일 : hongkong@matrade.gov.my

상하이(SHANGHAI)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Unit 807-809, Level 8
Shanghai Kerry Centre
No. 1515 Nan Jing Road (West)
Shanghai, 200040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 (8621) 6289 4420/ 4467

팩스 : (8621) 6289 4381

이메일 : shanghai@matrade.gov.my

대만(TAIWAN)

Trade Commissioner
Malaysian Friendship & Trade Centre
(Trade Section)
10F-D, Hung Kuo Building
No. 167 Dun Hua North Road
Taipei 105
Taiwan

전화 : (8862) 2545 2260

팩스 : (8862) 2718 1877

이메일 : taipei@matrade.gov.my

일본 도쿄

Director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Ginza Showadori Building, 6F.
8-14-14, Ginza, Chuo-ku.
Tokyo 104-0061
Japan
전화 : (813) 3544 0712/0713
팩스 : (813) 3544 0714
이메일 : tokyo@matrade.gov.my

오사카(OSAKA)

Marketing Officer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Mainichi Intecio 18F
3-4-5, Umeda, Kita-ku
Osaka 530-0001
Japan
전화 : (816) 6451 6520
팩스 : (816) 6451 6521
이메일 : osaka@matrade.gov.my

한국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Malaysian Trade and Investment Centre)
17th Floor,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mited Building
47, Chongro, Chongro-gu
Seoul, 03160
Republic of Korea
전화 : (822) 739 6813/ 6814
팩스 : (822) 739 6815
이메일 : seoul@matrade.gov.my

남아시아(SOUTH ASIA)

인도(INDIA)

첸나이(CHENNAI)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Capital 2A, 2nd Floor, 554 & 555, Anna Salai
Teynampet, Chennai 600018
India
전화 : (9144) 2431 3722/ 3724
팩스 : (9144) 2431 3725
이메일 : chennai@matrade.gov.my

मुंबई(MUMBAI)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fon (MATRADE)
Suite 301, 3rd Floor, Naman Centre
Block G, Bandra Kurla Complex, Bandra (E)
Mumbai 400051
India
전화 : (9122) 2659 7272/ 7273
팩스 : (9122) 2659 7274
이메일 : mumbai@matrade.gov.my

서아시아(WEST ASIA)

사우디(SAUDI ARABIA)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No. 5 & 7, 14th Floor
Saudi Business Centre
Madina Road, P.O.Box 20802
Jeddah 21465
Saudi Arabia
전화 : (96612) 653 2143/ 2198
팩스 : (96612) 653 0274
이메일 : jeddah@matrade.gov.my

카타르(QATAR)

Marketing Officer
Embassy of Malaysia
No. 939, 9rs Floor
Al Fardan Office Tower
PO Box 31316, West Bay, Doha
Qatar
전화 : (9744) 407 73504410 1604
팩스 : (9744) 407 73514410 1605
이메일 : doha@matrade.gov.my

아랍 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두바이(DUBAI)
Trade Commissioner
Malaysia Trade Centre
c/o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Lot 1-3 Ground Floor & 6-10 Mezzanine Floors
Al-Safeena Building Near Lamcy Plaza
Zaabeel Road P.O.Box 4598 Dubai
United Arab Emirates
전화 : (9714) 335 5528
팩스 : (9714) 335 2220
이메일 : dubai@matrade.gov.my

동남아시아(SOUTH EAST ASIA)

캄보디아(CAMBODIA)

Marketing Officer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MATRADE)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No. 220 – 222, Preah Norodom Boulevard
Sangkat Tonle Bassac, Khan Chamkarmorn
Phnom Penh
Cambodia
전화 : (8428) 3822 1468
팩스 : (8428) 3823 1882
이메일 : hcmc@matrade.gov.my

인도네시아(INDONESIA)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12th Floor, Plaza Mutiara
Jl. Lingkar Kuningan
Kav E.1.2. No1 & 2, Kawasan Mega Kuningan
Jakarta 12950, Indonesia
전화 : (6221) 576 4297/ 4322
팩스 : (6221) 576 4321
이메일 : jakarta@matrade.gov.my

필리핀(PHILIPPINES)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MATRADE)
Level 4, Canseri Building
107, Tordesillas Stree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Philippines
전화 : (632) 8662 8270
팩스 : (632) 8662 8271
이메일 : manila@matrade.gov.my

태국(THAILAND)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Commercial and Investment Office
4th Floor, Unit 401
Sathorn Square Office Tower
98, North Santhorn Road
Khwaeng Silom, Khet Bang Rak
Krung Thep Maha Nakhon
10500 Bangkok
Thailand
전화 : (662) 2108 1792/1793/1794
팩스 : (662) 2108 1795
이메일 : bangkok@matrade.gov.my

미얀마(MYANMAR)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MATRADE)
No. 82, Pyidaungsu Yeiktha Road
Dagon Township, 11191 Yangon
Myanmar
전화 : (951) 230 1951/1952
팩스 : (951) 230 1954
이메일 : yangon@matrade.gov.my

베트남(VIETNAM)

호치민시(HO CHI MINH CITY)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1206-1207, 12th Floor, Me Linh Point Tower
2, Ngo Duc Ke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전화 : (848) 3822 1468
팩스 : (848) 3823 1882
이메일 : hcmc@matrade.gov.my

하노이(HANOI)

Marketing Offic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MATRADE)
45-46 Dien Bien Phu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 : (844) 3734 7521
팩스 : (844) 3734 7520
이메일 : hanoi@matrade.gov.my

유럽(EUROPE)

프랑스(FRANCE)

Trade Commissioner
Service Commercial De Malaisie
De L' Ambassade De Malaisie
90, Avenue Des Champs Elysees
75008 Paris
France
전화 : (331) 4076 0000/ 0034
팩스 : (331) 4076 0001
이메일 : paris@matrade.gov.my

독일(GERMANY)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of Malaysia (Trade Section)
Level 9, HAT 64
Bleichstrasse, 64 – 66, 60313
Frankfurt am Main
Germany
전화 : 49 (0) 69 247 5015 - 10
팩스 : 49 (0) 69 247 5015 - 20
이메일 : frankfurt@matrade.gov.my

헝가리(HUNGARY)

Marketing Officer
Embassy of Malaysia
Hazman utca 8
1026 Budapest
Hungary
전화 : (361) 461 0290
팩스 : (361) 461 0291
이메일 : budapest@matrade.gov.my

이탈리아(ITALY)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of Malaysia
Via Albricci 9
20122 Milan
Italy
전화 : (3902) 669 8183/9
팩스 : (3902) 670 2872
이메일 : milan@matrade.gov.my

네덜란드(THE NETHERLANDS)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Rustenburgweg 2
2517 KE The Hague
The Netherlands
전화 : (3110) 462 7 759
팩스 : (3110) 462 7 349
이메일 : rogerdam@matrade.gov.my

러시아(RUSSIA)

Trade Commissioner
The Embassy of Malaysia (Trade Section)
2nd Floor, R01-209
Dobrynya Business Centre
#8, 4th Dobryninskiy per.
119409 Moscow
Russian Federation
전화 : (7495) 933 5626/ 5636
팩스 : (7495) 933 5646
이메일 : moscow@matrade.gov.my

우크라이나(UKRAINE)

Marketing Offic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18, Arsenalna St.
Pechersk
Kiev 01011
Ukraine
전화 : (38044) 285 5235
팩스 : (38044) 285 5238
이메일 : kiev@matrade.gov.my

터키(TURKEY)

Trade Commissioner
Matrade Istanbul
No.76, 20th Floor, Buyukdere Caddesi
Maya Akar Center Plaza
34394 Esentepe Istanbul
Turkey
전화 : (90212) 217 8003
팩스 : (90212) 217 8005
이메일 : istanbul@matrade.gov.my

폴란드(POLAND)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Premises 3, 9th Floor
Zlote Tarasy Tower
59, Zlota Street
00-120, Warsaw
Republic of Poland
전화 : (4822) 222 1765 / 1766
팩스 : (4822) 222 1764
이메일 : warsaw@matrade.gov.my

영국(UNITED KINGDOM)

Trade Commissioner
Malaysian Trade Commission
3rd & 4th Floor, 17 Curzon Street London W1J 5HR
United Kingdom
전화 : (4420) 7499 5255/ 4644
팩스 : (4420) 7499 4597
이메일 : london@matrade.gov.my

북미(NORTH AMERICA)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777 South South Figueroa Street, Suite 600
Los Angeles, CA 90071
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 (1213) 892 9034
팩스 : (1213) 955 9142
이메일 : losangeles@matrade.gov.my

뉴욕(NEW YORK)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3rd Floor, 313 East, 43rd Street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 (1212) 682 0232
팩스 : (1212) 983 1987
이메일 : newyork@matrade.gov.my

마이애미(MIAMI)

Director
Malaysia Trade Centre
703 Waterford Way, Suite 150
Miami, Florida 33126
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 (1305) 267 8779
팩스 : (1305) 267 8784
이메일 : miami@matrade.gov.my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

아르헨티나(ARGENTINA)

Marketing Offic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MATRADE)
Villanueva 1040
C1426BMD Buenos Aires
Republic of Argentina
전화 : (54) 11 4776 0504 / 2533
(54) 11 4777 8420
팩스 : (54) 11 4776 0604
이메일 : buenosaires@matrade.gov.my

칠레(CHILE)

Trade Commissioner
Oficina Commercial de Malasia
Embajada De Malasia
Avda Tajamar 183
Oficina 302, Las Condes
Santiago
Chile
전화 : (5622) 234 2647
팩스 : (5622) 234 2652
이메일 : santiago@matrade.gov.my

브라질(BRAZIL)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771, Alameda Santos, Suite 72
7th Floor, 01419-001, Sao Paulo
Brazil
전화 : (5511) 3285 2966
팩스 : (5511) 3289 1595
이메일 : saopaulo@matrade.gov.my

멕시코(MEXICO)

Trade Commissioner
MATRADE Mexico City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Paseo de Las Palmas # 425
Torre Optima 3, Office 1102
Col. Lomas de Chapultepec
Del. Miguel Hidalgo, C.P. 11000
Mexico City
Mexico
전화 : (5255) 5201 4540
팩스 : (5255) 5202 7338
이메일 : mexico@matrade.gov.my

아프리카(AFRICA)

이집트(EGYPT)

Embassy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MATRADE)
21, E1-Aanab Street
Lavel 2, Mohandessine, Giza
Arab Republic of Egypt
전화 : (202) 376 10013
팩스 : (2012) 376 10216
이메일 : cairo@matrade.gov.my

케냐(KENYA)

Marketing Officer
High Commission of Malaysia
Trade Section (MATRADE)
Block 91/404, Gigiri Groove
P.O Box 42286
00100, Nairobi
Kenya
전화 : (25420) 712 0915
팩스 : (25420) 712 0916
이메일 : nairobi@matrade.gov.my

남아프리카(SOUTH AFRICA)

Trade Commissioner
High Commission of Malaysia
Economic Office (MATRADE)
8th Floor, Sandton City Office Tower
Cnr Rivonia Road and 5th Street
Sandhurst Ext 3
Sandton,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전화 : (2711) 268 2380/ 2381
팩스 : (2711) 268 2382
이메일 : johannesburg@matrade.gov.my

나이지리아(NIGERIA)

High Commission of Malaysia
Trade Office (MATRADE)
Unit 2, Block F28
502 Close, 5th Avenue
Off Ondo Street
Ikoyi, Lagos, Nigeria
전화 : (2340) 908 723 1987
이메일 : lagos@matrade.gov.my

말레이시아 MATRADE(대외무역개발공사) 주 사무소

남부지역사무소(Southern Regional Office)

Director
Matrade Southern Regional Office
Suite 6B, Level 6
Menara Ansar, 65 Jalan Trus
80000 Johor Bahru, Johor
Malaysia
전화 : (607) 222 9400
팩스 : (607) 222 9500
이메일 : johor@matrade.gov.my

북부지역사무소(Northern Regional Office)

Director
Matrade Northern Regional Office
Bangunan KWSP, Ground Floor
No. 3009, Off Lebuhraya, Pulau Pinang
13700 Bandar Seberang Jaya, Pulau Pinang
Malaysia
전화 : (604) 398 2020
팩스 : (604) 398 2288
이메일 : penang@matrade.gov.my

동부지역사무소(Eastern Regional Office)

Director
Matrade Eastern Regional Office
Tingkat 5, Menara Yayasan Islam Terengganu
Jalan Sultan Omar
20300 Kuala Terengganu, Terengganu
Malaysia
전화 : (609) 624 4778
팩스 : (609) 624 0778
이메일 : terengganu@matrade.gov.my

사라왁주(SARAWAK)

Director
Matrade Sarawak Office
Tingkat 10, Menara Grand
Lot 42, Section 46, Ban Hock Road
93100 Kuching, Sarawak
Malaysia
전화 : (6082) 246 780 / 248 780
팩스 : (6082) 256 780
이메일 : sarawak@matrade.gov.my

사바주(SABAH)

Director
Matrade Sabah Office
Lot C5.2A, Tingkat 5, Block C
Bangunan KWSP
Jalan Karamunsing
88100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전화 : (6088) 240 881 / 242 881
팩스 : (6088) 243 881
이메일 : sabah@matrade.gov.my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MIDA Sentral, No 5,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603) 2267 3633

팩스: (603) 2274 7970

웹사이트: www.mida.gov.my

이메일: investmalaysia@mida.gov.my

MIDA 주 사무소

케다(KEDAH) & 펄리스(PERLIS)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Level 4, East Wing

No. 88, Menara Bina Darulaman Berhad

Lebuhraya Darulaman

05100 Alor Setar, Kedah

Malaysia

전화 : (604) 731 3978

팩스 : (604) 731 2439

이메일 : kedah@mida.gov.my

풀라우 피낭(PULAU PINANG)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enara Boustead Penang

39, Jalan Sultan Ahmad Shah

10050 Pulau Pinang

Malaysia

전화 : (604) 228 0575

팩스 : (604) 228 0327

이메일 : penang@mida.gov.my

페락(PERAK)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Level 4, Perak Techno Trade Centre (PTTC)

Bandar Meru Raya

Off Jalan Jelapang

P.O. Box 210

30720 Ipoh, Perak

Malaysia

전화 : (605) 5269 962 / 961

팩스 : (605) 5279 960

이메일 : perak@mida.gov.my

멜라카(MELAKA)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3rd Floor, Menara MIIITC Kompleks MITC

Jalan Konvensyen

75450 Ayer Keroh, Melaka

Malaysia

전화 : (606) 232 2877

팩스 : (606) 232 2875

이메일 : melaka@mida.gov.my

네게리 셈빌란(NEGERI SEMBILAN)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Suite 13.01 & 13.02

13th Floor Menara MAA

70200 Seremban, Negeri Sembilan

Malaysia

전화 : (606) 762 7921

팩스 : (606) 762 7879

이메일 : nsembilan@mida.gov.my

조호르(JOHOR)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Lot 13.05, Tingkat 13, No. 5, Level 13

Menara Tabung Haji

Jalan Ayer Molek

80000 Johor Bahru, Johor

Malaysia

전화 : (607) 224 2550 / 5500

팩스 : (607) 224 2360

이메일 : johor@mida.gov.my

파항(PAHANG)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Suite 3, 11th Floor Kompleks Teruntum

P.O.Box 178

25720 Kuantan, Pahang

Malaysia

전화 : (609) 513 7334

팩스 : (609) 513 7333

이메일 : pahang@mida.gov.my

켈란탄(KELANTAN)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Aras 5-C, Menara Pejabat Kelantan Trade Centre

Jalan Bayam

15000 Kota Bharu, Kelantan

Malaysia

전화 : (609) 748 3151

팩스 : (609) 744 7294

이메일 : kelantan@mida.gov.my

셀랑고르(SELANGOR)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22nd Floor, Wisma MBSA Persiaran
Perbandaran
40000 Shah Alam, Selangor
Malaysia

전화 : (603) 5518 4260

팩스 : (603) 5513 5392

이메일 : selangor@mida.gov.my

테렝가누(TERENGGANU)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5th Floor, Menara Yayasan islam Terengganu
Jalan Sultan Omar
20300 Kuala Terengganu, Terengganu
Malaysia

전화 : (609) 622 7200

팩스 : (609) 623 2260

이메일 : terengganu@mida.gov.my

사바주(SABAH)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Lot D9.4 & D9.5, 9TH Floor
Block D, Bangunan KWSP Karamuning
88100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전화 : (6088) 211 411

팩스 : (6088) 211 412

이메일 : sabah@mida.gov.my

사라왁주(SARAWAK)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Room 404, 4th Floor, Bangunan Bank Negara
No.147, Jalan Satok, P.O.Box 716
93714 Kuching, Sarawak
Malaysia

전화 : (6082) 254 251/ 237 484

팩스 : (6082) 252 375

이메일 : sarawak@mida.gov.my

MIDA 해외 사무소

아시아 태평양지역(ASIA-PACIFIC)

싱가포르(SINGAPORE)

Consul (Investment)/Director
High Commission of Malaysia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No.7, Temasek Boulevard
26-01, Suntec Tower One, 038987, Singapore
전화 : (65) 6835 9326/ 9580/ 7069
팩스 : (65) 6835 7926
이메일 : singapore@mida.gov.my

호주(AUSTRALIA)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Level 6, 16 Spring Street
NSW 2000 Sydney, Australia
전화 : (6102) 9251 1933
팩스 : (6102) 9251 4333
이메일 : sydney@mida.gov.my

중국 상하이

Directo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Unit 807-809, Level 8
Shanghai Kerry Centre
No.1515, Nanjing Road (West)
Shanghai 200040,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 (8621) 6289 4547
팩스 : (8621) 6279 4009
이메일 : shanghai@mida.gov.my

광저우(GUANGZHOU)

Director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Unit 1804B-05
CITIC Plaza Office Tower
233 Tianhe Be Road
Guangzhou 510610,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 (8620) 8752 0739
팩스 : (8620) 8752 0753
이메일 : guangzhou@mida.gov.my

베이징(BEIJING)

Counselor (Investment)/Director
Embassy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Unit C, 12th Floor, Tower A, Gateway Plaza
No. 18, Xiaguangli, East Third Ring North Road
Chaoyang District
100600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 (8610) 8440 0071/ 0072
팩스 : (8610) 8440 0076
이메일 : beijing@mida.gov.my

일본 도쿄

Director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32F, Shiroyama Trust Tower
4-3-1, Toranomon, Minato-Ku
Tokyo 105-6032, Japan
전화 : (813) 5777 8808
팩스 : (813) 5777 8809
이메일 : tokyo@mida.gov.my

오사카(OSAKA)

Director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Mainichi Intecio 18-F
3-4-5, Umeda, Kita-ku
Osaka 530-0001, Japan
전화 : (816) 6451 6661
팩스 : (816) 6451 6626
이메일 : osaka@mida.gov.my

한국

Counselor (Investment)/Director
Embassy of Malaysia
(Malaysian Trade and Investment Centre)
Level 17,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mited Building
47, Jongro, Jongro-gu
Seoul 110-702, Republic of Korea
전화 : (822) 733 6130 / 6131
팩스 : (822) 733 6132
이메일 : seoul@mida.gov.my

대만(TAIWAN)

Director (Investment)
Malaysian Friendship & Trade Centre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12F, Suite A, Hung Kuo Building
167, Tun Hua North Road
Taipei 105, Taiwan
전화 : (8862) 2713 5020 / 2718 6094
팩스 : (8862) 2514 7581
이메일 : taipei@mida.gov.my

인도(INDIA)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81 & 87, 8th Floor
3rd North Avenue Maker Maxity
Bandra Kurla Complex, Bandra (E)
Mumbai 400051, India
전화 : (9122) 2659 1155 / 1156
팩스 : (9122) 2659 1154
이메일 : mumbai@mida.gov.my

아랍 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두바이(DUBAI)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Unit 2205, 22nd Floor, Tower A
Business Central Tower, Dubai Media City
(P.O. Box 502876) Dubai
United Arab Emirates
전화 : (9714) 4343 696/4343 697
팩스 : (9714) 4343 698
이메일 : dubai@mida.gov.my

유럽(EUROPE)

프랑스(FRANCE)

Director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42, Avenue Kleber
75116 Paris
France
전화 : (331) 4727 6696/ 3689
팩스 : (331) 4755 6375
이메일 : paris@mida.gov.my

독일(GERMANY)

프랑크푸르트(FRANKFURT)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Level 9, HAT 64
Bleichstrasse 64-66
60313 Frankfurt Am Main
Germany
전화 : +49 (0)698700 679-0
이메일 : frankfurt@mida.gov.my

뮌헨(MUNICH)

Director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Level 6, Bürkleinhaus
Bürkleinstraße 10
80538 Munich
Germany
전화 : (4989) 2030 0430
팩스 : (4989) 2030 0431-5
이메일 : munich@mida.gov.my

이탈리아(ITALY)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2nd Floor, via Albricci 9
20122 Milan (MI)
Italy
전화 : (3902) 8909 3824
팩스 : (3902) 8909 545 418
이메일 : milan@mida.gov.my

스웨덴(SWEDEN)

Economic Counsellor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c/o Embassy of Malaysia
Karlavaegen 37
P.O. Box 26053
S-10041 Stockholm
Sweden
전화 : (468) 440 8400/ (468) 440 8416
팩스 : (468) 791 8761
이메일 : stockholm@mida.gov.my

영국(UNITED KINGDOM)

Counsellor for Investment/Director
High Commission of Malaysia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c/o Embassy of Malaysia
17, Curzon Street
London W1J 5HR
United Kingdom
전화 : (4420) 7493 0616
팩스 : (4420) 7493 8804
이메일 : london@mida.gov.my

북미(NORTH AMERICA)

산호세(SAN JOSE)

Director (Acting)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226, Airport Parkway, Suite 480

San Jose, CA 95110

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 (1408) 392 0617/ 8

팩스 : (1408) 392 0619

이메일 : sanjose@mida.gov.my

시카고(CHICAGO)

Director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John Hancock Centre, Suite 1515

875, North Michigan Avenue

Chicago, IL 60611

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 (1312) 787 4532

팩스 : (1312) 787 4769

이메일 : chicago@mida.gov.my

뉴욕(NEW YORK)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313 East, 43rd Street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 : (1212) 687 2491

팩스 : (1212) 490 8450

이메일 : newyork@mida.gov.my

부록 I

1986년의 투자촉진법에 따른
개척 자격 및 투자세 공제
고려 대상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I. 농업 생산

1. 화해원에

II. 농업 생산물의 가공

1. 초콜릿과 초콜릿 제과점
2. 야채, 덩이줄기 또는 뿌리 & 과일
3. 축산 제품
4. 농업 폐기물 또는 농업 부산물
5. 수경 제품
6. 수경 사료
7. 의료, 향수, 화장품 또는 식품 산업과 정유용 식물 추출물
8. 보조 식품
9. 첨가제, 향, 채색 및 기능성 성분

III. 고무 제품의 제조

1. 땅을 고르는 기계, 농업 차량, 공업 차량, 상업용 차량, 모터사이클 및 항공기용 타이어
2. 라텍스 제품
 - a) 안전 또는 특수 기능 글로브
3. 건식 고무 제품
 - a) 벨트류
 - b) 호스, 배관 및 튜브
 - c) 고무 프로파일
 - d) 실, 개스킷, 와셔, 패킹, 링 및 고무 라이닝
 - e) 방진, 제동 및 소리 절연 제품

IV. 팜오일 제품 및 그 파생품의 제조

1. 유지화학제품 또는 유지화학제품의 파생품 또는 제재
2. 팜 기반 건강기능식품, 팜오일 구성품 또는 팜핵유
3. 팜 기반 식품 및 성분
 - a) 특수 동물 지방 대체물질
 - b) 팜 기반 마요네즈 및 샐러드드레싱
 - c) 우유 또는 코코넛 가루 대체품
 - d) 레드팜오일 및 관련 제품
 - e) 팜 기반 식품 성분
 - f) 변형 팜오일 및 팜핵유 제품
 - g) 마가린, 바나스파티, 쇼트닝 또는 기타 제조 지방 제품
 - h) 코코아 버터 대체재료, 코코아 버터 대용 재료, 코코아 버터 동등품, 팜중부유 (palm mid fraction, PMF) 또는 특수 올레인(olein)
4. 다음의 가공 제품
 - a) 팜핵 과자
 - b) 팜오일 추출공정 폐수(palm oil mill effluent)
 - c) 팜 바이오매스

V. 화학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1. 유기물 또는 무기물의 화학적 파생품 또는 제재
2. 석유화학 제품

VI. 의약품과 관련 제품의 제조

1. 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
2. 건강기능식품
3. 미생물제와 생균제

VII. 목재 기반 제품의 제조

1. 목재 가구의 디자인, 개발 및 생산
2. 합판을 제외한 가공 목재 제품

VIII.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조

1. 골심지, 테스트라이너 또는 크라프트라이너 또는 크라프트지 및 판지

IX. 케나프 기반 제품의 제조

1. 동물, 사료, 케나프 입자 또는 섬유, 재생 패널 판지 또는 제품(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및 몰드 제품과 같은 케나프 기반 제품

X. 섬유 및 섬유 제품의 제조

1. 천연 또는 인공 섬유
2. 천연 또는 인공 섬유사
3. 직물
4. 편직물
5. 부직포
6. 표백, 염색 및 나염과 같은 직물의 마무리작업
7. 특수 의류
8. 산업용 또는 기능성 섬유 및 섬유 제품

XI. 점토 기반, 모래 기반 및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의 제조

1. 고알루미늄 또는 기본적 내화제품
2. 실험실용, 화학 또는 산업용 제품
3. 합성다이아몬드
4. 벽돌, 타일, 슬래브, 펠릿, 보도블록 및 벽돌과 같은 결정화 또는 성형 유리 제품
5. 흡수성이 좋은 광물성 점토
6. 대리석 및 화강암 제품
7. 시멘트, 플라스터 또는 기타 광물성 결합재료 응집 시킨 천연 및 합성 섬유의 패널, 보드, 타일, 블록 또는 유사한 물품

XII. 철강 제조

1. 강철 블룸 또는 슬래브
2. 200mm를 초과하는 높이의 형강 또는 단면 형강
3. 후판, 강판, 코일, 후프 또는 스트립
 - a) 열간압연
 - b) 냉간압연 또는 냉간환원
4. 무게목 강관
5. 망간철, 규소망간 또는 규소철
6. 전기아연도금 강대

XIII. 비철금속 및 그 제품의 제조

1. 주석을 제외한 주괴, 빌릿 또는 슬래브 등 1차 비철 금속
2. EC 구리 봉을 제외한 비철금속 바, 봉, 형재 또는 단면형재
3. 비철금속 후판, 판재, 코일, 후프 또는 스트립
4. 비철금속 배관 또는 튜브
5. 알루미늄 복합패널

XIV. 기계류 및 기계류 구성품의 제조

1. 특정 산업용 특수 기계류 또는 장비
2. 발전 기계류 또는 장비
3. 일반 산업용 기계류 또는 장비
4. 기계류 또는 장비의 모듈 및 공업용 부품 또는 구성품
5. 금속가공 기계류 또는 장비
6. 중장비를 포함한 기계류 또는 장비의 개량 또는 수리

XV. 지원 제품 또는 서비스

1. 금속 주조
2. 금속 단조
3. 표면 공학
4. 기계 가공, 지그 및 고정구
5. 몰드, 공작기계 및 다이
6. 열처리

XVI. 전기 전자 제품과 그 구성품 및 부품의 제조 및 관련 서비스

1. 반도체
 - a) 웨이퍼 가공
 - b) 반도체 조립
 - c) 반도체 구성품과 부품
 - i) 고급 기판
 - ii) 납땜 재료
 - iii) 결합 패드
 - d) 반도체 툴
 - i) 웨이퍼 캐리어
 - ii) 집적회로(IC) 캐리어
 - iii) 포토마스크 및 마스크 블랭크
 - e) 반도체 관련 서비스
 - i) 다이 또는 웨이퍼 제조
 - ii) 집적회로(IC) 검사
 - iii) 웨이퍼 프로빙(probing) 또는 분류(sorting)
 - iv) 웨이퍼 범핑(bumping)
2. 고급 디스플레이 제품 및 부품
 - a) 고급 디스플레이 제품
 - b) 고급 디스플레이 모듈
 - c) 백라이트(backlighting) 시스템
3.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시스템 또는 장치
 - a) 디지털 통합 제품 또는 장치
 - b) 데이터 저장 시스템 또는 장치
4.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또는 인포테인먼트 제품
 - a) 디지털 TV
 - b) 디지털 홈시어터 시스템 또는 그 제품
 - c)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또는 영상 녹화장치 또는 재생장치
5. 광전자 장비, 시스템, 장치 또는 구성품
 - a) 광자(photonics) 장치 또는 구성품
 - b) 광전자 장비 또는 시스템, 장치 또는 구성품
 - c) 광섬유 또는 광섬유 제품
6. 전자 추적 또는 보안 시스템 또는 장치
 - a) 음성 또는 패턴 또는 시각 인식 또는 합성 장비 또는 시스템 또는 장치
 - b) 전자 내비게이션 및 추적 장비 또는 시스템 또는 장치
 - c)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 또는 장치
7. 전자 구성품
 - a) 다층 또는 연성 인쇄회로기판
 - b) 고급 커넥터
8. 대체에너지 장비, 제품, 시스템, 장치 또는 구성품
 - a) 태양 전지 또는 패널 또는 모듈 또는 시스템
 - b) 충전식 배터리 또는 저장 시스템
 - c) 연료 전지
9. 에너지 절약 조명
10. 전기 제품
 - a)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 b) 인버터 또는 컨버터

XVII. 전문, 의료, 과학 및 측정 장치 또는 부품의 제조

1. 의료, 수술, 치과 또는 수의과 장치 또는 장비 및 부품 또는 구성품 또는 그 부속품
2. 검사, 계측 또는 실험 장비 또는 기구

XVIII.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1. 특수 플라스틱 필름 또는 시트
2. 지구환경시스템 제품
3.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4. 클린룸 환경에서 성형된 제품
5. 생체고분자(biopolymer) 또는 그 제품

XIX. 보호 장비 및 장치

1. 코팅 또는 편직 안전장갑
2. 고급 방탄 유리
3. 추락 보호 장비

XX. 제조 관련 서비스

1. 통합 물류 서비스
2. 식품 저온 유통 시설 및 서비스
3. 가스 및 방사선 멸균 서비스
4. 환경 관리
 - a) 다음과 같은 폐기물 재활용
 - i) 독성 및 비독성 폐기물
 - ii) 화학물질
 - iii) 재생고무
5. 산업디자인 서비스

XXI. 호텔업과 관광산업

1. 중저가 호텔의 건립(3성급 이하)
2. 4-5성급 호텔의 건립
3. 기존 호텔의 확장 또는 현대화
4. 관광 프로젝트의 수립
5. 관광 프로젝트의 확장 또는 현대화
6. 휴양 캠프의 건립
7. 컨벤션센터의 건립

XXII. 기타

1. 스포츠용품 또는 장비
2. 귀금속 보석
3. 모조 보석류
4. 생분해성 1회용 포장재 및 가정용품

부록 II

1986년의 투자촉진법에 따른
개척 자격과 투자세 공제 고려
대상 하이테크 기업을 위한
권장 활동과 제품 목록

I. 첨단 전자제품 및 컴퓨터의 설계, 개발 및 제조

1. 다음의 설계, 개발 및 제조
 - a) 고밀도 모듈 또는 시스템
 - b) 첨단 디스플레이
 - c) 첨단 반도체 장치
 - d) 고급 커넥터
 - e) 데이터 저장 장치 또는 시스템
 - f) 고급 기판
 - g) 정보통신 제품, 시스템 또는 장치
 - h)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또는 인포테인먼트 제품
 - i) 광전자 장비, 시스템 또는 장치
 - j) 전자 보안 및 감시 시스템 또는 장치
 - k) 전자 기계, 장비, 시스템 또는 장치
 - l) 첨단 전자 구성품

II. 전문, 의료, 과학 및 계측 장치 또는 부품

1. 다음의 설계, 개발 및 제조
 - a) 의료 장비, 부품 또는 구성품
 - b) 의료용 임플란트, 의료 장치, 부품 또는 구성품
 - c) 검사, 계측 또는 실험 장비 또는 기구

III. 생명공학

1. 다음의 개발, 시험 및 제조
 - a) 의약품
 - b) 정밀 화학제품
 - c) 생체진단(biodiagnostics)

IV. 첨단 소재

1. 다음의 개발 및 제조
 - a) 폴리머 또는 바이오폴리머
 - b) 파인 세라믹스 또는 첨단 세라믹스
 - c) 고강도 복합재료
2. 나노 입자 및 나노 입자 조성물

V. 대체 에너지 기술

1. 대체 에너지 부문에서 사용할 제품, 장비, 시스템, 장치 또는 구성품의 설계, 개발 및 제조

VI. 철강

1. 직경 2.0mm 이하의 초정밀 와이어

부록 III

1986년의 투자촉진법에 따른
개척 자격과 투자세 공제 고려
대상 소기업을 위한 권장
활동과 제품 목록

I. 농업 활동

1. 수산 양식
2. 양봉

II. 농업 생산물의 가공

1. 커피
2. 차
3. 과일
4. 야채
5. 허브 또는 향신료
6.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7. 코프라(copra) 및 미가공 코코넛유를 제외한 코코넛 제품
8. 전분 및 전분 제품
9. 곡물 제품
10. 설탕 및 제과류
11. 식물 추출물
12. 양봉 제품
13. 동물 사료 성분

III. 임업 제품

1. 등나무(rattan) 제품(등나무대, 껍질과 토막 제외)
2. 대나무 제품
3. 기타 임업 제품

IV. 고무 제품의 제조

1. 고무 몰딩 제품
2. 사출성형 고무 제품
3. 일반 고무 제품

V. 오일 팜 제품 및 그 파생품의 제조

1. 팜오일 가공 제품
2. 팜 바이오매스/폐기물/부산물 가공 제품

VI. 화학제품과 의약품의 제조

1. 안료 제재, 분산제 및 특수 코팅제
2. 건조제
3. 바이오 수지(생체 고분자)
4. 잉크젯 잉크

VII. 목재 및 목제품의 제조

1. 장식용 패널 보드(일반 합판 제외)
2. 목재 몰딩
3. 건축용 목공품 및 목공업(joinery)
4. 목재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예컨대, 활성탄, 숯, 나무섬유)
5. 가정용 및 사무용 목재용품

VIII. 종이 및 판지 제품의 제조

1. 성형 종이 제품

IX. 섬유 및 섬유 제품의 제조

1. 바틱(batik) 또는 송켓(songket) 또는 푸아(pua)
2. 섬유산업용 액세서리

X. 점토 기반 및 모래 기반 제품과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의 제조

1. 세라믹 또는 유리의 공예품, 장식품 및 장신구
2. 연삭, 광택 및 뾰족하게 만들기 위한 연마제

XI. 철강 제품, 비철금속 및 그 제품의 제조

1. 와이어 및 와이어 제품
2. 조립 제품

XII. 지원 제품 및 서비스

1. 금속 스탬핑
2. 산업용 씰링 자재(seal) 또는 씰링 재료

XIII. 수송 구성품, 부품 및 부속자재의 제조

1. 수송 구성품, 부품 및 부속자재

XIV. 기계류와 장비 부품 및 구성품의 제조

1. 기계류와 장비 부품 및 구성품

XV. 전기전자 제품, 구성품 및 그 부품의 제조

1. 소비자 전기 제품, 부품 및 구성품
2. 전자 제품, 부품 및 구성품
3. 산업용 전기 제품, 부품 및 구성품
4. 산업용 전자 제품, 부품 및 구성품

XVI. 가구, 부품 및 구성품의 제조'

1. 가구, 부품 및 구성품

XVII. 게임 및 부속자재의 제조

1. 게임 및 부속자재

XVIII. 기념품의 제조

1. 기념품, 선물용품 및 장식용품

XIX.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1. 장식 패널 및 장식품
2. 에폭시 캡슐 성형 화합물

부록 IV

1986년의 투자촉진법에 따른
개척 자격과 투자세 공제
고려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을 위한 권장 활동과 제품
목록

I. 기계류 및 장비

1. 공작 기계
2. 자재 취급 장비
3. 로봇과 공장 자동화 장비
4. 공작 기계, 자재 취급 장비 및 로봇과 공장 자동화 장비 비용 모듈 및 구성품

II. 특수 기계류 및 장비

1. 특수 산업용 특수 공정 기계 또는 장비
2. 포장 기계류
3. 특정 산업과 포장 기계류용 특수 공정 기계류 또는 장비를 위한 모듈 및 구성품

III. 오일 팜 바이오매스

1. 오일 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부가가치 제품 생산

IV. 재생 에너지

1. 재생 에너지 생산

V. 에너지 보존

1. 에너지 보존

부록 V

1986년의 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재투자를 위한 권장
활동과 제품 목록

I. 자원 기반

1. a) 고무
- b) 오일 팜(팜오일을 채취하는 기름야자나무)
- c) 목재

II. 식품 가공

1. 식품 가공 활동

III. 연구 및 개발 활동

1. 연구 및 개발 활동

IV. 호텔업과 관광산업

1. 호텔업과 관광산업

V. 오일 팜(기름야자나무) 바이오매스

1. 오일 팜(기름야자나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부가가치 제품 생산

VI. 저온유통 시설과 서비스

1. 소멸할 수 있는 농업 생산물(과일, 야채, 꽃, 고사리류, 육류 및 수경 제품)용 저온유통 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

Published by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Sentral

No. 5,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267 3633

Fax : (603) 2274 7970

Website : www.mida.gov.my

E-mail : investmalaysia@mida.gov.my

2019 EDITION